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 043-870-5521~30 Fax : 043-870-5682 e-Mail : tbt@kats.go.kr, tbt@korea.kr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www.knowtb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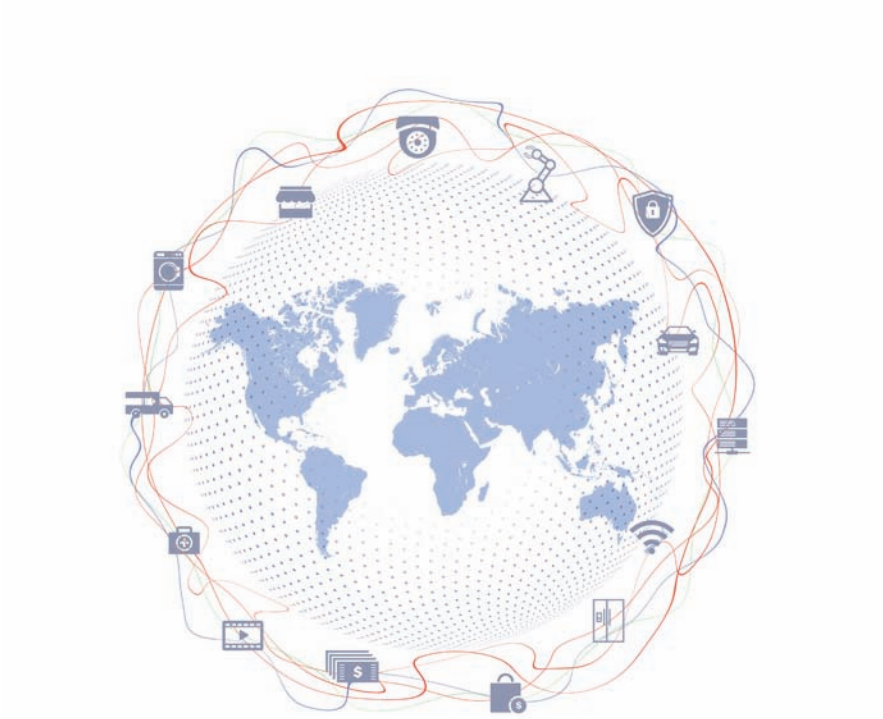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발간사

최근 세계 교역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TO 자유무역주의 원칙은 어느새 주요 선진국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지난 20년간 열풍처럼 확산되었던 FTA로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신해 무역기술규제 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활용해왔던 기술규제가 최근 개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우리의 교역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 WTO에 통보된 3천여 건의 기술규제 가운데 83%가 개도국에서 발표된 조치였다는 점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선진국 시장에서 탈피, 개도국으로 교역시장을 시급하게 확장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사전에 정보를 얻기 어렵고 외국 규제당국과 직접 상대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상 기업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각종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발표하는 해외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입수, 분석해 업계에 제공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대외협상력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여 현장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국가기술표준원은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112건에 대한 협상을 벌여 49건에 대하여 상대국의 규제 철회 또는 완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도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들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높은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것입니다.

이에 금번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는 전 세계 기술규제 통보 동향과 기업의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여 학계, 연구계, 수출기업이 전 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전 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국가기술표준원장 이 승우

목차

발간사 02

PART I 개요

1.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10
 1) 협정체결 10
 2) WTO TBT 협정의 개요 11
 3) TBT 유형 12
 4)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13
 5) WTO TBT 협정의 국내이행 현황 16



PART II 기술규제 동향

1. WTO TBT 통보동향 24
 1) 연도별 25
 2) 국가별 26
 3) 분야별 31
 4) 목적별 32
 5) 의견개진 기간 34
 6) 통보매체 35

2.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36
 1) 연도별 36
 2) 국가별 39
 3) 분야별 45
 4) 유형별 46
 5) 목적별 47
 6) 빈도 47
 7) 통보문과 STC 간의 관계 48

3. 숨은 기술규제(미통보 STC) 동향 49
 1) 미통보 기술규제의 STC 현황 49
 2) 국가별 50
 3) 분야별 52
 4) 목적별 53

목차

PART III 대응체계 및 성과

1. 수출기업을 위한 TBT 대응 지원체계 56

2. 주요 정책 및 성과 61

3. TBT 대응사례 72
 1) 아시아 지역 75
 2) 중동 지역 101
 3) 유럽 지역 114
 4) 중남미 지역 123
 5) 북미 지역 131
 6) 아프리카 지역 134

4. 우리 수출기업 TBT 대응 성공사례 140
 1) 두산 인프라코어 140
 2) 금호타이어 150

PART IV 전문가 칼럼

1. 사이버 안보 분야의 미 · 중 패권경쟁
 : 한국의 미래전략에 주는 함의 162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2. 중국의 표준 체계 개편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 174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PART V 부록

1. TBT 통보절차 190

2. 통보문 종류 194

3. 용어사전 204



PART I

개 요

1.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개요

1.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제품이 시장에 생산 · 판매 · 유통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서 요구하는 특성 및 생산방법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각 국가별로 채택하여 적용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는 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가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는 경우,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무역에 대한 방해 요소를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라고 한다.

1) 협정체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 이래 무역기술장벽이 세계 주요 교역국들의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197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GATT/TBT 협정을 채택, 198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강제력이 없었다. 협정 채택 당시 가입국은 미국, 일본, EC 등 38개 국가였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10월 2일에 가입했다.

뒤이어 GATT에서 WTO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WTO 협정의 부속서 중의 하나로 TBT 협정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WTO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력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95년 1월 1일 출범 당시 회원국은 128개국이었고, 우리나라는 WTO의 초기 회원국이었으며, WTO에는 현재 164개 회원국이 가입(2019년 4월 기준)한 상태이다. WTO TBT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중앙 · 지방 · 비정부기관의 협정 준수 의무를 강화하였고, 임의규정인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방법으로 확대했으며,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종전의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 분쟁해결을 위한 강력한 체제로 전환하였다.

2) WTO TBT 협정의 개요

WTO 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한 목적은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며, 이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규제 방지 ”

TBT 협정의 범위는 SPS 협정[1]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 조치와 정부조달 물품을 제외한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포괄한다.

TBT 협정의 주요 원칙으로는 첫째,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차별 원칙(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비 · 채택 ·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

1)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 음료 ·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한다. 단,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된다.

셋째, 제 · 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이해당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의견제시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3) TBT 유형

첫 번째 무역기술장벽 유형으로는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이 있다.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 · 안전 ·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운영상 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이다. 중복적인 검사 요구 및 검사 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그리고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적 · 행정적 부담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이다.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인해 생산 요소에 대한 차별화가 생기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겐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다.

무역기술장벽의 구체적인 예

-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지 않은 기술규정
- 자국 제품과 수입 제품의 차별적 대우
- 적합성평가 절차의 중복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관료주의적 절차 등

4)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① 전문

협정 전문에는 국제표준과 적합성평가 제도가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고 국제무역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이들 제도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은 수출품의 품질,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호 또는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하여 최소 무역제한적인 수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동일 조건이 통용되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TBT 협정문의 주요 정의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 표준(Standard): 규칙, 지침이나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 적합성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적합성평가 절차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인정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② 기술규정 및 표준(제2조–제4조)

제2조–제4조에서는 기술규정 및 표준의 채택에 대한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회원국들이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차별 원칙(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해 적용하여야 하나, 자국의 기후적,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특정 회원국이 기술규정과 표준을 제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아 타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간행물에 공표하고 WTO 사무국을 통해 타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 보건, 환경보호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들은 기술규정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수출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생산방법 또는 제품을 수입국의 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적합성평가 절차(제5조–제9조)

제5조–제9조에는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한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상품의 검사 조건, 방법, 행정 절차와 수수료에서도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토록 하여 정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채택하려는 적합성평가 절차를 관보에 공표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타 회원국에 이 제도에 관한 내용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제6조에서는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과 표준과의 적합을 보증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에 대한 수용을 보장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명확한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체제를 수립하고 채택하며 또한 이 체제의 회원국이 되거나 이에 참여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④ 정보 제공 및 지원(제10조–제11조)

제10조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이 제안하였거나 채택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한 타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1개 또는 여러 개의 질의처를 설치할 것에 대한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WTO의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서, 3개 언어 중 반드시 한 개의 언어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에서는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국내표준기구 설립이나 국제표준화기구에의 참여에 관하여 조언하며, 요청이 있을 시 기술지원을 해줄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⑤ 개발도상국 우대 조항(제12조)

제12조에서는 회원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수출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비록 국제표준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기술적, 사회적 조건과 개발 필요성에 따라 그들의 토착 기술과 생산방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적 필요 및 무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제표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가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와 시장 다변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⑥ TBT 위원회(제13조)

제13조에서는 협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TBT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정의 운영 또는 협정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차 말에, 이후 매 3년마다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는 3년 주기 의 검토 보고서(Triennial Review)를 작성해야 한다.

⑦ 분쟁 해결(제14조)

제14조에서는 분쟁 해결에 대한 조항을 명기하고 있다.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한 협의와 분쟁 해결은 분쟁 해결기구의 주관 하에 진행되며, 회원국의 일방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해서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손상되었다고 생각할 때 상대국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은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협의를 요청받은 회원국은 달리 상호간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요청의 수령 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상호 간에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그 요청의 수령 후 30일 내에 성실하게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의 상세한 검토를 요구하는 기술적인 성격의 문제를 지원할 기술 전문가단을 설치할 수 있다.

5) WTO TBT 협정의 국내 이행 현황

① 제도적 정비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하여 한국산업규격의 제 · 개정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WTO TBT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 기술규정, 표준의 국제표준과 조화, WTO 통보의 준수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국가표준기본법의 관련 조항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 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 · 훈련 · 조사 · 연구 ·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WTO TBT 통보문 송부

법령 제 · 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절차의 변동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상품별 질의처와 국가기술표준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를 통해 WTO TBT 사무국으로 통보하고 있다.

③ 질의처 운영

WTO TBT 협정문 제10.1조와 제10.2조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는 분야별로 2개의 질의처(국가기술표준원: 공산품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 회원국으로부터의 TBT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제안되거나 채택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 등에 대한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

④ 공정 관행규약 수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1998년)과 대한전기협회(2001년)는 국내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TBT 협정의 부속서3 공정 관행규약을 수락하였다.

⑤ WTO TBT 위원회 활동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타 회원국 무역기술규제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타 회원국의 규제 관련 질의에 대한 대응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PART II

기술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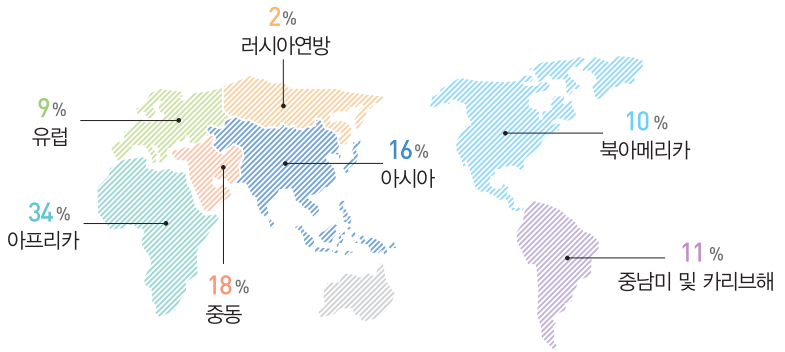
1. WTO TBT 통보동향
2.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3. 숨은 기술규제(미통보 STC) 동향



한눈에보는 2018 TBT 통보문 현황



2018년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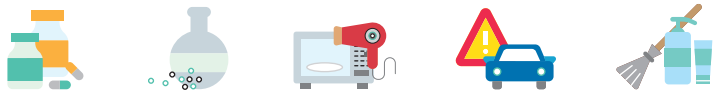
2018년 전체 통보문 발행 상위 5개국



2018년 통보문 발행 건수



2018년 통보문 발행 상위 5개 분야



35.1%	17.7%	9.2%	8.3%	8.1%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전기전자	교통/안전	생활용품

2018년 신규 통보문 목적별 발행 건수



1,381건	672건	385건	353건	352건
인간의 건강 및 안전	품질규정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소비자 정보제공	환경보호

2018년 주요국의 분야별 TBT 통보건수

미국



식의약품	23.9%
화학세라믹	20.7%
교통/안전	14.9%
생활용품	9.1%
건설	7.6%
전기전자	5.4%
에너지	4.7%
바이오환경	3.6%
농수산품	2.9%
기계	2.2%
정보디지털	2.2%
소재나노	1.8%
기타	1.1%

중국



전기전자	32.3%
식의약품	20.0%
교통/안전	13.8%
기계	13.8%
생활용품	6.2%
에너지	6.2%
소재나노	3.1%
화학세라믹	3.1%
정보디지털	1.5%
건설	0.0%

PART II

기술규제 동향

1. WTO TBT 통보 동향

WTO TBT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절차 요건을 제 · 개정할 때,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회원국의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특정한 통보양식을 통해 그 제 · 개정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다. WTO에서 '무역기술장벽(TBT)'이라고 알려진 기술규제와 관련한 무역조치는 전 세계 무역의 흐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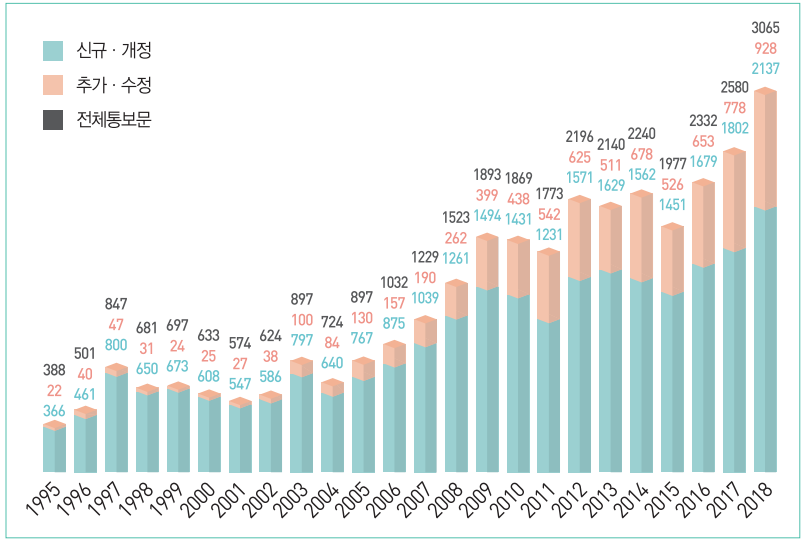
기술규제와 관련한 무역조치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시장에 수월하게 접근하게 하는 등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정부는 보건 및 환경보호, 기만적 관행예방과 같은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투명하거나 차별적인 조치, 부당한 기술적 조치는 우리나라 무역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은 특히 중소기업에 애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술규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각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기술규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에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관련 조치동향을 파악하고, WTO TBT 위원회에서 발표한 연례보고서[1]를 기초로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 등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WTO TBT 위원회(연 3회 개최/3월, 6월, 11월)에서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을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무역에 미치는 기술규제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현황을 알아본다.

1) 연도별

1995년부터 2018년까지 137개 회원국(총 회원국 164개)이 WTO에 총 3만 3,563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하였다. [그림 II-1]과 같이 1995년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던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1,893건을 기록했다.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1,773건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2,000건을 돌파하여 1,977건으로 감소했던 201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3,06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II-1] 연도별 전체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건수)



1) Twenty-Fourth Annual Review of the impel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2018)

[표 II-1] 2016~2018년 통보문 발행건수 (단위: 건수)

통보문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 통보문	1,645	1,774	2,085
개정 통보문	34	28	52
추가 및 수정 통보문	653	778	928
합 계	2,332	2,580	3,065

[표 II-1]과 같이 2018년 WTO 회원국들의 신규 통보문은 2,085건, 개정 통보문 52건, 추가 및 수정 통보문은 928건으로 86개국의 회원국들이 통보하여 총 3,065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2017년 2,580건에서 18.8% 상승한 것이다. 2018년 TBT 통보문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일부 아프리카 회원국의 통보가 714건으로 2014년 대비 약 6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간다(413건)는 2018년에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통보문을 발표하였으며 케냐(173건), 르완다(137건), 탄자니아(110건), 그리고 이집트(80건)가 통보문 수에서 상위 10위에 들었다.

2)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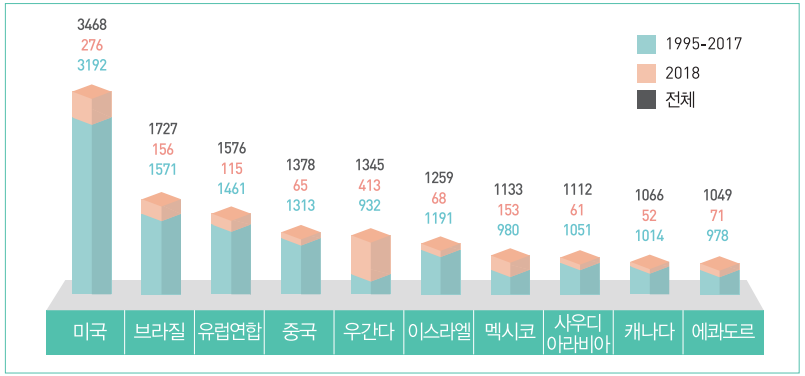
① 주요국 통보문 현황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그림 II-2]와 같이 1위는 미국(3,468건), 2위 브라질(1,727건), 3위 유럽연합(1,576건), 4위 중국(1,378건)으로 나타난다. 지난 10년간(2009~2018) 상위 4개 통보국을 분석하면 제출 통보문 건수는 변동 양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예외적으로 미국이 2016년 제출한 통보건수는 441건으로 정점을 찍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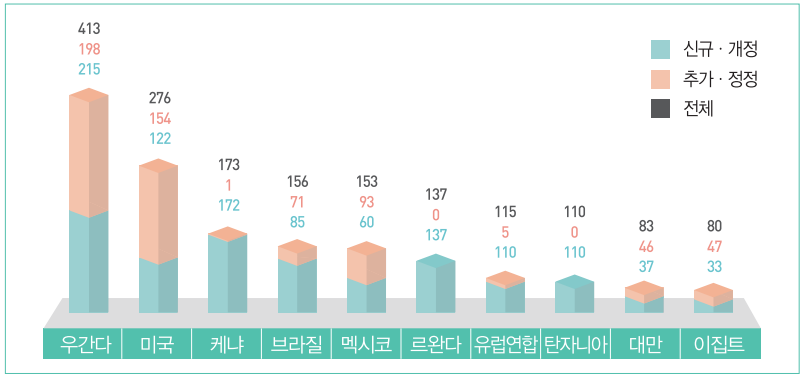
2018년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은 [그림 II-3]과 같이, 우간다가 41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미국(276건), 케냐(173건), 브라질(156건), 멕시코(153건)이며, 한국은 64건을 통보하여 16위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TBT 통보 추이를 [표 II-2]에 나타냈다. 한국은 2018년 통보문 발행 건수가 전년대비 9건

[그림 II-2] 1995~2018년 전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 건수)



[그림 II-3] 2018년 전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 건수)



[표 II-2] 2016~2018년 주요국 TBT 통보문 발행건수 (단위: 건수)

국가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한 국	83	55	64
미 국	441	295	276
E U	109	100	115
중 국	35	59	65
일 본	32	36	46

(16.4%) 증가했다. 중국과 일본의 통보문 발행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미국은 2016년부터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품목별 통보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전체비율의 23.9%를 차지하는 식의약품(66건), 화학세라믹(57건), 교통/안전(41건)에서는 통보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그 외 분야에서는 통보 건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통보문 수(276건)가 전년대비 19건(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2017~2018년 미국의 분야별 TBT 통보 증감 추이

대분류	2017년		2018년		증감(율)
	통보건수	비율(%)	통보건수	비율(%)	
식의약품	58	19.7%	66	23.9%	8(△13.8%)
화학세라믹	37	12.5%	57	20.7%	20(△54.1%)
교통/안전	38	12.9%	41	14.9%	3(△7.9%)
생활용품	27	9.2%	25	9.1%	-2(▽7.4%)
건설	26	8.8%	21	7.6%	-5(▽19.2%)
전기전자	28	9.5%	15	5.4%	-13(▽46.4%)
에너지	15	5.1%	13	4.7%	-2(▽13.3%)
바이오환경	13	4.4%	10	3.6%	-3(▽23.1%)
농수산품	22	7.5%	8	2.9%	-14(▽63.6%)
기계	16	5.4%	6	2.2%	-10(▽62.5%)
정보디지털	7	2.4%	6	2.2%	-1(▽14.3%)
소재나노	3	1.0%	5	1.8%	2(△66.7%)
기타	5	1.7%	3	1.1%	-2(▽40.0%)
합 계	295	-	276	-	-19(▽6.4%)

중국은 2018년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수가 전년대비 12건(133.3%)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교통/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9건(50.0%)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통보문 수는 전년대비 6건(10.2%)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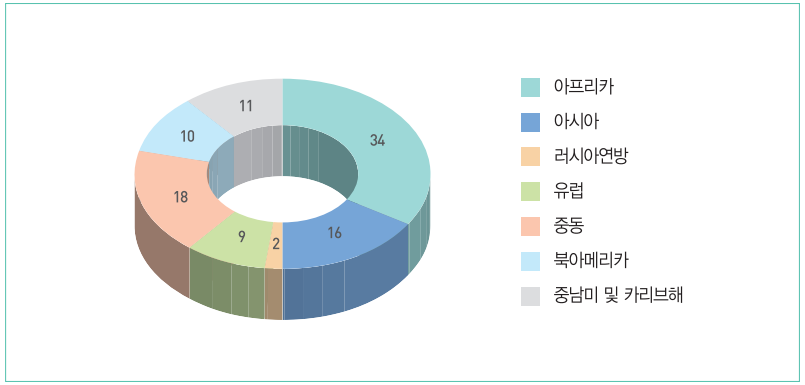
[표 II-4] 2017~2018년 중국의 분야별 TBT 통보 증감 추이

대분류	2017년		2018년		증감(율)
	통보건수	비율(%)	통보건수	비율(%)	
전기전자	9	15.3%	21	32.3%	12(△133.3%)
식의약품	12	20.3%	13	20.0%	1(△8.3%)
교통/안전	18	30.5%	9	13.8%	-9(▽50.0%)
기계	0	0.0%	9	13.8%	9(△100.0%)
생활용품	3	5.1%	4	6.2%	1(△33.3%)
에너지	7	11.9%	4	6.2%	-3(▽42.9%)
소재나노	3	5.1%	2	3.1%	-1(▽33.3%)
화학세라믹	5	8.5%	2	3.1%	-3(▽60.0%)
정보디지털	0	0.0%	1	1.5%	1(△100%)
건설	2	3.4%	0	0.0%	-2(▽100%)
합 계	59	-	65	-	6(△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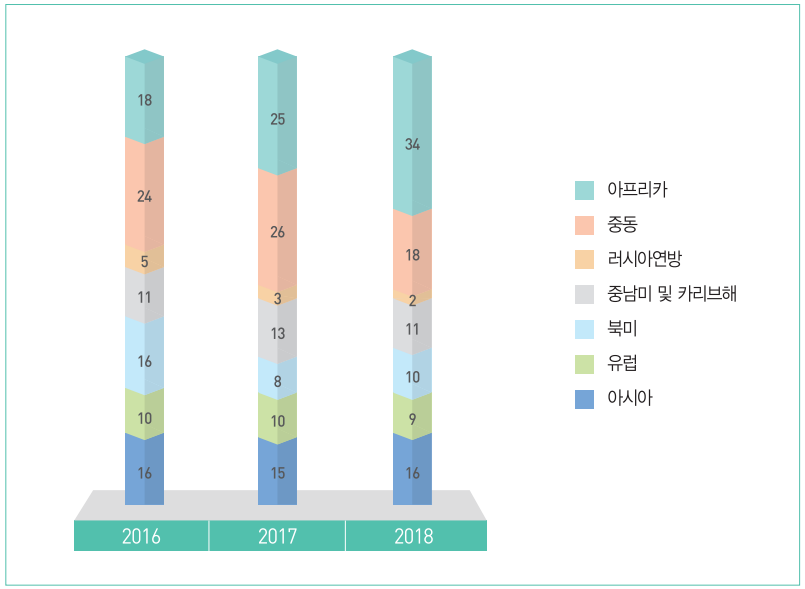
② 지역별 통보문 현황

2018년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4]와 같이 아프리카(34%)가 가장 많은 통보문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II-5])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행에 있어 아프리카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2018년 통보문 발행 비중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경우 매년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4] 2018년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행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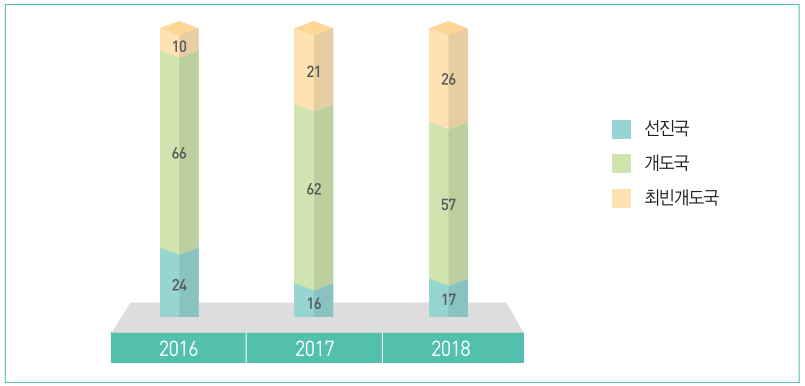
[그림 II-5] 2016~2018년간 누적된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행 현황 (단위: 비율(%))



③ **선진국 vs 개도국**

2005년부터 개도국의 적극적인 기술규제조치 도입 및 WTO TBT 협정 의무 이행으로 통보문 발행수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선진국과 개도국의 신규 통보문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6]과 같이 선진국 17%, 개도국 83%(최빈국 26%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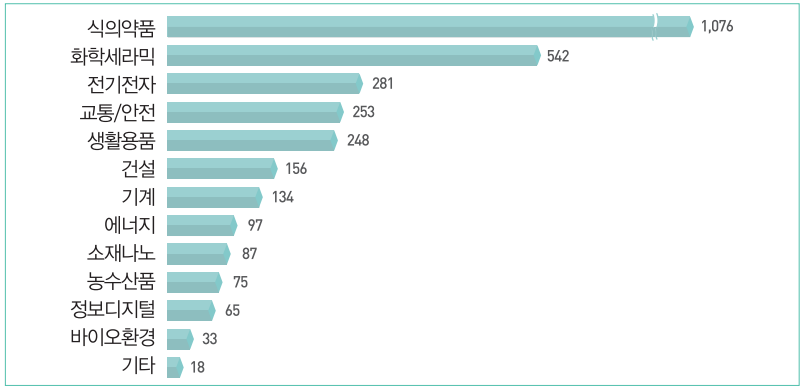
[그림 II-6] 2016~2018년 신규 통보문 선진국/개도국 발행 비중 현황 (단위: %)



3) 분야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통보문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2017년부터 식의약품 분야(2017년:946건 → 2018년:1,076건)와 화학세라믹 분야(2017년:395건 → 2018년:542건)가 각각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8년 식의약품 분야 중에서는 식품(835건), 의약품(83건), 화장품(72건)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화학세라믹 분야에서는 농약, 비료 살충제(144건), 일반(120건), 도료 및 계면활성제(77건) 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림 II-7] 2018년 통보문 분야별 분류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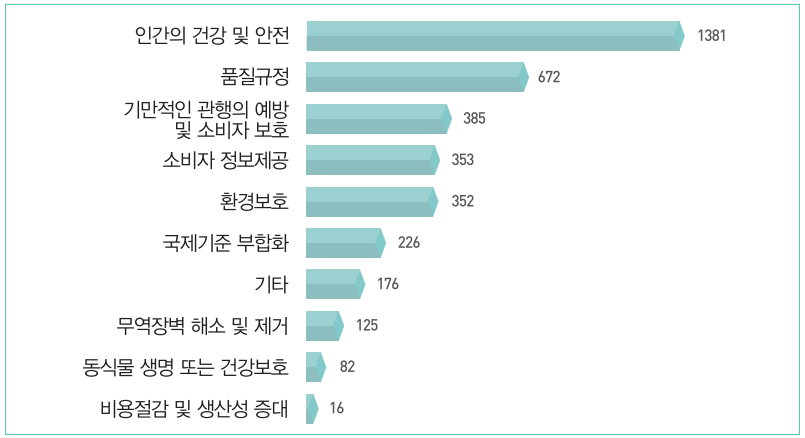
[표 II–5] 2016~2018년 분야별 TBT 통보 건수

대분류	2016년		2017년		2018년	
	통보건수	비중(%)	통보건수	비중(%)	통보건수	비중(%)
식의약품	700	30.0	946	36.7	1,076	35.1
화학세라믹	299	12.8	395	15.3	542	17.7
전기전자	305	13.1	279	10.8	281	9.2
교통/안전	186	8.0	185	7.2	253	8.3
생활용품	158	6.8	175	6.8	248	8.1
건설	88	3.8	100	3.9	156	5.1
기계	85	3.6	74	2.9	134	4.4
에너지	114	4.9	110	4.3	97	3.2
소재나노	85	3.6	63	2.4	87	2.8
농수산품	197	8.4	144	5.6	75	2.4
정보디지털	51	2.2	63	2.4	65	2.1
바이오환경	22	0.9	22	0.9	33	1.1
기타	42	1.8	24	0.9	18	0.6
합 계	2,332	100	2,580	100	3,065	100

4) 목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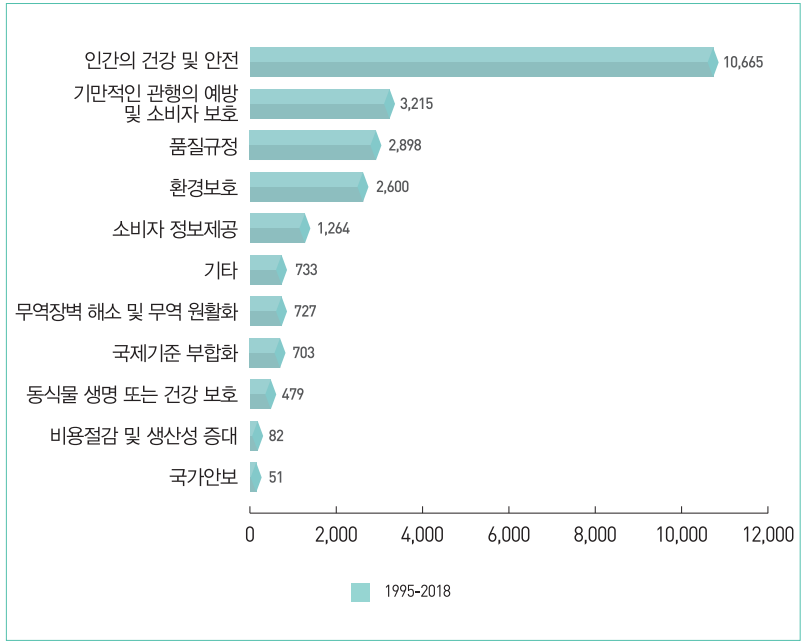
2018년 신규 통보문을 목적[2]별로 분류([그림 II–8])하면,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이 1,381건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품질규정'이 672건,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가 385건, '소비자 정보제공'이 353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 2018년 신규 통보문 목적별 분류 (단위: 건수)



[그림 II–9]는 1995년부터 회원국이 발표한 통보문의 목적별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다섯 가지 목적은 '인간의 건강 및 안전', '품질규정',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및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회원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규정을 제 · 개정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는데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을 활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림 II–9] 1995~2018년, 신규 통보문 목적별 분류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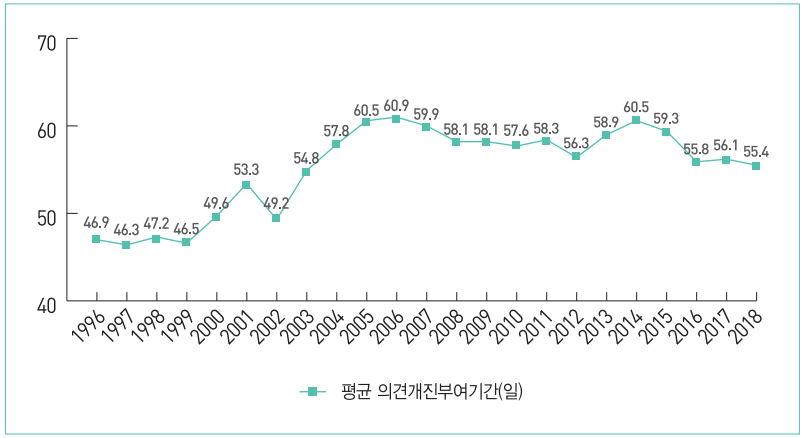
2) 새로운 통보 템플릿의 항목 7에 표시된 목적(G/TBT/1/rev.13, 페이지 58-61 참조)

5) 의견개진 기간

2018년 회원국들은 2,030건의 신규 및 개정 통보에 대해 의견개진 기간을 명시하였고, 평균적으로 55.4일을 제공했다. WTO TBT 위원회는 통보문에 대한 의견개진 기간을 60일 이상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회원국은 통보 시 6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통보문에 명시해야 한다.[3)]

하지만 작년에 제출된 107건의 신규 및 개정 통보문의 경우, 의견개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지났거나, 부여하지 않았다. [그림 II-10]에서 볼 수 있듯이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의견개진 기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인다. 최근 5년 동안의 의견개진 기간을 비교한 결과 2018년의 의견개진 평균 일수가 55.4일로 가장 낮았다.

[그림 II-10] 1996~2018년 동안 의견 개진에 부여된 평균 일수 (단위: 일)



3) G/TBT/1/rev.13, 섹션 5.3.1.8, 페이지 27

6) 통보매체

2013년 말 TBT 통보 제출 시스템(TBT NSS)[4)]이 갖추어진 이래 2015년에는 전체 통보의 52%, 2016년 65%, 2017년 62%, 2018년에는 전체 통보문의 70%의 통보문이 TBT NSS를 사용하여 제출되었다. 2018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50개국이 TBT NSS를 사용하여 통보문을 제출하였다.



4) G/TBT/1/rev.13, 섹션 5.6.4.1, 페이지 38

기술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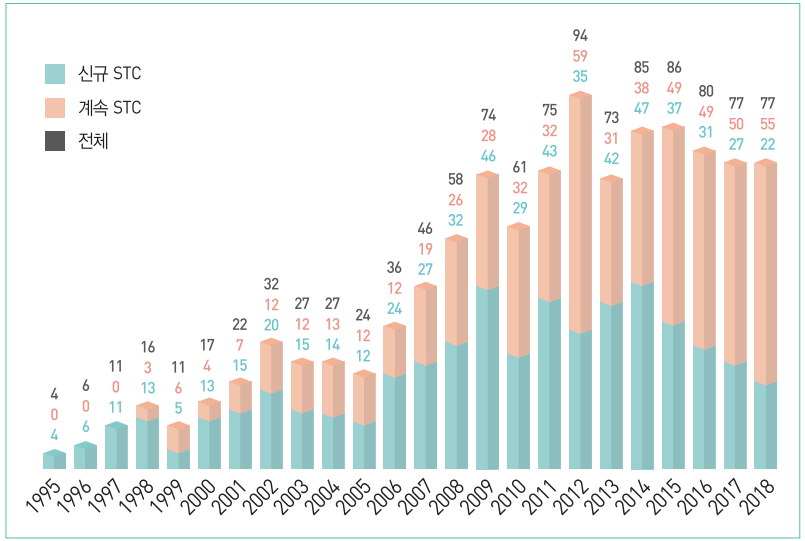
2.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WTO 회원국은 신규 또는 시행 중인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이라고 한다. STC는 각 회원국의 신규 기술규제 통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기존의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 또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앞에서 다룬 TBT 통보문의 동향은 기술규제의 추세 및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용이하나, 통보문 중에는 단순한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실제로 기술규제가 무역 상대국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STC는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무역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규제가 실제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제 사례들에 더욱 가까우며 STC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 연도별

[그림 II-11~12]와 같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05건의 특정무역현안(STC)이 논의되었다.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STC는 1995년 WTO 출범 이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5] 2013년 감소했던 STC 건수는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증가한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STC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에 제기되어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STC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6~7]). 이러한 사실은 최근 WTO TBT 위원회에 회원국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으며, 무역장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II-11] 1995~2018년 특정무역현안(STC) 현황(중복 불포함)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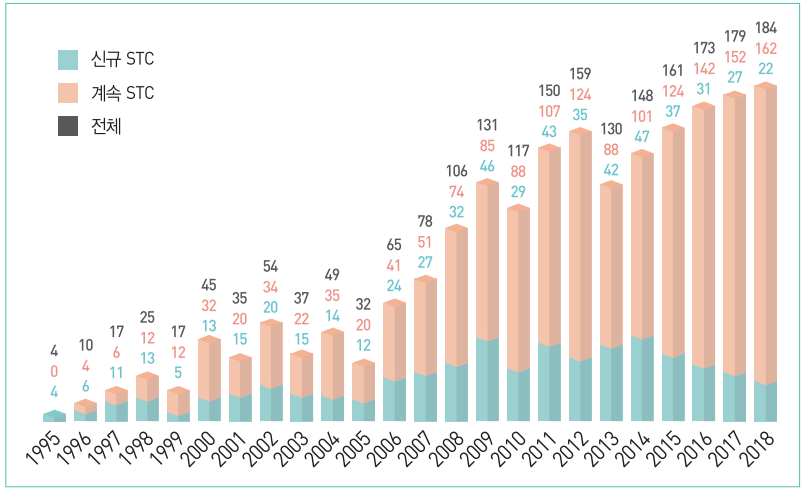


[표 II-6] 1995~2018년 신규/계속 특정무역현안(STC) 현황(중복 불포함) (단위: 건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신규 현안	4	6	11	13	5	13	15	20	15	14	12	24	27	32	46	29	43	35	42	47	37	31	27	22
계속 현안	-	-	-	3	6	4	7	12	12	13	12	12	19	26	28	32	32	59	31	38	49	49	50	55
합계	4	6	11	16	11	17	22	32	27	27	24	36	46	58	74	61	75	94	73	85	86	80	77	77

5) 2016년 이전에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기존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과 관련하여, 특정 연도에 위원회에 제기된 특정 무역현안은 해당 연도에 제기된 횟수와는 상관없이 신규 또는 기존에 제기된 STC로 통계상에 한 번만 포함됨(중복 불포함). 2016년 이후 부터는 STC가 TBT 위원회 미팅에 제기될 때마다 산정되도록 함(중복 포함). 최초로 제기된 경우라면 신규 STC로 산정됨. 다시 제기된 경우라면, 기존에 제기된 STC로 산정됨. 이 방법은 특정 연도에 위원회에서 실제로 논의된 현안의 숫자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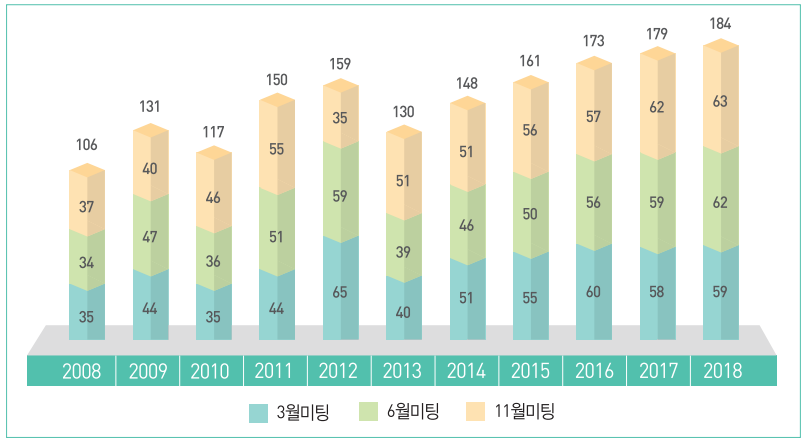
[그림 II-12] 1995~2018년 특정무역현안(STC) 현황(중복 포함) (단위: 건수)



[표 II-7] 1995~2018년 신규/계속 특정무역현안(STC) 현황(중복 포함) (단위: 건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신규 현안	4	6	11	13	5	13	15	20	15	14	12	24	27	32	46	29	43	35	42	47	37	31	27	22
계속 현안	0	4	6	12	12	32	20	34	22	35	20	41	51	74	85	88	107	124	88	101	124	142	152	162
합계	4	10	17	25	17	45	35	54	37	49	32	65	78	106	131	117	150	159	130	148	161	173	179	184

[그림 II-13] 2008~2018년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STC 현황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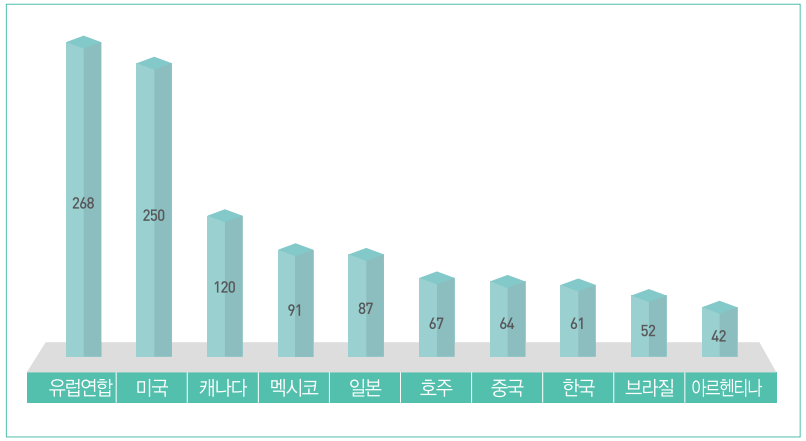


2) 국가별

① 주요국 STC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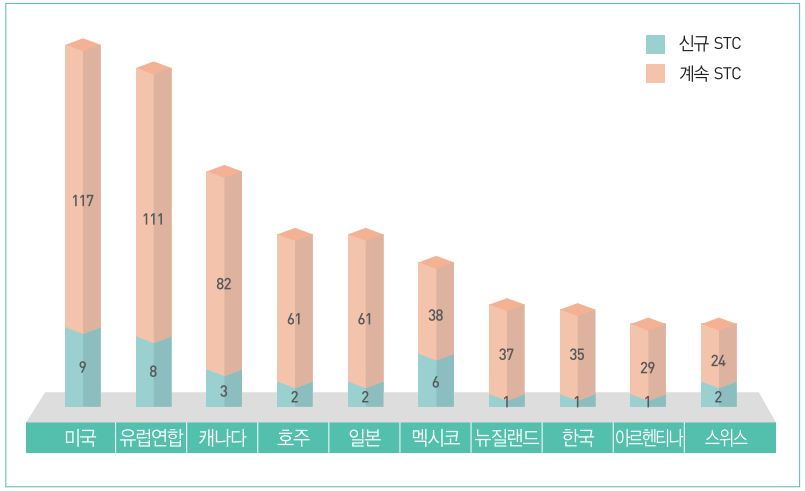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무역현안(STC)을 가장 많이 제기한 국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그림 II-14]와 같이 1위 유럽연합(268건), 2위 미국(250건), 3위 캐나다(120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8위(61건)로 나타난다. 이는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에 무역장벽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수출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무역과 관련된 현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14] 1995~2018년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한 상위 10개국(중복 불포함)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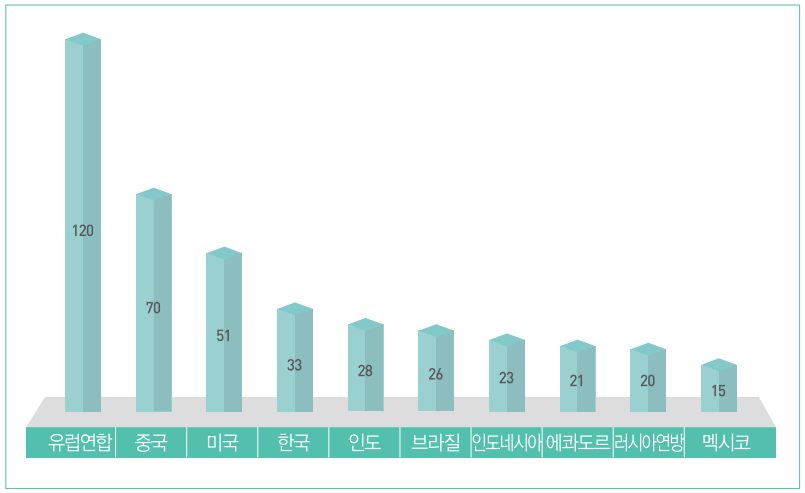
한편, 2018년에 STC를 제기한 상위 10개국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15]와 같이 미국(126건), 유럽연합(119건), 캐나다(85건)가 상위 3개국에 속하며, 그 다음으로 호주(63건)와 일본(63건), 우리나라는 총 36건(신규 1건, 계속 35건)을 제기하여 8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II-15] 2018년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한 상위 10개국(중복 포함)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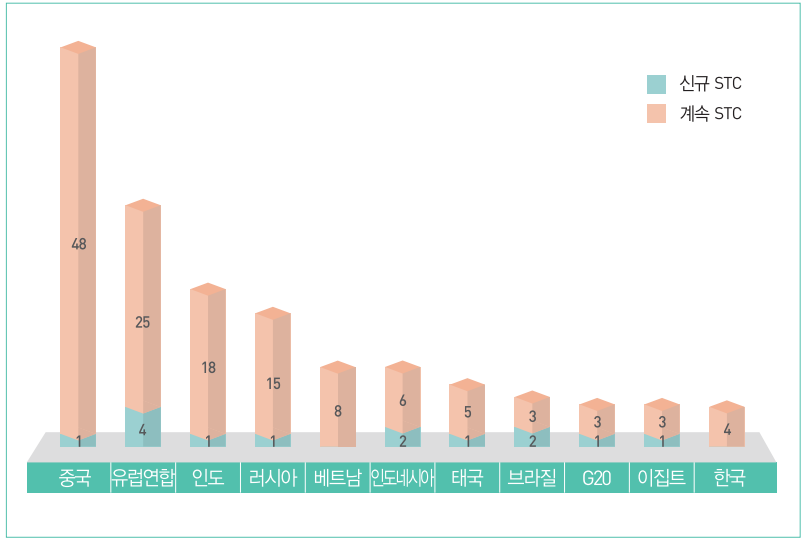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을 가장 많이 제기 받은 국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그림 II-16]과 같이 1위 유럽연합(120건), 2위 중국(70건), 3위 미국(51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4위(33건)로 나타났다.

[그림 II-16] 1995~2018년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 받은 상위 10개국(중복 불포함) (단위: 건수)



한편, 2018년에 STC를 제기 받은 상위 10개국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17]과 같이 중국(49건), 유럽연합(29건), 인도(19건)가 상위 3개국에 속하며, 우리나라는 계속 제기된 2건의 STC 안건 중 [표 II-9]와 같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3회)',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개정안(1회)'에 대해 유럽연합, 미국, 일본, 호주 등으로부터 STC를 제기 받아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었다.[6)]

[그림 II-17] 2018년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 받은 상위 10개국(중복 포함) (단위: 건수)



[표 II-8]과 같이 2018년에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는 3개국 13건이며,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 심사방법', '네트워크 안전법' 등 10건을 중국에 제기하였다.

6) 회원국들은 동일 년도에 동일한 STC에 대해 1회 이상 현안의 대상국이 될 수 있음. STC가 위원회에 제기될 때마다 산정됨.

[표 II-8] 2018년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번호	대상국가	특정무역현황(STC)	소관부처
1	이스라엘	약사법 개정안	식약처
2	중국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등록 관리규정	식약처
3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안)	식약처
4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식약처
5	중국	화장품 라벨링 관리방법 개정(안)	식약처
6	중국	의료기기 등록비	식약처
7	중국	가공식품의 인증 요구사항	식약처
8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국가기술표준원
9	중국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 심사방법	국가기술표준원
10	중국	암호기술법	국가기술표준원
11	중국	정보보안 보호등급 관리방법	국가기술표준원
12	인도	전자 및 정보기술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13	인도	자동차용 공압 타이어 및 튜브	국가기술표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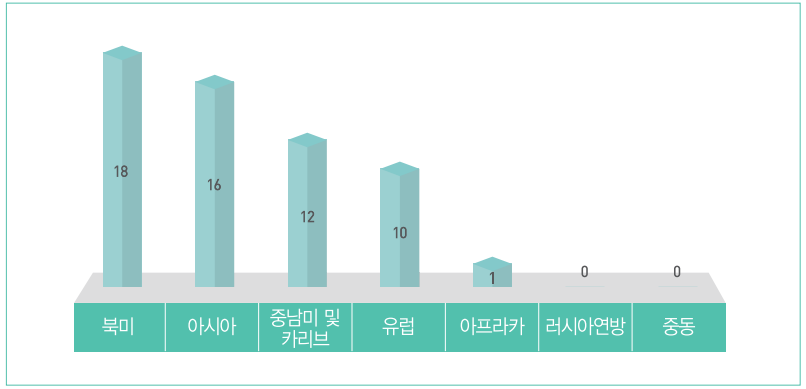
[표 II-9] 2018년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특정무역현안(STC)

번호	대상국가	특정무역현황(STC)	소관부처
1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환경부
	미국		
	스위스		
	호주		
	일본		
	중국		
2	유럽연합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개정안	보건복지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칠레		

② 지역별 STC 현황

2018년 신규 STC를 제기한 국가[7]들을 [그림 II-18]과 같이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북미와 아시아가 각 18건(31.6%), 16건(2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이 12건(21.1%), 유럽이 10건(17.5%)을 제기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신규 STC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2018년도에는 1건(1.8%)의 신규 STC를 제기하였다.

[그림 II-18] 2018년 신규 STC를 제기한 지역별 현황 (단위: 건수)



또한 2018년에 STC(신규)를 제기 받은 국가[8]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II-19]와 같이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7건(31.8%), 아시아 5건(22.7%), 유럽 4건(18.2%)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9] 2018년 신규 STC를 제기 받은 지역별 현황 (단위: 건수)



7) '지역별로 제기된 신규 STC'는 해당 지역이 신규 STC를 제기한 횟수를 나타냄. 하나의 STC가 상이한 지역에 속한 여러 회원국에 의해 제기될 수 있음.
8) '지역별 STC대상'은 해당 지역의 조치가 신규 STC의 대상이 된 횟수를 말함.

중남미(총7건)에서는 칠레와 브라질이 각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이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총 5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이스라엘, 인도가 각 1건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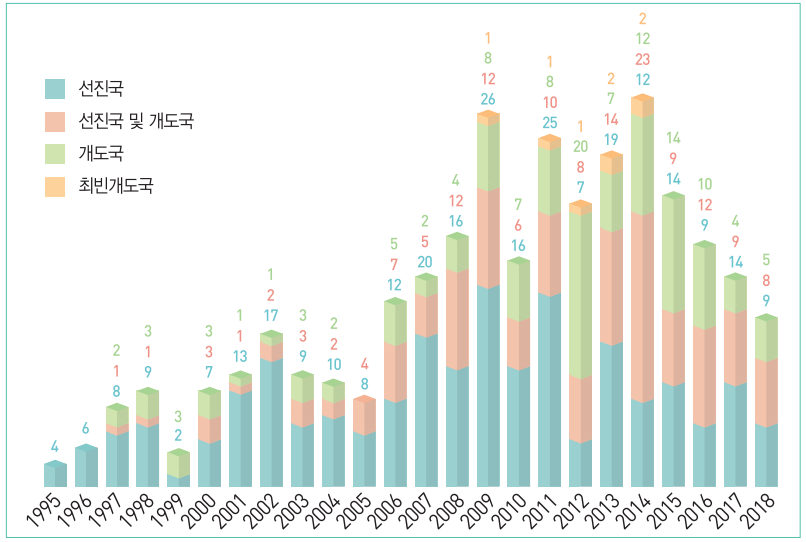
[표 II–10] 2018년 신규 STC를 제기 받은 국가 및 비율

대상국가	STC 제기 받은 건수	비율(%)
유럽연합	4	18
칠레	2	9
미국	2	9
브라질	2	9
인도네시아	2	9
중국	1	5
러시아	1	5
이스라엘	1	5
이집트	1	5
도미니카공화국	1	5
에콰도르	1	5
인도	1	5
콜롬비아	1	5
GSO	1	5
태국	1	5
합계	22	100

③ 선진국 vs 개도국

2018년 신규 STC의 약 9건(41%)은 선진국 회원국들이 제기한 것이고, 8건(36%)의 경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회원국이 함께 제기하였고, 5건(23%)은 개도국 회원들이 독자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20]). 2018년에 최빈개도국이 제기한 신규 STC는 없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신규 STC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WTO TBT 위원회에 대한 개도국들의 이해와 활용이 높아졌으며, 신흥국으로써 경제 성장과 함께 국제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I–20] 1995~2018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 및 점유율 (단위: 건수)



3) 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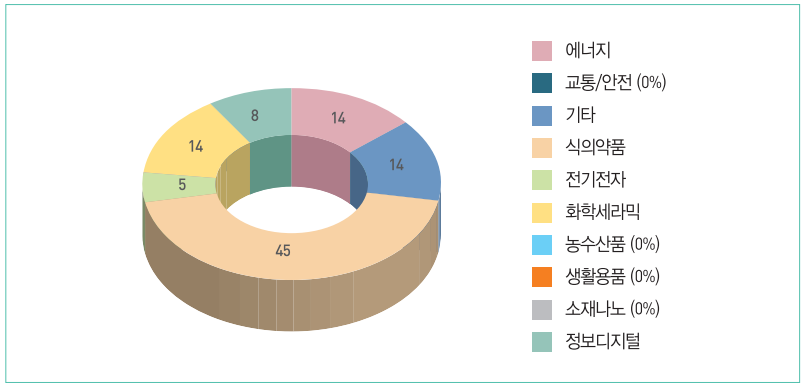
[그림 II–21]과 같이 2018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의약품 분야의 STC가 45%(1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화학세라믹, 에너지 및 기타 분야가 14%(각 3건), 정보디지털 분야가 8%(2건), 전기전자 분야가 5%(1건)로 나타났다.

앞서 [표 II–5]에서 전기전자 분야가 전체 통보문에서 2년 연속 3위를 차지한 것과는 달리, 전기전자 분야의 신규 STC 제기 건수가 2018년 5%(1건)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분야는 특히 국제표준의 개발 및 조화를 강조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여부를 기준으로 원만한 의견수렴 및 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디지털 분야 통보건수가 2016년 10위(51건)에서 2018년 11위(65건)를 기록하였으며, 신규 STC 제기 건수는 2016년 3%(1건)에서 2018년 8%(2건)를 나타났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품 표준, 기술규정, 시험 · 인증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사이버공간에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상품과 서비스 융합상품의

대두, 콘텐츠무역, 기술무역 확대에 따른 글로벌 표준 강화로 인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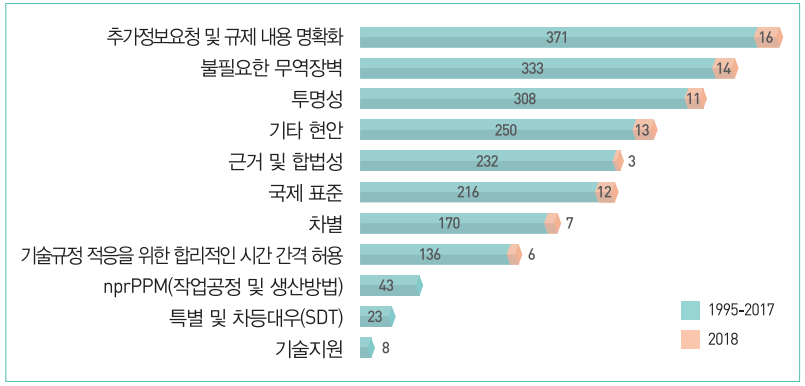
[그림 II-21] 2018년 신규 STC의 분야별 비중 (단위: %)



4) 유형별

[그림 II-22]와 같이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가정보 요청 및 규제내용 명확화'와 관련된 STC가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 347건, '투명성' 319건, '기타 현안' 263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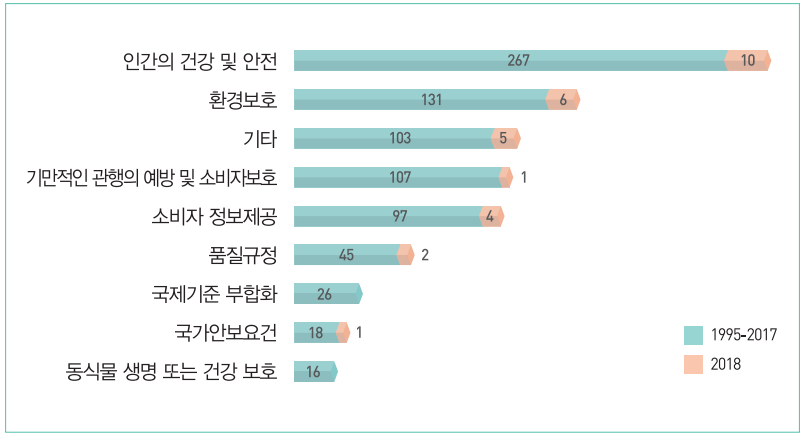
[그림 II-22] 1995~2018년 신규 STC의 유형 현황 (단위: 건수)



5) 목적별

[그림 II-23]과 같이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특정무역현안(STC)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인간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STC가 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보호' 137건,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와 '기타'가 108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3] 1995~2018년 신규 STC의 목적별 현황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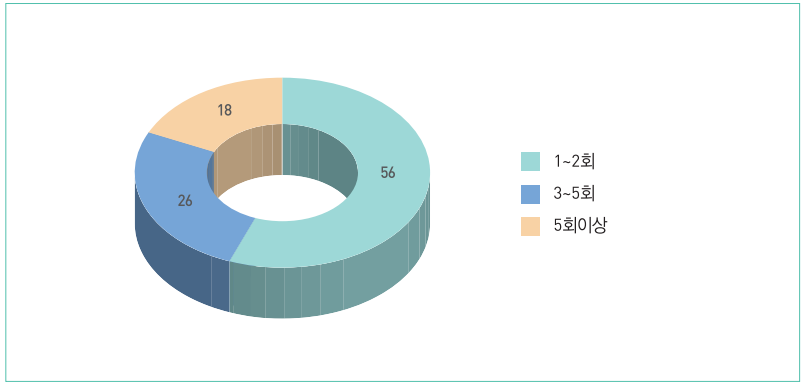


6) 빈도

[그림 II-24]와 같이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특정무역현안(STC)을 빈도별로 살펴보면, STC의 대부분은 WTO TBT 위원회에서 1~2회 제기(56%)되었다. 특정 규제에 대한 STC 제기 횟수가 많다는 것은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상 마찰요인으로 지적될 우려가 높음을 의미한다.[8)]

8) WTO SPS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 및 사례(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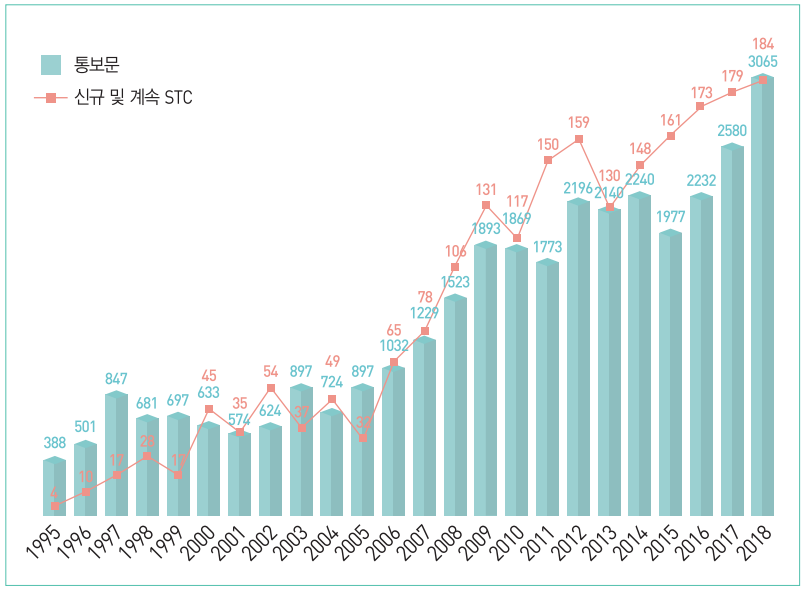
[그림 II-24] 1995~2018년 빈도별 특정무역현안(STC) (단위: %)



7) 통보문과 STC 간의 관계

[그림 II-25]와 같이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신규 및 계속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 건수와 통보문 건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사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5] 1995~2018년 신규 통보문과 신규 STC의 관계 (단위: 건수)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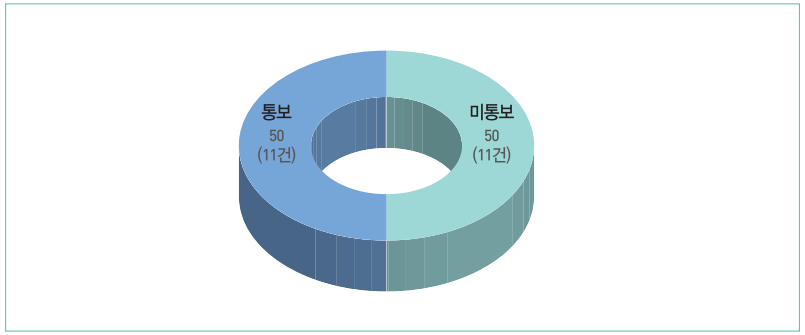
기술규제 동향

3. 미통보 특정무역현안(STC)[9] 동향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의 신규 기술규제 통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WTO TBT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은 이른바,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통보 기술규제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표준인증 및 무역통상 전문가의 규제 발굴, 분석을 필요로 하므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 · 중견 수출기업에 큰 애로로 작용될 수 있다. WTO TBT 미통보 기술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통보 기술규제의 특정무역현안들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1) 미통보 기술규제의 STC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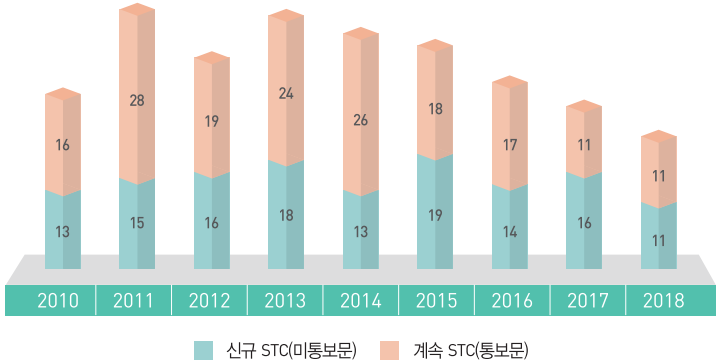
[그림 II-26] 통보 vs. 미통보 기술규제의 2018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비율 (단위: %)



9) 미통보 특정무역현안: WTO TBT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은 이른바, 미통보문 규제에 대해 이해당국이 제기한 특정무역현안을 의미함.

2018년의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22건 중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신규 STC 제기 건은 11건(50%), 통보된 기술규제도 11건(5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신규 STC 제기 건수는 2017년도에 16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도에 11건으로 감소했다.

[그림 II-27]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최근 3년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의 추이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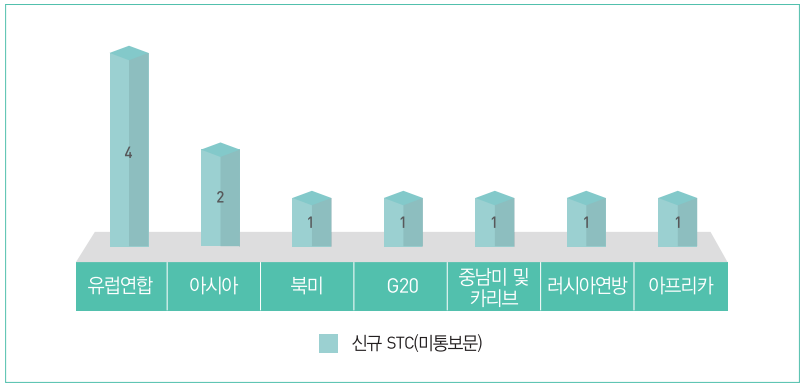
2) 국가별

① 지역별 STC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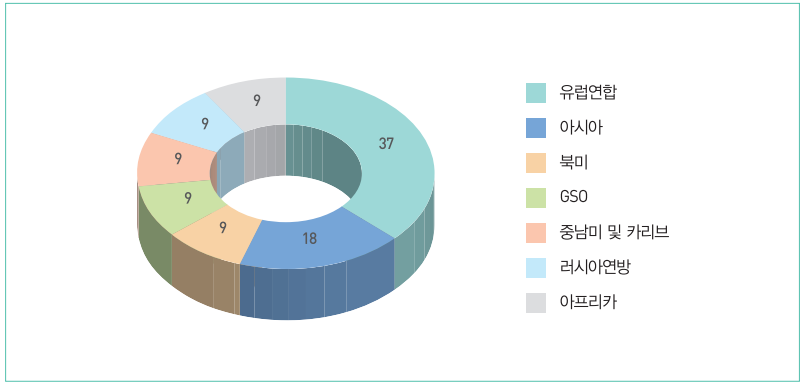
2018년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해 신규 STC 제기를 받은 국가들을 [그림 II-28]과 같이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유럽연합이 4건(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아시아 2건(18%), 북미, GSO, 중남미 및 카리브, 러시아연방 및 아프리카가 각 1건(9%)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해 신규 STC로 제기된 수와 비율을 보면 유럽연합이 4건(3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 태국, 미국, 러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및 GSO가 각 1건(9.1%)이며, 우리나라가 미통보 규제로 제기 받은 STC는 없었다([표II-11]).

[그림 II-28]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해 신규 STC의 제기를 받은 지역별 현황 (단위: 건수)



[그림 II-29]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신규로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의 지역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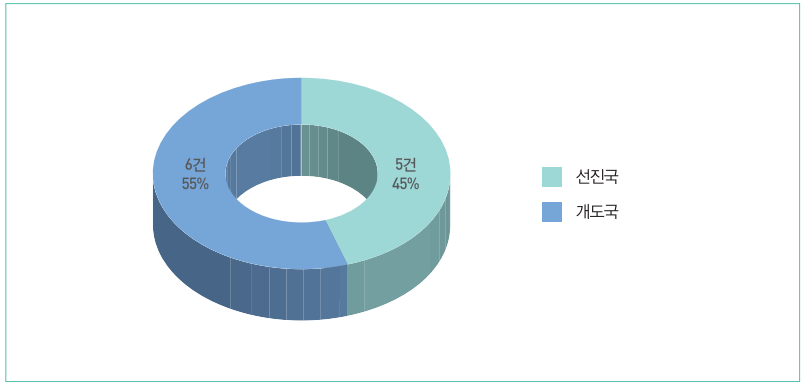
[표 II-10] 2018년 신규 STC를 제기 받은 국가 및 비율

국가	STC 제기 받은 건수	비중 (%)
유럽연합	4	36.3
중국	1	9.1
태국	1	9.1
미국	1	9.1
러시아	1	9.1
도미니카공화국	1	9.1
이집트	1	9.1
GSO	1	9.1
합계	11	100

③ 선진국 vs. 개도국

2018년 미통보 기술규제 건들에 대해 신규로 STC를 제기 받은 국가들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그림 II-30]과 같이 구분해 보면, 선진국이 5건, 개도국이 6건으로 선진국 미통보 규제에 대한 STC 제기가 개도국 미통보 규제에 대한 STC 제기 건수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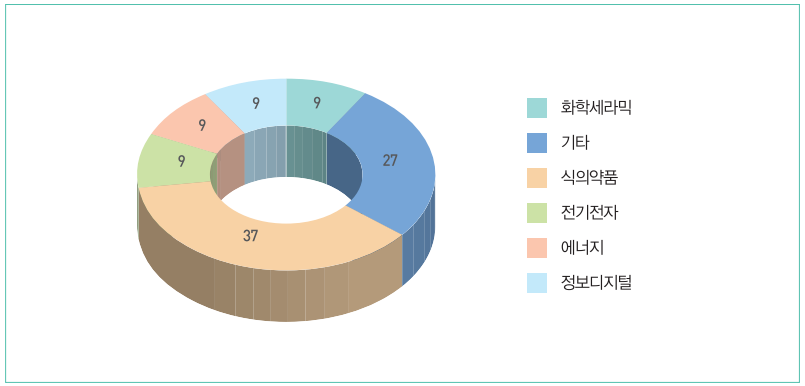
[그림 II-30] 2018년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 받은 선진국 vs. 개도국 비율



3) 분야별

[그림 II-31]과 같이 2018년의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해 신규로 제기 받은 STC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의약품 분야의 STC가 37%(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 기타 분야 27%(3건), 전기전자, 화학세라믹, 에너지, 정보디지털 분야가 각 9%(1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1] 2018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중 미통보 기술규제의 분야별 분류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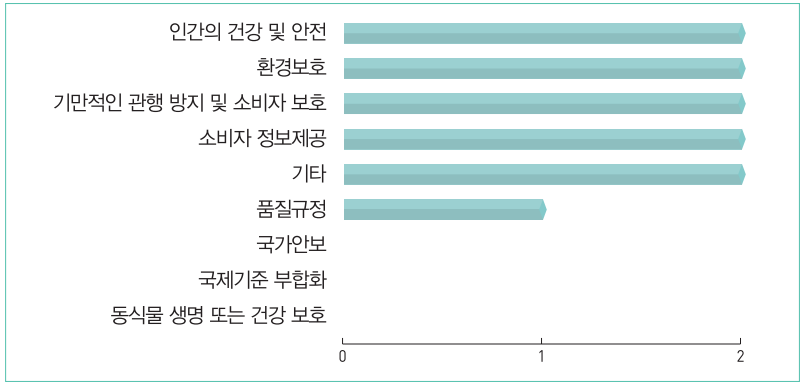


4) 목적별

[그림 II-32]와 같이 2018년도 미통보된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인간의 건강 및 안전', '환경보호', '기만적 관행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기타'와 관련된 STC가 각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품질규정' 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미통보된 신규 STC의 목적별 분류 중 '국가안보요건'은 6건으로 2016년도 0건 대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국가안보요건의 신규 STC는 없었다.

[그림 II-32] 2018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중 미통보 기술규제의 목적별 분류 (단위: 건수)



PART III

대응체계 및 성과

1. 수출기업을 위한 TBT 대응 지원체계
2. 주요 정책 및 성과
3. TBT 대응사례
4. 우리 수출기업 TBT 대응 성공사례



PART III

대응체계 및 성과

1. 수출기업을 위한 TBT 대응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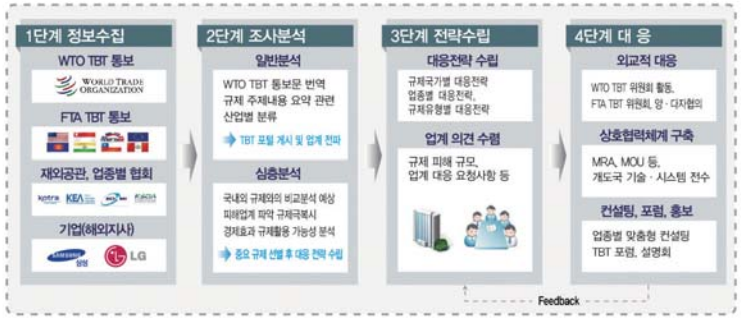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3년 12월에 해외기술규제 대응 강화와 국내 기술규제의 개선을 위해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하였다.

기술규제대응국의 주요 활동으로는 WTO TBT 협정의 준수와 이행을 통한 국가 대외신뢰도 향상 및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 · 분석하여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과 이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상대국 기술규제의 완화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절차는 해외기술규제 정보수집 조사 · 분석, 전략수립, 대응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각국이 발표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과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각국의 기술규제를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를 발굴하고 있다. 입수된 해외기술규제를 업종별 협단체와 시험 · 인증기관 등을 활용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 · 전자, 화학 · 생활, 기계 · 금속, 식 · 의약품 등 산업 분야별 20개 협단체, 기업, 시험기관 등 총 28개 기관으로 구성된 'TBT 대응 컨소시엄'을 201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WTO에 통보되는 TBT 통보문은 물론 미통보된 해외기술규제를 발굴하고 번역 · 분석하여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III-1] 해외기술규제 대응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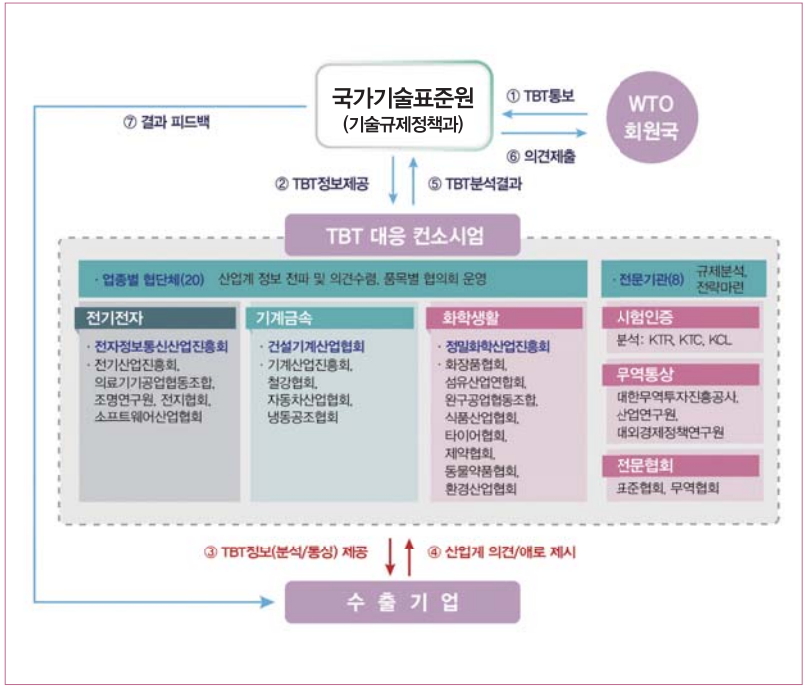


제공된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수렴된 업계 애로는 외교적 대응 필요시 상대국의 TBT 질의처 및 규제부서에 우리측 요구사항을 공식 서한으로 전달하고, WTO TBT 위원회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한 양 · 다자회의를 통해 우리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규제를 쏟아내고 있어 해당 업계가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미리 대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에 기술규제, 시험 · 인증 등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의 주

[그림 Ⅲ-2] TBT 대응 컨소시엄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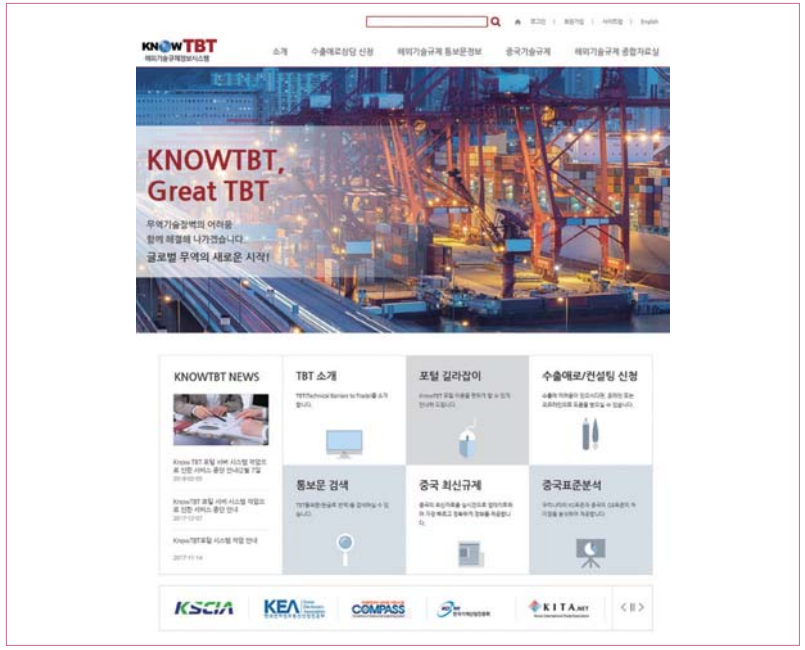


요 콘텐츠는 [그림 Ⅲ-3]과 같으며, 통보문, 미통보문의 번역본과 함께 주요 기술규제를 정리한 요약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이 더욱 쉽게 기술규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이 실시간 통보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TBT 자동경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TBT 자동경보서비스는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에 가입한 후 신청가능하며, 관심 품목분야의 해외기술규제가 포함된 TBT 통보문(번역본)을 전자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자사 제품의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나 비영어권 국가의 규제원문 해석 및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대응이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TBT 컨소시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

[그림 Ⅲ-3]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 메인화면 및 구성



[그림 Ⅲ-4] TBT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 이메일 수신 화면



흥회(KE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KSCIA),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 등 관련 협단체들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달한다. 각 분야별 해외기술규제 의견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 담당분야: 전기전자, 정보디지털, 에너지, 식의약품(의료기기), 기타 • 전화: 02-6388-6184 • Email: knowtbt@gokea.org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KSCIA)	• 담당분야: 화학세라믹, 바이오환경, 생활용품, 식의약품(화장품, 의약품) • 전화: 02-2088-7254 • Email: yjsung@kscia.or.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	• 담당분야: 기계, 건설, 소재나노, 교통안전 • 전화: 070-8661-0804 • Email: terra67@kocema.org
한국기계산업진흥회(KOAMI)	• 담당분야: 기계류 • 전화: 02-369-7874 • Email: jylim@koami.or.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 담당분야: 소프트웨어 • 전화: 02-2188-6933 • Email: hjh@sw.or.kr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KLFLC)	• 담당분야: 경관조명기구, 형광등기구 • 전화: 032-681-3112 • Email: industry7@naver.com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KRAIA)	• 담당분야: 냉난방공조기기 • 전화: 02-785-1195 • Email: yh.kim@ref.or.kr

대응체계 및 성과

2. 주요 정책 및 성과

1) 국가기술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조사 · 분석한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전파하고 외국의 규제당국과 기술규제에 대해 협상하는 등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수출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외국이 도입한 기술규제 3,065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했다. 특히, 70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원문분석, 국내외 기술규제비교, 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분석하고 수출기업에 전파하였다. 외국의 규제가 TBT 협정 등 국제표준 등에 위배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WTO TBT 정례회의, 현지 당국 방문 등을 통하여 상대 국가에 특정무역현안 등으로 공식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상대국에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18년 112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그중 49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술규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시험 · 인증 · 규제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현장컨설팅 사업을 신설해 585건의 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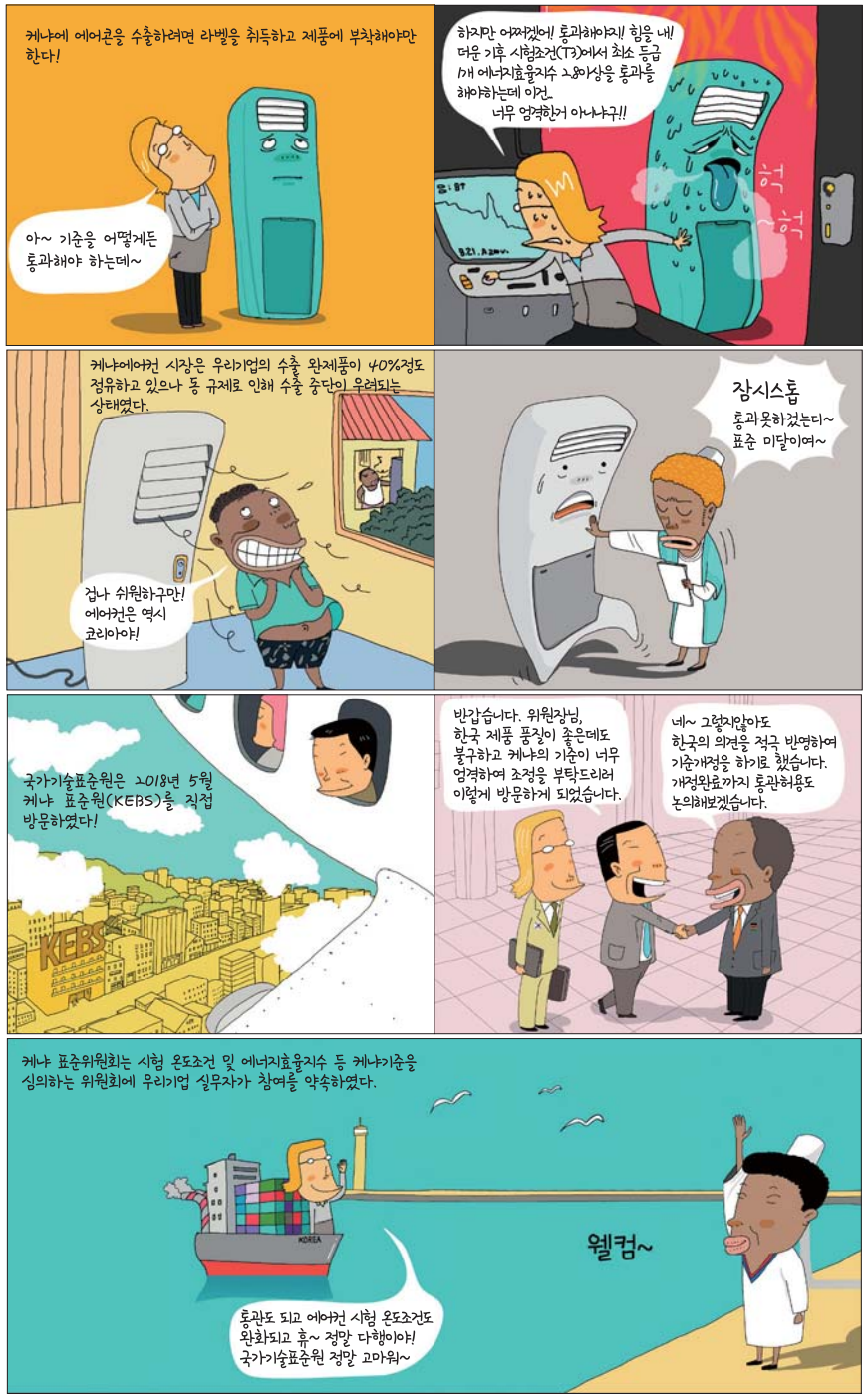
2) WTO TBT 위원회 계기 해외기술규제 애로대응 및 성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위원회)는 WTO 회원국들이 TBT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 동 협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통상 1년에 3차례(2018년 1차 3.20.~22., 2차 6.19.~21., 3차 11.13.~15.)의 정례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외국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타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타국과 공조하여 우리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기술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18년 1차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양 · 다자협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6월에 개최된 2차 정례회의에서는 14개 당사국들과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협의하여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으며, 3차 정례회의에서는 30건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하여 15개국과 양 · 다자협의를 실시하였고, 중국과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앞장섰다.

3) 케냐 현지방문으로 TBT 애로 해소

케냐에 수출하는 에어컨은 에너지위원회로부터 에너지라벨을 취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라벨 취득 시에 케냐표준(KS 2463)이 요구하는 더운 기후 시험조건(T3)에서 최소등급(별(☆) 1개, 에너지



효율지수 2.8 이상)을 만족해야만 통관 · 판매가 가능하나, 동일 시험조건을 갖는 아랍에미리트의 최고 등급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만족할 것을 요구했다. 케냐 에어컨시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완제품이 40% 정도 점유하고 있으나, 동 규제로 인해 수출 중단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5월 케냐표준원(KEBS)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케냐측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개정 및 개정완료 시까지 통관허용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험 온도조건 및 에너지효율지수 등 케냐 기준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우리 기업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우리측의 요청이 반영되어 통관이 허용되었고 에어컨 시험 온도조건이 완화되었음을 전달받아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4) 규제당국자 초청을 통한 규제협력 방안 논의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중동, 인도, 인도네시아 총 3개국의 해외기술규제 당국자를 초청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규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5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 중 6개국 기술규제 당국자를 초청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GSO 회원국이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추어 품질 · 안전, 에너지 ·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거나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규제 담당자가 직접 규제제도를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인도 표준국(BIS)의 인증 책임자를 초청하여 인도의 강제인증제도 관련 최신 규제동향을 우리 수출기업 담당자가 듣고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10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BSN) 및 산업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규제 당국자로부터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듣고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처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기술규제 당국자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사전에 인지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수출에 애로가 없도록 사전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5) 해외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사전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지역별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신 해외기술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중국 기술규제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현장 상담소를 설치하여 참가 기업들로부터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접수해 시험 · 인증 분야 전문가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직접 애로해소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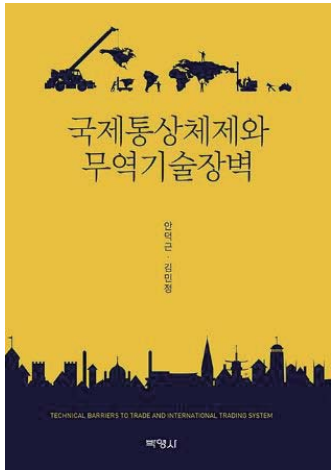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중국,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크고, 4천 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서 현지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베트남 정부의 시험 · 인증 등 규제제도와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현지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정부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정책과 지원사업,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베트남 통관절차 등에 대해 베트남 진출기업 및 현지기업에 소개하였으며, 규제애로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상담도 실시했다.

6) 전문인력 양성으로 TBT 대응기반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TBT 대학(원) 전공과목 및 특강을 개설하여 인력양성 기반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TBT 대응 전문과목을 개설하고, 숭실대학교 학부에 TBT 정책에 관한 일반지식과 분석방법에 관한 강의를 개설했다. 또한 대학, 협단체에 TBT 실무자 · 전문가의 특별강연을 운영하여 실무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는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2017년부터 대학(원) 수준의 일반인이 입문서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를 개발 · 보급하고, TBT 관련 분야 산 · 학 · 연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해외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2018년도 해외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①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힘써온 유공자 표창과 ②논문경연 대회에 대한 수상자 시상이 있었으며 ③해외기술규제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유공자 표창 :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6점(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4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표창 2점) 수여



논문대회 시상 :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新보호주의 등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의 기술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논문대회에서 8개 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팀, 국가기술표준원장상 3팀, 국제경제법학회장상 3팀) 수상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와 곽주영 연세대학교 교수가 각각 新NAFTA 협상 체결과 TBT 정책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표준체계 개편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주제발표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보호주의에 따른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우리의 TBT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

8) 수출기업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현장컨설팅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 · 인증기관의 전문가가 컨설팅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취득 등 규제극복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

수출 준비 또는 수출 중인 중소 · 중견기업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컨설팅 준비	컨설팅 수행	종료 및 사후관리
온 · 오프라인 접수, 신청서 검토, 담당기관 배정	사전미팅/요구사항 분석/일정조율, 컨설턴트 배정, 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자료조사, 신청기업 현장 컨설팅 실시	컨설팅 결과보고, 만족도조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지원내용

연번	주요내용
1	수출국 시장동향 및 기술규제, 시험 · 인증 관련 일반정보 제공
2	수출대상 품목의 시험 · 인증 절차 · 방법 등 세부 기술 자문
3	수출국 시장 및 기술규제 · 시험 · 인증 동향에 대한 심층보고서 제공
4	수출대상 품목 관련 기술규제 원문 번역서비스 제공
5	R&D, 해외인증취득 등 정부 · 지자체 지원사업 연계
6	수출국 규제당국과 협상을 통한 TBT 애로해소 지원
7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인력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훈련 실시

신청 및 문의

TBT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접수처(E-mail 또는 FAX)로 송부

해외기술규제 (중국 제외)	중국기술규제
• E-mail tbt@ktc.re.kr	• E-mail tbt@ktl.re.kr
• FAX 031-455-7237	• FAX 02-860-1379
• 문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78, 7581)	• 문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81)

9) 해외기술규제 동향조사 및 원문번역 서비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을 고려하는 국가의 시장동향,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규제, 시험 · 인증 정보 및 TBT 현황 등 종합적인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해외기술규제 동향조사'와 비영어권 국가의 해외기술규제 원문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술규제 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통보문에 대해 관련 국가로부터 새로운 규제내용에 대한 상세원문을 신속히 입수하고 분석하여 업계, 협단체, 시험 · 분석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

TBT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접수처(E-mail 또는 FAX)로 송부

- **E-mail** jiyeonkong@ktr.or.kr
- **FAX** 02-2634-0035
- **문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0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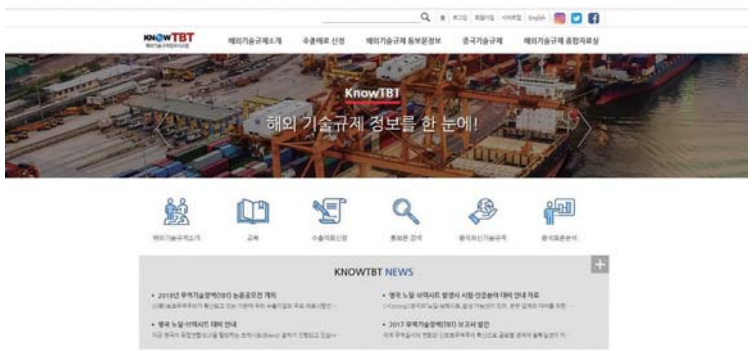
※ 신청내용은 정보의 접근성 중요도 선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선정됩니다.

10) 해외기술규제 정보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wotbt.kr)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운영해온 동 시스템은 WTO 사무국에 통보된 통보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관심 분야별 통보문 자동경보 메일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우리 기업들이 최신의 TBT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기술규제' 메뉴를 별도 개설하여 ①한중 TBT 종합지원 안내 ②중국 TBT 정보 ③중국표준분석 ④한중 TBT 대응사례 등으로 구성하여 수출기업이 중국 기술규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페이스북(facebook.com/knowtbt), 인스타그램(instagram.com/knowtbt), 트위터(twitter.com/knowtbt)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다.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



페이스북(facebook.com/knowtbt)



인스타그램(instagram.com/knowtbt)



트위터(twitter.com/knowtbt)



대응체계 및 성과

3. TBT 대응사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서 설명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체계를 통해 2018년 WTO에 통보된 3,065건의 TBT 통보문과 C2P, 규제당국 홈페이지, 시험 · 인증기관 웹사이트, 해외 기업법인, KOTRA 해외지사 등을 통해 발굴된 510건의 미통보 규제 중 수출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중소기업 품목에 적용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심층분석(총 705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애로사항이 발굴된 기술규제에 대해 WTO TBT 위원회, 현지방문 및 민간채널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발굴된 애로사항의 주요 유형은 모호한 규정, 짧은 시행유예기간, 과도한 규제,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기준 등이 많았다. 발굴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측 요구사항을 통보국의 TBT 질의처 및 규제부서에 전달하고, 연 3회 개최(3월, 6월, 11월)되는 WTO TBT 위원회 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이의제기를 하거나 상대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또한, 규제 개선이 시급한 경우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미팅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본 장에서는 2018년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응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이슈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활동 사례(51건)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 Ⅲ-1] 2018년 주요 활동사례 중 협의의제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2건)으로 애로사항 해소 2건, 일부해소 5건 등이 있으며, 미해소 의제는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다.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와는 13건의 의제가 합의되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우리측 의견 반영을 위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WTO TBT 위원회 채널 활용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TBT 전담기관 및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규제협력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Ⅲ-1] 2018년 WTO TBT 위원회 및 현지방문을 통한 국가별 대응사례(51건)

구분	국가	규제내용
아시아 지역		
1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2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 방법
3		암호기술법
4		차량연계 네트워크보안 보호 가이드라인
5		정보보안보호등급 관리방법
6		전기차 · 전기차배터리 · 전기버스 안전표준
7		고형폐기물 수입금지 규제
8		화장품 라벨링 규제
9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10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11		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12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13	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14		배터리 및 배터리 제품 BIS 인증
15		폐가전제품 재활용 요구(WEEE)
16		가정용 룸 에어컨
17		포장재(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제
18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규제
19	대만	TV · 모니터 에너지효율 등급 및 라벨링
20	베트남	타이어 안전 규제
21	태국	자동차 타이어 안전표준(TIS) · 인증
22		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

중동 지역		
23	사우디아라비아	세탁기 에너지 및 물소비효율 라벨링
24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인증
25		냉장고 성능평가 및 라벨링
26	GCC(GSO)	저전압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 인증
27		RoHS 규제
28	아랍에미리트	ECAS 적합성마크 사용 정책 규제
29	바레인	에어컨 에너지효율 및 라벨 규제
30	쿠웨이트	에어컨 에너지효율 및 라벨 규제
31	오만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32	이스라엘	화장품 규정(약사법)
유럽 지역		
33	EU	전자 디스플레이 Eco Design
34		F-GAS(냉매) 규제
35		광원(Light source)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
36		냉장고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
37	프랑스	무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표시 규제
38	우크라이나	RoHS 규제
39		청소기 에코디자인
중남미 지역		
40	콜롬비아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라벨링
41	파나마	에어컨 에너지효율 라벨링
42	페루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43	칠레	TV 에너지효율 규제
44	에콰도르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규제
45	아르헨티나	TV 에너지효율 라벨링
북미 지역		
46	미국	낙뢰보호시스템(LPS)
47	캐나다	TV 에너지효율 및 라벨
아프리카 지역		
48	이집트	가전제품 에너지 및 안전 규제
49		진공청소기 에너지효율 규제
50	케냐	에너지효율 및 라벨 규제
51	나이지리아	에너지성능 표준 규제

1) 아시아 지역

①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내 네트워크 제품 · 서비스 제공자와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관련 WTO 미통보 규제를 발굴했다. 해당 규제는 2017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비밀 유출이 우려되고 관련 표준개발 과정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계가 규제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WTO 통보가 되지 않아 규제 세부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위원회 양자 및 다자회의(2018년 3월, 6월, 11월)에서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 공조하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취득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협조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과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지정과 안보심사가 중국 정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규제

규제명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관련부처	국가사이버관리국(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목적	중국 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사이버보안 감독 관리
대상제품	중국 내 네트워크 사용자,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
HS 코드	8517, 8471, 8525, 8526, 8527, 8528
규제내용	중국 내 네트워크 사용자 및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운영 안전, 개인정보보호, 불법정보 단속, 네트워크 제한조치, 법적책임 등을 다룸
시행일	2017년 6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7,519,325), 2017년(5,170,809), 2018년(4,050,447)

* 무역협회 기준

부로부터 자의적으로 운영되므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예상되어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요청했다. 또한, 표준개발 시 국제표준 준용과 국외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하위규정 도입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과 해당 규제를 WTO에 통보해 줄 것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에 대한 경외반출 금지(법 제37조)에 대해 기업들이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 위험이 높은' 규정에 대한 예시, 구체사례 등을 포함한 지침서 제공을 요청했다.

중국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소스코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 기밀유출도 방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일반적인 모법으로 향후 지정기준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임을 언급하며 표준개발 과정에 해외 관계자를 참여시켜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측의 세부규정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② 중국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방법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이 WTO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 내 네트워크 제품 · 서비스 제공자와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사이버보안법 제35조[1]의 이행을 위한 세부규정인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방법을 2017년 6월 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규제는 시행 중이나, 표준개발 과정에서 해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보안심사 대상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점 등 규제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이 규제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위원회 양자 및 다자회의(2018년 3월, 6월, 11월)에서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 공조하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규제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3자 기관의 관련 업체 · 관계자의 보안심사 과정이 아닌 기업의 기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과 표준개발 시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해외 관계자도 표준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심사를 결정하는 명확한 판단기준과 보안심사 시 협력에 대한 범위 및 절차 명확화를 요청했다.

이에 중국측은 보안심사 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전해왔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측의 세부규정 발표가 없어 우리측은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요청하고 있으며, 업계의 애로

중국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방법

규제명	중국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방법 개요
관련부처	국가사이버관리국(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목적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 보안의 제어능력 향상, 물류보안 위협 예방, 국가안보 및 공익 보존
대상제품	중국 내 네트워크 사용자,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
HS 코드	8517, 8471, 8525, 8526, 8527, 8528
규제내용	중국 내 네트워크 사용자 및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운영 안전, 개인정보보호, 불법정보 단속, 네트워크 제한조치, 법적책임 등을 다룸
시행일	2017년 6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7,519,325), 2017년(5,170,809), 2018년(4,050,447)

* 무역협회 기준

1)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운영자가 인터넷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서 및 국무원해당조직의 국가안보심사를 거쳐야 함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③ 중국 암호기술법 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이 WTO에 통보하지 않고 암호기술이 탑재된 제품에 대한 규제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규제는 암호기술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또한, 라이센스(면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불필요한 시험 · 인증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유출 우려가 있었다. 이밖에 모호한 규정 등으로 수출기업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중국 내에서만 의견수렴을 하는 등 규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수출국가에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위원회 양자 및 다자회의(2018년 3월, 6월, 11월)에서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 공조하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WTO TBT 통보를 통해 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상업암호화 기술이 탑재된 일반 ICT 제품에 대해 면허제도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또한 시험 · 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기밀정보 등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도록 근거조항 마련과 암호기술법 관련 국가 · 업계 표준 도입 시 국제표준 준용 및 국외 이해관계자의 표준개발 참여 보장을 요청했다.

중국측은 우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표준 도입 시 국외 이해관계자의 표준참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외 우리측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중국측은 암호기술법을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④ 중국 차량연계 네트워크보안 보호 가이드라인 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TIAA(차량탑재정보서비스산업연맹)에서 자동차 IoT 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련 임의 가이드를 제정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해당 규제는 보안 S/W 선정 및 관리, 외부보안 요건, 데이터보안 요건, 신원확인 등 차량 네트워크보안을 위한 세부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는 임의규정이지만 향후 강제규정으로 편입될 경우 서비스 플랫폼의 중국 내 위치로 인한 지적재산권 피해 유출이 우려됐다. 또한 WTO 통보가 되지 않아 규제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 공식서한을 발송(2018년 3월, 6월)하고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 6월)를 통해 임의제도인 해당 규제가 향후 강제화 될 것을 우려하는 업

중국 암호기술법 규제

규제명	Cryptograph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관련부처	국가 암호화 관리국(Department of the State Cryptography Administration)
목적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의 적용 및 암호관리, 보호의 표준화
대상제품	암호기능이 있는 암호화 제품 전체
HS 코드	8517, 8471, 8525, 8526, 8527, 8528
규제내용	상업암호화(commercial cryptography) 제품에 대해서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추후 암호화 시험 · 인증 관련 규정 개발 예정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7,519,325), 2017년(5,170,809), 2018년(4,050,447)

* 무역협회 기준

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 정비용 상태 감시, 블랙박스 신호 등을 수집하는 플랫폼서버(4조)가 해외에도 위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차량 단말장치 등의 보안 S/W가 받아야 하는 안전평가(1조) 방법, 절차 등 세부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측은 데이터를 중국 내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⑤ 중국 정보보안 보호등급 관리방법

중국은 2017년 6월 열린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정보보안 보호등급 관리방법을 사이버보안법을 적용하여 개정할 예정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중국 공안부는 정보보안 보호등급 관리방법을 통해 2007년 6월 22일부터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보호등급체계(MLPS, Multi Level Protection Scheme)를 시행하여 3등급 이상은 중국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규제는 외국 기술 · 제품 구매를 억제하여 우리 업계에서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통보가 되지 않아 규제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을 발송(2018년 3월, 6월)하고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 6월)에서 중국 정부에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2017년 6월 WTO TBT 위원회에서 중국측이 발표한 정보보안 보호등급 관리방법 개정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MLPS 3급 이상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실상 중국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조항에 규정하고 있어, 해외개발 · 생산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규제조항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중국측은 우리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별적 규제조항을 철회한 개정안을 발표(2018년 6월)하였고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차별적 독소조항이 제거되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

중국 차량연계 네트워크보안 보호 가이드라인 규제

규제명	Vehicles Cybersecurity Protection Guideline Rules
관련부처	차량탑재정보서비스산업연맹
목적	교통안전, 사회 및 국가보안
대상제품	차량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자 및 관련 상품기획, 설계, 구축, 운영관리, 평가 부분 종사자
HS 코드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9, 8710, 8711, 8713, 8716
규제내용	자동차 IoT 시스템의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보안 S/W 선정 및 관리, 외부보안 요건, 데이터보안 요건, 신원확인 등 차량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세부지침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85,259), 2017년(64,208), 2018년(26,599)

* 무역협회 기준

중국 정보보안 보호등급 관리방법

규제명	정보보안 보호등급 관리방법
관련부처	암호화 관리국
목적	국가보안 및 공익보호
대상제품	정보를 암호화 보호하거나 보안인증에서 사용하는 암호기술 및 암호제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HS 코드	8517, 8471, 8525, 8526, 8527, 8528
규제내용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보호등급 관리방법, 등급분류, 등급보호 실시, 법률적 책임 등을 다룸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7,519,325), 2017년(5,170,809), 2018년(4,050,447)

* 무역협회 기준

⑥ 중국 전기차 · 전기차배터리 · 전기버스 안전표준 규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WTO TBT 통보 없이 전기차 관련 신규 GB표준(안) 3종 제정을 예고(2018년 1월)하고, 1개월 간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및 전기버스 표준의 일부 시험항목은 국제표준이 없거나 과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을 발송(2018년 3월)하고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 6월)에서 WTO TBT 통보 및 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의견수렴 기간에 개진한 의견을 표준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표준(GB) 도입 시 국제표준 준용 및 국외 이해관계자의 표준개발 참여보장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중국측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전기차 표준화위원회(TC 114/SC 27) 참여보장을 약속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노력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우리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중국 전기차 · 전기차배터리 · 전기버스 안전표준 규제

규제명	「전기차 안전요구」,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구」, 「전기버스 안전요구」
관련부처	공업정보화부
목적	건강 및 안전
대상제품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전기버스
HS 코드	8507.60, 8702, 8703, 8704, 8705, 8708
규제내용	전기차, 전기버스의 조작안전 및 고장방지, 구동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보조시스템의 안전, 차량 내 · 외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 등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5,579,570), 2017년(3,394,966), 2018년(2,937,109)

* 무역협회 기준

⑦ 중국 고형폐기물 수입금지 규제

중국은 폐지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2017년 12월 31부터 금지하고 스크랩 등 11종의 불순물 허용기준을 2018년 3월부터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2017년 7월)했다. 규제에 따른 원자재로 수입되는 폐지에 대한 불순물 함유량 0.5% 기준은 EU 및 우리나라 기준 대비 과도하며, 유해성이 낮은 PET제품[2]의 수입금지는 불합리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되는 상황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을 발송(2018년 5월)하고 WTO TBT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6월, 11월)를 통해 중국 정부에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수입 폐기물에 대한 불순물 허용기준은 수입제품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중국내 제품과의 차별 대우를 우려하며, 내국민대우를 요청했다. 또한 폐지의 불순물 함유량 기준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EU 수준인 1.5%로 완화를 요청하고, 플라스틱 세척 및 파쇄작업을 통해 불순물이 거의 없는 PET 병 및 플레이크에 한해 수입금지 조치 예외적용을 요청하였다.

중국측은 우리측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답변을 송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측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업계의 애로사

2) 페트병 및 세척 PVC 플레이크 등

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⑧ 중국 화장품 라벨링 관리방법 개정(안)

중국은 화장품의 모든 효능표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제3자 검증과 입증한 효능평가보고서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라벨 관리방법(안)을 WTO에 통보(2014년 12월)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 6월, 11월)에서 효능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는 수출업체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제3자 입증대신 수출업자 자율 입증, 효능평가대상 구체화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24개월 시행유예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측은 우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개정 진행사항 등 공유할 정보가 없으며 관련 부서에 우리측 질의를 전달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규제의 개정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⑨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안)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이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입수(2014년 11월)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 6월, 11월)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효능광고 근거(문헌자료 또는 연구데이터) 공개 의무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개정안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측은 WTO 통보 여부 및 개정시기 등 업데이트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우리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국 고형폐기물 수입금지 규제

규제명	폐기물 수입금지목록, 폐기물 개별규칙
관련부처	환경부
목적	환경보호
대상제품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바나듐 폐기물, 폐지, 폐방직원료
HS 코드	3915, 2619, 2620, 4707, 5103, 5104, 5202, 5505, 6310
규제내용	폐지 등 24종의 고형폐기물 수입을 금지
시행일	2017년 12월 3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7,519,325), 2017년(5,170,809), 2018년(77,739)

* 무역협회 기준

중국 화장품 라벨링 규제

규제명	Administrative Measure for Cosmetic Labelling
관련부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 Administration)
목적	품질규정
대상제품	화장품
HS 코드	3303.00, 3304.10, 3304.20, 3307.10, 3307.20, 3307.30, 3307.49
규제내용	화장품 라벨(설명서 포함)에 대한 요건 제정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55,254), 2017년(54,142), 2018년(66,977)

* 무역협회 기준

⑩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이 WTO 통보 없이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여 시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2014년 6월)했다. 규제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국의 제조 · 판매증명서를 제출하고,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국 법무부가 2018년 6월 발표한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2등급 또는 3등급 의료기기 허가 시 자체검사보고서 또는 자격 있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2018년 3월, 6월, 11월)에서 '자격 있는 검사기관'에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외국 검사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전 정례회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라고 언급할 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할 방침이다.

⑪ 중국 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이 「의약품 · 의료기기 등록비 기준[3]」을 공포했다는 정보를 입수(2015년 5월)했다. 규제에 따르면 3등급 의료기기 신규 허가 시 수입 의료기기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중국산의 2배 수준으로 중국산과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2018년 3월, 6월, 11월)에서 호주 등과 공조하여 중국측의 의료기기 수수료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의료기기에 부과되는 등록수수료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해당 수수료는 비용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

중국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규제명	Regulations for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Cosmetics
관련부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 Administration)
목적	품질규정
대상제품	화장품
HS 코드	3303.00, 3304.10, 3304.20, 3307.10, 3307.20, 3307.30, 3307.49
규제내용	화장품 라벨규제, 효능 근거자료 공개의무 등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55,254), 2017년(54,142), 2018년(66,977)

* 무역협회 기준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규제명	Regulations for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Medical Devices(Order No. 650 of State Council)
관련부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 Administration)
목적	국민안전
대상제품	의료기기
HS 코드	9018
규제내용	의료기기 분류 정의, 신고 및 등록 절차 명확화 등
시행일	2014년 6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78,364), 2017년(218,083), 2018년(227,101)

* 무역협회 기준

3)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公告2015年第53号(2015.5.27)

고만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⑫ 중국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중국은 수출입식품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을 WTO TBT에 통보(2017년 6월)하였다. 규제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수입식품마다 배치별로 정부 인증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하였고, 중국측은 우리측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하였다(2019년 10월 시행).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2018년 6월, 11월)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시행연기 및 동 규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중국 의약품 · 의료기기 등록

규제명	Registration Feeds for Drugs and Medical Device Products
관련부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 Administration)
목적	국민안전
대상제품	의료기기
HS 코드	9018
규제내용	의약품 · 의료기기에 대한 국가식품의약품관리 등록비 (2/3등급)
시행일	2015년 5월 27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78,364), 2017년(218,083), 2018년(227,101)

* 무역협회 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⑬ 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인도는 인도 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을 통해 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를 발표했다. 인도는 규제 대상 범위를 기존 15개 품목에서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적용대상으로는 2차 전지, 어댑터 등이 있다. 규제적용 품목은 현지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와 구비서류를 BIS에 제출하여 BIS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BIS 등록번호가 기재된 BIS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것이 요구된다.

해당 규제와 관련하여 제품 현지시험으로 인한 인증 소요기간 장기화, BIS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규제 시행유예, IECEE CB 스킴에 따른 성적서 인정 요청 등 동 규제이행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 EU와 공조하여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2018년 3월)하고,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중국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안)

규제명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안)
관련부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목적	국민안전
대상제품	식품 등
HS 코드	16, 17, 18, 19, 20, 21, 22
규제내용	식품의 기준, 생산, 판매관련 허가 및 표시 관련 사항 등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793,282), 2017년(759,854), 2018년(865,760)

* 무역협회 기준

(2018년 6월, 9월)를 통해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한 결과, 인도 규제당국은 우리나라 기업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 규제당국과 상시 협력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⑭ 인도 배터리 및 배터리 적용제품 BIS 인증 규제

인도는 배터리에 BIS 의무등록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2015년 3월)했다. 규제에 따르면 인도 내 제조 · 수출 · 수입되는 배터리는 인도 국가표준인 BIS 표준에 따라 현지 시험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도의 경우 BIS에서 지정한 현지 시험소에서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 내 시험소로 샘플을 보내고 발행된 시험성적서와 구비서류를 BIS에 제출해야 BIS 등록을 마칠 수 있다.

하지만 제품인증 진행 시 인도에서 배터리 셀과 팩에 대하여 동시에 인증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최종 제품승인까지 30주가 소요됨에 따라 과도한 인증기간으로 적시 제품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배터리 셀이란 전체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 소형배터리를 말하고, 배터리 팩은 셀을 하나로 합쳐 외부 환경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통상 배터리 제품인증 진행 시 셀과 팩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인도의 셀 및 팩 대상 병렬시험 진행 불허는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에 2017년부터 공식서한 발송 및 WTO TBT 양자회의(2018년 11월)를 통해 배터리 셀과 팩의 병렬시험 진행 허용을 요청했다. 인도측은 셀과 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번호를 받아야 함을 설명하면서 인증서 취득 시 정상적인 신청이 진행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배터리 인증기간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인도 규제당국과 우리

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규제명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
관련부처	인도 표준청
목적	건강 및 안전
대상제품	2차 전지
HS 코드	8507.60
규제내용	규제대상 품목은 인도 현지 시험소에서 관련 인도 표준에 따라 시험 후 BIS 등록 및 BIS 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
시행일	2016년 6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5,710), 2017년(33,028), 2018년(16,228)



〈BIS 표준마크〉

* 무역협회 기준

인도 배터리 및 배터리 적용제품 BIS 인증 규제

규제명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
관련부처	인도 표준청
목적	건강 및 안전
대상제품	배터리
HS 코드	8507.60
규제내용	대상 제품은 인도의 IS 표준에 따라 현지에서 제품을 시험하고 BIS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행일	2016년 6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5,710), 2017년(33,028), 2018년(16,228)



〈BIS 표준마크〉

* 무역협회 기준

나라 기업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⑮ 인도 폐가전제품 재활용 규제(E-Waste Rule)

인도는 폐가전제품 수거 · 재활용에 대한 규제(E-waste Rule 2017) 개정안을 발표(2017년 10월)했다. 규제대상 제품은 정보기술, 통신기기 제품[4] 및 소비자 가전제품[5]으로 제품 제조자, 일반 소비자, 대용량 제품 소비자, 수집센터 딜러, 전자상거래업자 및 개조 · 분해 · 재활용 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폐가전제품에 대한 회수율 기준을 제시하고 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 의무 회수율이 2016년 규정(E-waste Rule 2016) 대비 과도하게 설정됨에 따라 인도 현지의 가전제품 회수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제품 생산 · 수입자는 회수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11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11월)에서 회수 가능한 폐가전제품의 양을 고려하여 목표 회수율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도측은 규제 당국에 우리측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인도 폐가전제품 재활용 규제(E-Waste Rule)

규제명	E-Waste(Management) Rules, 2017
관련부처	인도 표준청
목적	건강 및 안전
대상제품	컴퓨터, 휴대전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HS 코드	85
규제내용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분해, 재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제조자는 동 규제에서 제시하는 수거목표치를 준수해야 함
시행일	2018년 3월 22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2,477,932), 2017년(3,089,545), 2018년(162,125,055)

* 무역협회 기준

⑯ 인도 가정용 룸 에어컨 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가 WTO 통보 없이 가정용 룸 에어컨에 대하여 시험 기준[6]을 신설 및 BIS 인증을 도입하여 시행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2018년 7월)했다. 규제에 따라 인도로 수출 및 판매되는 에어컨은 제정된 시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지만 제품의 절연내력검사 기준이 국제표준에 부합화되지 않고, 냉매누설 검사방법의 기준이 모호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을 발송(2018년 10월)하고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11월)에서 2초로 규정되어 있는 절연내력 검사기준을 국제표준(IEC 60335-1[7])에 따라 1초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냉매누설 검사 시 실내외기가 연결된 상태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규제 명확화 및 시행예정일 정보를 요청했다.

인도측은 해당 부처의 회의를 통해 국제표준 부합화는 향후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냉매누설 검사 시 실내외기 연결이 필요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4)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등 14개 제품군
5) TV, 냉장고, 세탁기 등 5개 제품군

6) IS 1391:2018(Room Air Conditioners-Specification): 용량 10,500W, 단상 240V, 삼상 415V, 50HZ 이상 무덕트 분리형 에어컨의 제품안전요건
7)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답변이 없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측의 의견이 일부 수용되었으며, 공식 시행일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⑰ 인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제

인도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규범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2018년 3월)했다. 해당 규제는 업체등록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캐리백, 플라스틱 시트, 다중포장재의 제조 · 수입 · 유통 · 판매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규제안은 2016년 3월부터 시행됐으나 개정안 발표 전까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방안도 최근에 마련됐다. 하지만 일부 모호한 용어 정의와 면제대상 해당여부 확인이 어려워 수출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을 발송(2018년 11월)하고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11월)에서 일부 모호한 규정의 해석과 면제대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인도측은 우리측 질의를 규제당국에 전달한 후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측의 공식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⑱ 인도 태양광발전시스템 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의무등록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 제품 제조 · 판매 · 유통업자는 인도 수출 시 반드시 BIS 등록 후 등록번호가 기재된 BIS 표준 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수출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해당 규제는 IEC 표준을 바탕으로 IS 규격화되었으나, 태양광모듈의 IEC 표준은 2016년에 개정되었고, 인도는 구 버전을 준용하고 있어 향후 규격개정 시 추가시험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태양광모듈 제품은 시험기간이 약 3개월 소요되고 인도 내 공인시험소 부족으로 제품시험 대기상황 발생 시 시험성적서 등록 및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 TBT 설명회를 개최(2018년 9월)

인도 가정용 룸 에어컨 규제

규제명	Pneumatic Tyres and Tubes for Automotive Vehicles
관련부처	인도표준원(Bureau of Indian Standards)
목적	소비자보호
대상제품	에어컨
HS 코드	8415.10
규제내용	인도로 수출 및 판매되는 에어컨의 경우 제정된 IS 1391:2018 표준을 만족해야 함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4,475), 2017년(4,877), 2018년(9,503)

* 무역협회 기준

인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제

규제명	Plastic Waste Management Rules, 2016
관련부처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목적	환경보호
대상제품	캐리백, 플라스틱 시트, 다중포장재
HS 코드	39
규제내용	해당 품목의 제조, 수입, 사용, 판매, 유통 시 업체등록 및 사용량 신고 등을 통한 사용량 규제
시행일	2016년 3월 18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158,367), 2017년(1,395,776), 2018년(1,740,109)

* 무역협회 기준

하여 인도 규제당국 관계자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8] 우리측은 태양광모듈의 최신 IEC 표준 부합화 및 제조사의 대응준비를 위한 개정 계획 관련 정보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통관 시 추가 요구 자료로 인한 통관 지연에 대해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의 시험소 인프라 확충과 빠른 시험, 등록 및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인도측은 태양광모듈에 적용되는 시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시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인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의무 등록 규제

규제명	태양광 발전, 시스템, 기기 및 컴포넌트 제품(의무등록에 대한 요건) 법령 Solar Photovoltaics, Systems, Devices and Components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7
관련규정	S.O. 2920(E)
관련부처	신재생에너지부
목적	건강 및 안전보호
대상제품	태양광 발전 제품
HS 코드	8451
규제내용	인도 표준국법(1986)에 근거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 의무등록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관보 발표 이후 1년 뒤부터 시행 예정
통보일	2017년 5월 17일(G/TBT/N/IND/59 이후 제품 추가사항은 미통보로 진행)
시행일	2018년 9월 5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7,617), 2017년(11,163), 2018년(8,306)

* 무역협회 기준

8)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소비, 품질 · 안전 기술규제의 강화에 따른 최신동향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⑲ 대만 TV 모니터 에너지효율 등급 및 라벨링 규제

대만이 WTO 통보 없이 TV 및 모니터 에너지효율 등급기준 및 라벨링 규정을 신규 도입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규제는 타국 대비 과도한 규제조항과 모호한 시행시기로 우리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를 통해 TV에 적용되는 최소에너지 소비허용 기준 및 등급별 에너지소비 허용 값을 EU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용화 초기단계인 OLED TV의 소비전력 저감기술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까지 적용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행일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만측은 소비전력기준 완화, OLED TV 규제적용

대만 TV 모니터 에너지효율 등급 및 라벨링 규제

규제명	Amendments of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and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markings, methods, and inspection
관련부처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목적	소비자 건강 및 안전, 환경보호, 사기행위 및 소비자 보호
대상제품	텔레비전
HS 코드	8528
규제내용	대만으로 수출 · 판매되는 텔레비전의 경우, 최소에너지소비허용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효율등급(1~5등급)을 카탈로그 또는 라벨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3,134천 불), 2017년(2,672천 불), 2018년(2,187천 불)

* 무역협회 기준

철회 및 시행유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⑳ 베트남 타이어 안전 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교통부의 자동차용 공기 타이어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자동차 제조수입 조립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유럽 ECE 인증서(R30, R54[9])의 유효기간을 2018년 4월 1일부터 제한하는 규제도입 예정 정보를 입수했다. 규제에 따르면 국가기술규정이 ECE R30 Rev.3, R54 Rev.3의 2015년 버전[10]을 준용하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가기술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일 또는 최신 버전의 EU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만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 ECE 인증서의 경우 최초 취득 후 유효기간 제한 없이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베트남이 그동안 유럽 ECE 인증 보유 시 별도 유효기간 없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업체들의 제품 시험성적서 및 공장심사가 면제되어 왔다. 하지만 2019년 4월부터는 ECE 인증서가 전면 불인정된다는 현지 정보가 입수되어 수출기업에 애로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측은 민간채널(2018년 9월)을 통해 2019년 4월 17일부터 ASEAN 협약체결 국가(한국 미체결국)에 한해서만 ECE 인증서가 인정된다는 비공식 정보를 입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관 합동의 대응을 지속하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9) ECE R30(승용차용 타이어), ECE R54(트럭용타이어)
10) ECE R30 ECE R54의 보충서*에 따른 시행일: 각 2013년 1월, 2015년 1월
* Supplement(보충서): 유럽 ECE 인증의 업데이트 시 발표되는 보충 문서

㉑ 태국 자동차 타이어 안전표준(TIS) 인증 규제

태국 산업표준협회(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는 타이어에 대한 강제표준 시행을 WTO에 통보(2016년 9월)했다. 해당 규제는 TIS 인증마크의 타이어 표면 각인을 의무화했다. 각 표준은 유럽의 품질 · 안전기준(UN ECE R30, R54, R75)과 동일하게 준용하고 있으나, UN ECE 규정에 대한 유럽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 업계가 TIS 인증마크용 몰드 제작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및 시간적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태국측은 E-mark 인증서는 불인정되나 E-mark 시험결과를 인정하여 해당 시험결과 리포트를 제출할 경우 TISI 시험 생략이 가능하며, TIS 인증마크는 스티커로 부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2019년 3월 시행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TIS 인증마크 스티커 부착방식 및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에서 TIS 인증마크의 스티커 부착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명확한 시행

베트남 QCVN 타이어 규제

규제명	타이어 VR 인증 획득 요구
관련부처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목적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대상제품	타이어
HS 코드	4011
규제내용	베트남 내 타이어 판매를 위한 규격별 인증 획득 요구
시행일	2019년 4월 17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4,613), 2017년(5,495), 2018년(12,090)

* 무역협회 기준

일 정보제공을 요청하였고, 태국측은 세부사항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이 차질 없이 수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동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㉒ 태국 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

태국은 타이어 에너지효율 강제화를 시행하는 규제를 WTO에 통보(2017년 11월)했다. 해당 규제는 유럽의 에너지효율기준(UN Regulation No. 117)을 태국에 적용하고, 타이어에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 또는 마크를 각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업계는 UN Regulation No.117 인증서 및 E-mark 각인의 인정 여부, 규제 시행일자와 세부요건의 확정시기가 불분명하여 수출준비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에서 UN Regulation No.117 인증서 및 E-mark 각인의 인정여부 문의, 규제 시행예정일과 세부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국측은 E-mark 인증서 인정은 불가하나 UN Regulation No. 117에 따른 시험성적서 인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규제 관련 세부내용은 약 6개월 후 관보 게재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으며 원활한 수출 준비 중에 있다.

2) 중동 지역

㉓ 사우디아라비아 세탁기 에너지 및 물 효율 라벨링 규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탁기에 적용되는 에너지 및 물 효율 라벨링 규제를 WTO에 통보(2016년 6월)했다. 해당 규제는 기존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물 소비 효율로 구분되어 운영하던 규제체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에너지효율 시험방법으로 EN 60456을 채택하였는데 제시된 규격은 드럼제품 시험 시 활용되고 있는 표준으로 사우디

태국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태국 산업표준(TIS) 규제

규제명	타이어의 TIS 인증 마크 각인 강제화
관련부처	태국 산업표준협회(TISI)
목적	인간의 건강 및 안전; 성능
대상제품	타이어
HS 코드	4011
규제내용	태국 내 타이어 판매를 위한 TIS 인증마크 각인 강제화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4,583), 2017년(10,701), 2018년(10,714)

* 무역협회 기준

태국 타이어 에너지효율 강제화 규제

규제명	태국 타이어 에너지효율 강제화 규제
관련부처	태국 산업표준협회(TISI)
목적	안전 및 소비자보호
대상제품	C1, C2, C3식 타이어
HS 코드	4011
규제내용	태국은 UN Regulation No.117에 따른 타이어의 강제표준(TIS 2721-2559)을 시행하도록 상정함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4,583), 2017년(10,701), 2018년(10,714)

* 무역협회 기준

아라비아의 규제에서 다루는 전자동 세탁기와 이조식 세탁기 시험에는 부적합했다. 또한 정격 소비전력요건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일반 제품과 모터구동 제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아 건조기능이 포함된 세탁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규제와 관련하여 제품 조작패널 내 세탁온도조건 버튼 구현 여부, 시험 시 실제 도달 온도조건과 같이 모호한 요건에 대한 세부정보가 필요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모호한 요건과 부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측은 관보를 통하여 규제 최종안을 발표(2018년 1월)했다. 규제 최종안에는 매뉴얼 내 생산지 및 제품 일련번호 표기요건 삭제, 국제표준에 부합된 정격 소비전력요건 제시 등 우리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우리 수출기업은 원활한 수출을 진행 중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세탁기 에너지 및 물 효율 라벨링

규제명	Electrical clothes washing machines–Energy and water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labelling
관련부처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목적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라벨링
대상제품	세탁기(건조기능이 있는 제품 포함)
HS 코드	8450
규제내용	세탁기에 적용되는 최저성능기준, 라벨링 요건, 사후관리 허용오차 등을 규정함



〈에너지효율라벨 도안〉

시행일	2018년 8월 16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32,654), 2017년(27,322), 2018년(18,029)

* 무역협회 기준

㉔ 사우디아라비아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의류건조기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규제를 WTO에 통보(2017년 6월)했다. 규제는 25㎏ 이하 의류건조기에 대해 에너지효율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입을 위한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을 신설하였으나, 히트 펌프방식의 건조기에 대한 별도의 소비전력 기준이 없고, 과도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에서 히트펌프 건조기에 적합한 소비전력 요건을 요청하고, 매뉴얼 내 생산지 기재 요구사항 철회를 요청했다.

사우디아라비아측은 정격 소비전력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매뉴얼 생산지 기재 요구사항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이 차질 없이 수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

규제명	Electrical clothes dryers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labelling
관련부처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목적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라벨링
대상제품	의류건조기
HS 코드	8421
규제내용	건조기는 최소 에너지효율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에너지효율등급이 표기된 에너지효율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함



〈에너지효율라벨 도안〉

시행일	2018년 7월 5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9,106), 2017년(12,276), 2018년(14,063)

* 무역협회 기준

㉕ 사우디아라비아 냉장고 성능평가 및 라벨링 규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개정된 냉장고 성능평가 및 라벨링 요건에 대한 SASO 표준(2664/2013)을 WTO에 통보(2017년 9월)했다. 규제에 따르면 기존 성능시험방법이 IEC 62552:2007에서 IEC 62552-2:2015로 변경됐다. 두 표준의 차이점은 IEC 62552:2007의 경우 냉동부하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하지만, IEC 62552-2:2015의 경우 무부하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측은 무부하 조건인 IEC 62552-2:2015을 채택하였지만, 에너지효율 계산식은 냉동 부하 조건에서 시험을 하는 IEC 62552:2007을 참조하고 있어 규제 모순이 발생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측은 우리측 의견이 모두 반영된 SASO 표준 최종규제안을 발표(2018년 2월)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현재 우리 업계는 원활한 수출을 하고 있다.

㉖ GCC(GSO) 저전압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 인증 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GCC 국가가 WTO TBT 통보 없이 저전압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에 대해 GSO 적합성 추적표시 규정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규제는 GSO 적합성 추적표시를 제품, 포장 및 매뉴얼에 부착 · 표기해야 하며, GCC 재인증 시 변경된 적합성 추적표시를 재부착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냉장고 성능평가 및 라벨링 규제

규제명	Refrigerators, refrigerators with freezer and freezers – Energy performance, testing and labelling requirements
관련부처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목적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라벨링
대상제품	냉장고 및 냉동고
HS 코드	8418
규제내용	냉장기기의 에너지효율평가, 에너지효율라벨링 등을 규정
시행일	2018년 8월 16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31,911), 2017년(17,3320), 2018년(10,352)



〈에너지효율라벨 도안〉

* 무역협회 기준

GCC(GSO) 저전압 기기 및 가전제품 인증 규제

규제명	Gulf Technical Regulation for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and Appliances BD-1420XX-01(저전압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에 관한 걸프 기술규정), GSO-Rules for the Use of the GSO Conformity Tracking Symbol, GCTS(GSO 적합성 트레킹 표시)
관련부처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목적	소비자 건강 및 안전
대상제품	50-1000V 교류, 75-1500V 직류의 모든 저전압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
HS 코드	85
규제내용	GCC 국가로 수출 · 판매되는 저전압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GCC 인증 취득 후 QR 코드 및 GC마크를 제품, 매뉴얼,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시행일	2016년 7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981,213), 2017년(3,224,633), 2018년(2,602,492)

* 무역협회 기준



[GSO 적합성 추적 표시, GCTS]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공통 매뉴얼을 다양한 모델에 활용하고 있어 매뉴얼에 GSO 적합성 추적표시를 표기할 경우 추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향후 규제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6월, 11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6월, 11월)를 통해 GSO 적합성 추적표시 철회를 요청하였고, 규제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GCC측으로부터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㉗ GCC(GSO)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

GCC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유해물질제한 규제를 만족 후 GSO 적합성 추적표시 규정에 따라 적합성 표시마크를 부착하는 강제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2018년 3월)했다. 규제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의 수은, 6가 크롬 등 10대 제한물질 함유량[11]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득하고, G마크와 QR 코드가 포함된 GSO 적합성 추적표시를 제품 등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부품이나 부분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의 인증대상 포함 여부와 G마크 내 인증기관 번호 표기방법, 인증 취득 시 QR 코드갱신 방법 등이 모호하여 규제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가 유해물질제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규제와 중복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GSO 적합성 추적 표시, GCTS*]
* XXXX: 인증기관 번호 표기

이에 공식서한 발송(2018년 6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6월)를 통해 명확한 규제 적용범위에 대한 정보와 라벨표시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 제공을 요청했다. 또한, 중복되는 아랍에미리트 RoHS 규제와의 통합을 요청했다.

GCC측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분품에도 해당 규제가

GCC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규제명	Draft of GCC Technical Regulations for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관련부처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목적	안전,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대상제품	1000V 교류, 1500V 직류 이하의 모든 전기 · 전자제품
HS 코드	85
규제내용	GSO 국가로 수출 ·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유해물질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규정을 만족 후, GSO 적합성 추적 표시규정에 따라 GCTS 마크를 부착해야 함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981,213), 2017년(3,224,633), 2018년(2,602,492)

* 무역협회 기준

11) 10대 제한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염화비페닐(PBB), 폴리염화비페닐에테르(PBDE), 비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적용되며, 라벨표시 등에 관한 세부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여 아랍에미리트 RoHS 규제와의 통합도 약속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차질 없이 수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㉘ 아랍에미리트 ECAS 적합성마크 사용정책 규제

아랍에미리트는 제정된 ECAS 적합성마크 사용정책에 따라 ECAS 마크를 저전압기기제품에 부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WTO에 통보(2018년 2월)했다. 2018년 3월 현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표준계량청(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은 컬러양식의 ECAS 마크를 반드시 제품번호 등이 표시된 인쇄 라벨에 포함시켜 제품 앞면에 부착 또는 각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6월, 11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11월)를 통해 ECAS 마크를 개별 스티커로 제품부착 허용을 요청했다. 또한 과도한 크기의 ECAS 마크 사이즈 축소를 요청하고, 기업의 원활한 규제 준수를 위하여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아랍에미리트측은 ECAS 마크 사이즈 축소를 허용하였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인쇄라벨에 ECAS 마크를 포함시켜 부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ECAS 적합성마크 사용 정책 규제

규제명	Usage Policy for ECAS Mark
관련부처	아랍에미리트 표준계량국(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목적	소비자정보, 라벨링, 기만적 관행의 방지 및 소비자보호
대상제품	저전압기기, 화장품, 화학세제
HS 코드	85, 33, 3402
규제내용	아랍에미리트로 수출, 판매되는 저전압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ECAS 마크 사용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ECAS 마크를 제품 앞면에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함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047,569), 2017년(873,757), 2018년(569,558)

* 무역협회 기준

㉙ 바레인 에어컨 에너지라벨 및 최소기준 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바레인이 WTO 통보 없이 에어컨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을 도입하여 강제 시행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규제는 최소 에너지성능기준을 만족하고 바레인 표준청에 에너지라벨 등록 및 승인 후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하나, 분리형 에어컨의 경우 개정된 MEPS 기준이 에너지라벨 등급 최상위 기준보다 높아 업계가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6월, 11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6월, 11월)를 통해 에너지라벨의 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MEPS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라벨의 갱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개정 후 최소 6개월의 시행유예 기간 제공을 요청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바레인측으로부터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최소에너지효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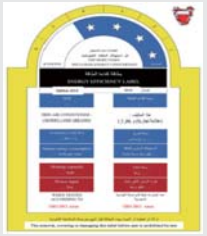
Air Conditioner appliance type	Cooling Capacity limit (CC) (Btu/h) At test condition (T1)	(EER) Value (Btu/h)/watt To be applied mandatory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July 2016		(EER) Value (Btu/h)/watt To be applied mandatory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July 2018	
		T1	T3	T1	T3
Window type	18000 > CC	8.5	6.12	9.8	7.06
	18000 ≤ CC	8.5	6.12	9.7	6.98
	CC ≥ 24000	8.5	6.12	8.5	6.12
Split Type and the other types	All Capacities	9.5	6.84	11.5	8.28

최상위 기준(별 6개)

Star Rating	바레인 기술규정
☆	EER≦7.5
☆☆	7.5〈EER≦8.5
☆☆☆	8.5〈EER≦9
☆☆☆☆	9〈EER≦9.5
☆☆☆☆☆	9.5〈EER≦10
☆☆☆☆☆☆	10〈EER

바레인 에어컨 에너지라벨 및 최소기준 규제

규제명	Regulation on Energy Labelling and 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Air–conditioner 2015
관련부처	바레인 표준청(BSMD, Bahrain Standards and Metrology Directorate)
목적	환경보호
대상제품	에어컨
HS 코드	8415.10
규제내용	바레인으로 수출되는 에어컨은 관련 규정의 기준 및 최소에너지성능표준 만족 후 바레인 표준청에 에너지라벨 등록 승인 후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함
시행일	2018년 7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536), 2017년(772), 2018년(638)



〈에너지효율라벨 도안〉

* 무역협회 기준

㉚ 쿠웨이트 에어컨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쿠웨이트는 에어컨의 최저효율성능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및 에너지등급 규정이 신설됨을 WTO에 통보(2018년 8월)했다. 규제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쿠웨이트에 에어컨(DX air conditioners)을 수출 · 판매하는 기업은 최저효율 성능기준요건을 만족하고 쿠웨이트 산업청 표준계량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친 후 에너지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쿠웨이트 산업청 표준계량부에서 등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5.1항), 등록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2항)고 명시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어 있지 않아 우리 업계의 수출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11월) 및 WTO TBT위원회 양자회의

쿠웨이트 에어컨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규제

규제명	KWS 1893 : 2018 Energy Efficiency Labelling and 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DX Air–Conditioners up to 70,000 Btu/h
관련부처	쿠웨이트 산업청(PAI, Public Authority for Industry)
목적	소비자 정보제공, 라벨링
대상제품	정격냉각용량 70,000 Btu/h 이하 창문형 및 비(非)창문형 에어컨 (Air–cooled DX air conditioners)
HS 코드	8415
규제내용	최저 에너지성능기준을 만족하고 에너지등급 라벨 부착
시행일	2019년 8월 4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8,006), 2017년(7,218), 2018년(3,809)



〈에너지효율라벨 도안〉

* 무역협회 기준

(2018년 11월)를 통해 시행일 기준, 시험성적서의 범위 및 라벨등록 세부가이드를 요청하였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쿠웨이트측으로부터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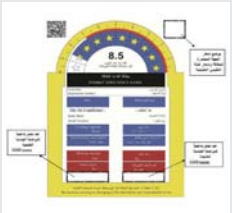
㉛ 오만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오만은 에어컨 제품에 대한 최소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규제 도입 예정임을 WTO에 통보(2017년 3월)했으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오만측은 적용 표준 및 시행일정을 관보에 게재(2018년 5월)하였으나, 시행일이 공포 다음날부터이며 6개월의 시행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또한, 규제이행을 위해서는 인증기관, 시험소 정보 및 적합성평가 절차에

오만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

규제명	Energy Labelling and 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Air–Conditioners
관련부처	상공부
목적	소비자 정보제공
대상제품	70,000 Btu/h 이하 싱글 및 분리형 에어컨
HS 코드	8415.10
규제내용	에어컨 제품에 대해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라벨링 표시에 대한 의무화 규정
시행일	2019년 7월 25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2,251), 2017년(4,497), 2018년(2,912)



〈에너지효율라벨 도안〉

* 무역협회 기준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나, 적용 규격(GSO 표준)에 대해서만 공개되어 수출기업의 규제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11월)을 통해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가이드 제공 및 추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만측으로부터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㉜ 이스라엘 화장품 규정(약사법)

이스라엘은 약사법 시행령(안)의 화장품 관련된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통보(2018년 1월)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2018년 6월, 11월)에서 보건당국 발행 GMP 증명서 제출 및 모든 제품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기준 및 관행과 부합하지 않고 지나친 부담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스라엘측은 이번 규정의 개정 목표가 화장품 안전과 품질을 유지, 경쟁적 시장으로 개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약사법 시행령(안)

규제명	이스라엘 약사법 시행령(안)
관련부처	이스라엘 보건부
목적	국민안전
대상제품	화장품
HS 코드	3304, 3307, 3303, 3305
규제내용	화장품 허가 등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548), 2017년(942), 2018년(959)

* 관세청

회원국과의 협의를 환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당 규제는 이스라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시행일은 미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3) 유럽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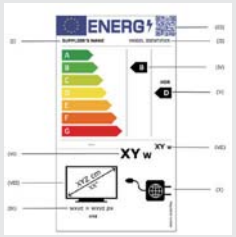
㉝ 유럽연합 전자 디스플레이 에코 디자인 규제

유럽연합은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 도입을 2009년부터 준비하고 있다. 규제 대상 품목은 에너지효율 요건(온 모드/오프 모드/스탠바이 모드), 제품 내 플라스틱 부분 마킹 요건, 유해물질 로고 마킹 요건, 에너지효율 등급, 에너지효율 라벨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18년 10월 개정(안)이 WTO에 통보되었으나,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달한 우리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EU 전자 디스플레이 에코 디자인 규제

규제명	Ecodesign requirements for electronic displays pursuant to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 (EC) No1275/2008
관련부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목적	건강 및 안전
대상제품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디지털 사이니지
HS 코드	8528
규제내용	디스플레이, TV
시행일	1단계: 2021년 3월 1일, 2단계: 2023년 3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20,955), 2017년(111,489), 2018년(201,169)



〈에너지효율라벨 도안〉

* 무역협회 기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10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11월)에서 규제 시행시기 문의, 일부 과도한 요건 철회 등을 요청했다. 이에 유럽연합측은 단계별 시행을 적용할 예정이며, 용접 및 접합에 대한 금지요건은 삭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속적인 대응 끝에 우리측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되는 성과를 얻었으나, 규제의 최종안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㉞ EU F-GAS(냉매) 제품 수입 관련 규제

유럽연합은 WTO 통보 없이 불소화온실가스(F-gas,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배출규제(Regulation EU No. 517/2014 Fluorinated

EU 내 F-gas(냉매) 제품 수입 관련 규제 사항

규제명	F-gas Regulation
관련규정	Regulation (EU) No 517/2014
관련부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목적	환경보호
대상제품	F-gas 활용 제품 (에어컨, 냉장고 등)
HS 코드	8415, 8418
규제내용	2015년부터 2030년까지 F-gas 배출 수준을 2/3까지 감소시키기 위한 F-gas 배출 규제
시행일	2015년 1월 1일(제품 시장출시 제한 2017년 1월 1일 부터)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587,810), 2017년(619,805), 2018년(559,286)

greenhouse gases)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에 따라 EU는 유럽연합 내에 있는 냉매 제조기업과 수입업자에게만 할당량(Quota)을 부여하고, 할당량의 민간거래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F-gas Quota를 보유한 EU의 냉매 제조 · 수입업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 불공정 사례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6월) 및 WTO TBT 양자회의(2018년 6월)에서 EU 집행위가 F-gas 판매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EU측으로부터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할 예정이다.

㉟ 유럽연합 광원(Light source)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

유럽연합은 광원에 대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를 WTO에 통보(2018년 10월)했다. 규제에 따르면 광원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등 완제품에 사용되는 광원도 에너지효율을 측정하고 포장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품인 광원의 에너지효율 측정 및 표시를 별도로 요구하여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한-EU 전기전자 규제대화체(2018년 11월)에서 적용예외 품목으로 완제품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광원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연합측은 우리측 의견에 따라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부품으로 사용된 광원의 제외는 긍정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냉장고의 경우 광원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수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의 최종안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㊱ 유럽 냉장고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이 WTO TBT 통보 없이 개정된 냉장에 대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정(안)을 도입하여 2020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규제에 따르면 에너지등급 기준을 만족한 후, 에너지효율 라벨을 제품과 판촉물 등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기술인자(Parameter)를 라벨과 함께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유출 우려가 있고, 자동조절결로방지히터(automatically controlled electric anti-

유럽 광원 에너지라벨링 규제

규제명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3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nergy labelling of light sources
관련부처	유럽집행위원회(EC)
목적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대상제품	광원(Light source) 및 광원을 포함하는 제품(일부 제외)
HS 코드	8512.20
규제내용	광원(Light Source)을 포함한 제품에 사용되는 광원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사항
시행일	2021년 9월(예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325,589), 2017년(391,639), 2018년(299,758)

* 무역협회 기준

condensation heaters) 시험조건 및 소비전력 계산법이 모호하여 수출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유통채널별 라벨도안이 상이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6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6월)에서 기술인자 공개조항을 삭제, 규제명확화, 도안 일원화를 요청했다. 유럽연합측은 기술인자 공개조항을 삭제 및 결로방지히터의 소비전력 계산항목 등 규제개선을 약속했다. 2018년 10월, 유럽연합이 WTO 통보와 함께 발표한 개정안에는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제품정보시트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광원 인자도 에너지효율 등급(A–G)을 기입하여 제공하도록 신설되어 추가적인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를 통해 완제품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광원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과 라벨 도안 일원화를 재차 요청했다.

유럽연합측은 냉장고의 경우 광원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수용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라벨 도안 일원화는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의 최종안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냉장고 에너지라벨링 효율등급라벨 도안

구분	장거리판매 및 판촉물 (ANNEX VII)	인터넷 판매 (ANNEX VIII)
효율등급라벨 도안		
라벨 요건	등급 및 구간표시	등급 표시

㊲ 프랑스 무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표시 규제

프랑스는 인체의 근거리에서 사용되는 무선장비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에 대해 SAR 표시기준 등의 의무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WTO에 통보(2018년 4월)했다. 규제에 따르면 SAR 규정 대상제품이 무선단말기(terminal)에서 무선기기(radio equipment)로 확대되었으며, SAR 측정값을 지침서 등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SAR 측정 시에는 적용부위가 몸통을 비롯한 팔, 다리까지 확대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CE인증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측정시험 결과값 표기를 요구하고 있어 수출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으로 규제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유럽 냉장고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

규제명	(에너지라벨링)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3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nergy labelling of household refrigerating appliances and low noise refrigerating appliances (에코디자인) implementing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nts for household refrigerating appliances and low noise refrigerating appliances
관련부처	유럽집행위원회(EC)
목적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대상제품	가정용 냉장고
HS 코드	8418
규제내용	냉장기기의 에너지라벨, 정보제공 요건 등 기준 개정
시행일	2021년 4월(예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327,001), 2017년(303,566), 2018년(238,584)

* 무역협회 기준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5월)을 통해 SAR 측정방법 제공 및 규제준수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프랑스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㊳ 우크라이나 전기전자제품 RoHS 규제

우크라이나는 전기 ·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개정안을 WTO에 통보(2018년 1월)했다. 해당 규제는 EU RoHS 2 개정안[12]과의 부합화를 목적으로 10대 대상품목 및 전기전자제품의 RoHS 예외 적용제품과 만기일을 개정했으나, EU 규정에서 별도의 만기일을 규정하지 않는 부품도 만기일을 지정하여 수출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을 통해 EU의 RoHS 2 규정과의 부합화 목적을 고려하여 예외적용 부품에 대해 별도의 만기일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크라이나측은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발표(2018년 5월)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기업은 무리없이 수출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무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표기 규제

규제명	modifiant l'arrêté du 8 octobre 2003 relatif à l'information des consommateurs sur les équipements terminaux radioélectriques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R. 20–10 du code des postes et des télécommunications, l'arrêté du 8 octobre 2003 fixant des spécifications techniques applicables aux équipements terminaux radioélectriques et l'arrêté du 12 octobre 2010 relatif à l'affichage du débit d'absorption spécifique des équipements terminaux radioélectriques
관련부처	프랑스 보건복지부
목적	소비자 정보제공
대상제품	무선기기
HS 코드	8517
규제내용	무선장비의 전자파인체흡수율(SAR)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표기 및 권장내용에 대한 내용 수정해야 하며, 적용 대상 범위를 무선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 확대함. 또한 SAR 측정시 사지(팔, 다리)의 측정을 포함
시행일	2018년 7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26,019), 2017년(44,029), 2018년(11,224)

* 무역협회 기준

우크라이나 전기전자제품 RoHS 규제

규제명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관련부처	경제개발통상부(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
목적	소비자 및 환경보호
대상제품	전기 · 전자제품
HS 코드	8528
규제내용	우크라이나로 수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EU 2011/65/EC 규정과의 부합화에 따라 개정된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속서 3에 따라 예외적용 부품은 만기일을 준수해야 함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461), 2017년(419), 2018년(226)

* 무역협회 기준

12) Directive 2011/56/EC

㊴ 우크라이나 청소기 에코디자인 요건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이 시행 중인 진공청소기 에코디자인 규정을 부합화한 규제를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WTO에 통보(2018년 6월)했다. 해당 규제는 진공청소기(유선 및 유 · 무선)의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EC 규정(No. 666/2013)과의 부합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중 사후관리 기준(부속서3)의 2차 먼지배출(dust re-emission) 항목이 유럽기준과 상이하여 수출기업의 제품 제조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11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11월)에서 해당 규제가 유럽연합 규정(EC 666/2013)에 기반(1조)하였음을 고려하여, '2차 먼지 배출량' 사후관리 허용오차를 유럽연합 수준(15%)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크라이나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진공청소기 에코디자인 사후관리 요건 비교표

항 목	사후관리 요건	
	우크라이나 규정 (부속서3)	(EC) No.666/2013 (Annex III)
연간 에너지 소비량	이 값은 표시된 소비량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 값은 표시된 소비량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카펫 바닥재 집진	이 값은 표시된 수준에서 0.03 이상 더 낮을 수 없다.	이 값은 표시된 수준에서 0.03 이상 더 낮을 수 없다.
경질 바닥재 집진	이 값은 표시된 수준에서 0.03 이상 더 낮을 수 없다.	이 값은 표시된 수준에서 0.03 이상 더 낮을 수 없다.
2차 먼지 배출	이 값은 표시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값은 표시된 양을 15%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소음 수준	누락	이 값은 표시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엔진 수명	이 값은 표시된 수명에서 5% 이상 더 적을 수 없다.	이 값은 표시된 수명에서 5% 이상 더 적을 수 없다.

4) 중남미 지역

㊵ 콜롬비아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콜롬비아는 에어컨, 냉장고 · 냉동고, 세탁기 등에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를 도입할 예정임을 WTO에 통보(2015년 2월)하였고, 시행일(2016년 8월) 및 추가 규제 세부사항을 WTO에 추가 통보(2015년 11월)했다. 해당 규제는 라벨에 표기되는 소비전력을 신고값(선언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 인증기관 및 시험소에서는 측정값으로 해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측정값을 표기할 경우 사후관리 시 불합격 발생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11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 11월)에서 제조자가 에너지효율 성능 보장 값을 기업이 결정할 수 있

우크라이나 청소기 에코디자인 요건

규제명	Technical Regulation on ecodesign requirements for vacuum cleaners
관련부처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절약청(The State Agency on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Saving of Ukraine)
목적	소비자 정보제공
대상제품	유선 및 유 · 무선 전기진공청소기(무선청소기 및 로봇청소기 제외)
HS 코드	8508
규제내용	진공청소기의 친환경 요구사항 규정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73), 2017년(163), 2018년(97)

* 무역협회 기준

는지에 대한 모호한 규정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콜롬비아 측은 에너지효율 성능 보장 값을 제조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어 현재 문제없이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㊶ 파나마 에어컨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파나마는 에어컨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 및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신설하여 시행한다고 WTO에 통보(2017년 1월)했다. 규제에 따르면 파나마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에어컨은 에너지성능 최소요건 및 라벨링 요건을 만족한 후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인증 취득에 필요한 요건 만족에 기술적 애로사항은 없으나, 불합리한 허용오차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에어컨의 냉방용량(에어컨의 냉각능력)은 클수록, 소비전력(에어컨의 시간당 전력소모량)은 작을수록 성능이 좋으나, 두 수치 모두 ±5% 허용오차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에너지효율이 더 좋은 제품이 사후관리 시 불합격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에너지효율지수에 대한 라벨표기 값을 테스팅 제품 샘플의 측정값으로 하고 있어, 향후 사후관리 시 등급기준 불만족 제품이 발생할 수 있어 애로사항이 예상됐다. 샘플링 시료 및 측정장비의 공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매년 라벨갱신 시에 동일 제품의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모델의 소비효율 표기치의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가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나마는 해당 규제에 대한 최종안을 2017년 12월 관보에 게재했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사후관리 허용 오차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수용하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를 통해 에너지효율지수에 대한 라벨표기 값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파나마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규제명	Technical Regulation on rational energy–use labelling for certain types of electrical and gas end–use equipment for marketing in Colombia
관련부처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목적	에너지 절약
대상제품	에어컨, 냉장고/냉동고, 안정기, 농형유도 전동기, 세탁기, 전기온수기, 가스온수기, 레인지 및 오븐
HS 코드	8415.10, 8415.82.0000, 8418, 8419.11.0000, 8419.19.0000, 8404.10, 8516.10.0000, 7321.11.0000,8501, 8450
규제내용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 특정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함
시행일	미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35,317), 2017년(31,677), 2018년(30,281)

* 무역협회 기준

냉장고 라벨 표기값에 대한 사후관리 시, 허용오차 기준

국가	에너지효율 비	냉방용량	소비전력
파나마	–5%	±5%	±5%
EU	–8%	사후관리 대상 아님	사후관리 대상 아님
멕시코	–5%		
한국	–8%	–5%	

㊷ 페루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규제

페루는 냉장고 등 9개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 취득 및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WTO에 통보(2015년 4월)했다. 해당 규제는 국제표준 IEC 62552를 적용하고 있어 업계가 이를 준수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라벨 표기규정 모호, 사후관리 기준 미비, 3자 인증기관(OCP) 지정 지연 등으로 업계에서 수출 준비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페루에 전달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미해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6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에서 모호한 에너지소비량(소비전력) 표기기준에 대해 제조자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선언값으로 라벨에 표기하는 것을 재요청했다. 또한, EU 수준(세탁기±10%, 에어컨 ±8%, 냉장고 ±10%)으로 사후관리 허용오차 기준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에어컨 콤보제품의 규제적용 여부, 시장진입을 위한 최저기준 도입 여부 등 정보제공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3자 인증기관 지정 지연에 따른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페루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㊸ 칠레 텔레비전 에너지효율 규제

칠레는 텔레비전의 동작모드 및 대기모드 에너지효율 라벨의 디자인을 위한 기술명세서에 관한 내용을 WTO에 통보(2015년 6월)했다. 해당 규제의 대기모드 및 소비전력 측정기준은 대부분 국제표준(IEC)을 따르고 있어 기술적 대응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허용오차 값이 국제표준보다 엄

파나마 에어컨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규제명	Draft technical regulation No. 102:2016, 103:2016, 104:2016
관련부처	파나마 산업표준기술부
목적	환경보호
대상제품	실내형 에어컨, 공기배관이 없는 분리형 에어컨
HS 코드	8415
규제내용	에너지성능 최소요건 및 라벨링 요건을 만족한 후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함
시행일	2018년 4월 28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0,838), 2017년(12,515), 2018년(9,202)



〈에너지효율라벨 도안〉

* 무역협회 기준

페루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규제

규제명	Technical regulation on labelling of energy efficiency of household refrigeration
관련부처	페루 에너지광산부
목적	에너지 절약
대상제품	냉장고
HS 코드	8418
규제내용	냉장고 생산, 수입 및 판매를 위해 에너지효율 시험요건을 만족하고,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함
시행일	2018년 4월 18일(라벨부착), 2019년 4월 18일(인증 취득)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4,119), 2017년(2,710), 2018년(2,494)

* 무역협회 기준

격하여 사후관리 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에서 대기모드 소비전력의 라벨 표기치의 소수점 반올림 기준을 소비전력 0.1W에서 1W로 변경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칠레측은 양자회의에서 TV 에너지효율성능 사후관리 평가기준에서 실제 측정값의 10% 오차 허용 범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측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속적인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어 현재 문제없이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칠레 텔레비전 에너지효율 규제

규제명	Draft Energy Efficiency Analysis and/ or Test Protocol for Electrical Products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of the energy efficiency label for television in on and standby mode (standby)
관련부처	칠레 에너지부
목적	환경보호
대상제품	텔레비전(55인치 이하)
HS 코드	8528
규제내용	텔레비전 제품 관련 대기모드(Stand– by mode, 시행 중) 및 동작모드(on mode) 소비전력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준 충족 및 라벨을 부착해야 함
시행일	2015년 8월 12일(42인치 이하 제품의 대기모드 소비전력), 2015년 12월 10일(43인치 이상 55인치 이하 제품의 대기모드 소비전력)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737), 2017년(2,672), 2018년(2,187)

* 무역협회 기준

㊹ 에콰도르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규제

에콰도르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개정안을 WTO에 통보(2017년 11월)했다. 규제에 따르면 지정된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시험소를 통한 성적서 발급 지연 시 SAE 또는 MIPRO[13] 지정시험소 혹은 에콰도르와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었다. 지정된 현지 시험소는 1곳이며, 우리 업계의 경쟁사에 시험소가 지정되어 기술유출의 우려가 예상됐다. 또한 IAF–MLA 협정에 따라 KAS 인증서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지정시험소에서만 시험을 해야 하는지 정보가 모호했다. 아울러 통보문에 명시된 시행예정일(관보게재 후 6개월)이 규제원문의 시행유예기간(1년)과 달라 우리 기업이 수출 준비 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를 통해 KAS 인증 등 해외인증서 발급 시에도 SAE 또는 MIPRO 지정시험소에서만 시험해야 하는지, 에콰도르 현지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한 해외시험소의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를 문의했다. 또한, 지정 · 인정된 시험소 목록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유예기간을 문의했다.

이에 에콰도르측은 한국에서 발행한 KAS 인증서를 인정하되, 조건부로 해외 시험성적서도 인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관보게재 후 1년의 시행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속적인 대응으로 모호한 규정 등이 명확화 되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으며 현재 문제없이 규제를 이행 중에 있다.

13) SAE(에콰도르 인증 서비스, Servicio de Acreditacion Ecuatoriano), MIPRO (산업생산부, Ministerio de Industrias y Productividad)

㊺ 아르헨티나 TV 에너지효율라벨 규제

아르헨티나는 WTO 통보 없이 TV의 에너지효율 규정 및 라벨링 관련 규정인 IRAM 62411 및 IRAM 62301을 2017년 12월부터 시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TV는 에너지효율 규정을 만족하고,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포함된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11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 11월)에서 대기모드 소비전력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여부 및 그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특히, 유럽연합, 중국, 미국 등 타 국가의 사후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인 0.5W 이하로 대기모드 소비전력의 사후관리 기준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르헨티나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5) 북미 지역

㊻ 미국 낙뢰보호시스템(LPS) 표준 규제

2015년 8월, 미국 화재방지협회의 낙뢰보호시스템(LPS) 표준(NFPA 780)이 국제표준(IEC 62305)과 일치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국제표준에는 피뢰침 형태에 대한 제약이 없으나 NFPA 780 표준에는 우리 수출기업이 생산하는 분산형 시스템 등이 적용제외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에콰도르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규제

규제명	NTE INEN 2206:2011(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의 사양 및 검사), NTE INEN 2297:2001(냉동 식품 및 가정용 식품 냉동고를 보관하는 가정용 기기, 요구사항 및 검사)
관련부처	에콰도르인증서비스기구(Servicio de Acreditación Ecuatoriano, SAE), 산업 · 생산성부(Ministerio de Industrias y Productividad, MIPRO)
목적	소비자 건강 및 안전, 환경보호, 사기행위 및 소비자 보호
대상제품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HS 코드	8418.10, 8418.21, 8418.29, 8418.30, 8418.40, 8418.50
규제내용	에콰도르로 수출 · 판매되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의 경우, 에너지효율기준(A–G등급) 및 라벨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위한 테스트는 SAE 및 MIPRO에서 지정한 시험소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도록 요구
시행일	2018년 9월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655), 2017년(779), 2018년(1,229)

* 무역협회 기준

아르헨티나 TV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규제명	텔레비전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정 IRAM 62411:2012(Energy efficiency labelling of televisions receivers in on–mode) IRAM 62301:2012(Measurements and labeling of standby power for electrical application)
관련부처	Argentine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목적	소비자보호
대상제품	TV(가정용 및 기타 유사용도, on–mode)
HS 코드	8528
규제내용	TV의 에너지라벨링 표기 방법
시행일	2017년 12월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4,326), 2017년(7,401), 2018년(6,802)

* 무역협회 기준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6월, 11월)를 계기로 우리측 의견을 전달하였고 미국측은 우리 기업의 NFPA 780 표준개발 과정의 참여 보장을 약속했다. 우리 기업은 NFPA 표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미국측은 국제표준인 IEC 62305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속적인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었으며 현재 문제없이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㊼ 캐나다 TV 에너지효율 규제

캐나다 연방정부는 TV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를 단계별로 시행 중[14]에 있다. 그러나 퀘벡주 및 온타리오주의 경우 연방정부와 달리, 별도의 에너지효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4K 초과 해상도 TV 제품의 경우, 해당 규제의 온모드(On-mode) 소비전력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1월) 및 WTO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 6월)를 통해 4K초과 고해상도 TV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캐나다 퀘벡주는 우리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연방정부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부합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퀘벡주는 4K 초과 고해상도 TV제품의 규제 적용을 제외하였고, 우리 수출기업은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현재 무리없이 수출하고 있다.

미국 낙뢰보호시스템(LPS) 표준 규제

규제명	NFPA780, Lightning Protection System(LPS) standard established by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관련부처	미국 화재방지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목적	인간 건강 및 소비자 보호
대상제품	낙뢰보호시스템
HS 코드	8535
규제내용	분산형 시스템(옴니의 쌍극자 피뢰침 포함) 등을 적용제외 제품으로 지정
시행일	2020년 시행 예정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14,847), 2017년(17,545), 2018년(20,283)

* 무역협회 기준

캐나다 온타리오주 TV 에너지효율 규제

규제명	ENERGY AND WATER EFFICIENCY – APPLIANCES AND PRODUCTS
관련부처	캐나다 천연자원부(National Resources Canada)
목적	에너지효율
대상제품	TV 등 가전제품
HS 코드	8525
규제내용	캐나다는 천연자원부의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효율기준을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품별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각 주에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온타리오주의 경우 ENERGY AND WATER EFFICIENCY – APPLIANCES AND PRODUCTS 규정을 통해 제품별 에너지효율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일	2014년 7월 1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8,158), 2017년(9,160), 2018년(11,381)

* 무역협회 기준

14) 캐나다는 가전제품과 같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 주지사가 별도의 에너지효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6) 아프리카 지역

㊽ 이집트 가전제품 에너지 및 안전 규제

이집트는 결의안 No.1002를 통해 이집트 표준을 규제 시행일부터 강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2017년 7월)했다.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집트 표준은 규제 분야에 따라 에너지와 안전 규제로 분류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진공청소기, 가스를 사용하는 조리기기, 전기 오븐이 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관보 발표일로부터 12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2018년 8월 2일)이고, 안전 분야의 경우 2018년 2월 2일부터 강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제 시행일이 촉박하고, 강제 시행 대상 이집트 표준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우리 수출기업의 규제대응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이집트의 경우 규제대상 제품별 요구되는 세부인증 절차를 제품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별 적용되는 적합성평가절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을 통해 시험소에 대한 정보와 인증 신청방법 및 시행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이집트측은 국제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제품 샘플링 및 샘플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인증 신청은 EOS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제품통관 및 시장판매일에 동일하게 시행일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모호한 규정 등이 명확화되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었으며 현재 문제없이 규제를 이행 중에 있다.

㊾ 이집트 진공청소기 에너지효율 규제

이집트는 수출 · 판매되는 진공청소기에 대하여 제정되는 에너지효율 규정에 따라 등급기준을 만족한 에너지효율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WTO에 통보(2018년 1월)했다. 해당 규정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으나, 규정된 라벨을 부착 시 라벨 크기가 중 · 소형 크기의 청소기보다 상대적으로 커 라벨 부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 6월, 9월), 현지 방문(2018년 5월) 및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6월, 11월)를 통해 라벨크기를 축소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집트측은 우리측의 현지방문 시 개정을 약속하였고, 2018년 10월 발표된 개정안을 통해 라벨의 크기가 축소되었음을 확인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었으며 현재 문제없이 규제를 이행 중에 있다.

이집트 가전제품 에너지 및 안전 규제

규제명	Decision No.1002/2017
관련부처	산업통상부
목적	건강 및 안전
대상제품	청소기, 전기오븐, 조리기기 등
HS 코드	8508, 8516.60.1000, 7321.11
규제내용	이집트는 산업통상부 결의안에 따라 표준의 강제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규제대상 품목은 이집트 표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시행일	2018년 8월 2일(에너지), 2018년 2월 2일(안전)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516), 2017년(30), 2018년(8)

* 무역협회 기준

㊿ 케냐 에너지성능 및 라벨 규제

케냐는 WTO 통보 없이 에너지성능 및 라벨 규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었다. 에어컨 제품에 대한 과도한 최저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과도한 온도시험 조건 등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됐다. 특히 케냐의 에너지라벨 최소등급(☆, EER* 2.8이상)을 만족해야만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하나 같은 시험조건(T3, 열대기후 조건)을 갖는 UAE의 최고등급(☆☆☆☆☆, EER 2.64 이상)보다도 엄격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기술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려웠고, 시행일까지 케냐 규제를 만족 후 등록된 에어컨이 없어 수출 중단의 위기에 놓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5월 케냐표준원(KEBS)을 직접 방문하여 임시통관 허용요청, 과도한 케냐표준의 에어컨 시험 온도조건에 대해 최소 에너지성능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완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케냐측은 임시통관 허용 및 동 규제 개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와 한국 기업의 위원회 참여 보장을 약속했으며, 이후 우리측의 요청이 반영되어 통관이 허용되고 에어컨 시험 온도조건이 완화되었음을 전달받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었으며 현재 문제없이 규제를 이행 중에 있다.

이집트 진공청소기 에너지효율 규제

규제명	Energy efficiency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Methods for measuring and calculating Energy Efficiency of vacuum cleaners
관련부처	이집트 표준품질기구(EOS, Egyp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목적	환경보호
대상제품	진공청소기
HS 코드	8508
규제내용	이집트로 수출, 판매되는 진공청소기의 경우 에너지등급효율 기준 및 라벨링 규정을 만족해야 하며, 제5.3.3조에 따라 각 모델에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함
시행일	2018년 8월 2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495), 2017년(30), 2018년(8)

* 무역협회 기준

케냐 에너지성능 및 라벨 규제

규제명	Appliances' Energy Performance and Labelling Regulations The Energy (Appliances' Energy Performance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5, The Energy Act (No. 12 of 2006)
관련부처	케냐 에너지 규제 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목적	환경보호
대상제품	안정기내장형 램프, 이중캡형 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냉장고, 에어컨, 3상 유도전등기
HS 코드	8415, 8418, 8539.31, 8504.10, 8501.51, 8501.52
규제내용	수입되거나 생산되어 판매되는 에너지규제 대상제품은 에너지효율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 후 제품에 라벨을 부착해야함



〈냉장고 라벨 도안〉 〈에어컨 라벨 도안〉

시행일	2017년 7월 15일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2,167), 2017년(1,865), 2018년(3,194)

* 무역협회 기준

㊶ 나이지리아 에너지성능 표준 규제

나이지리아는 WTO 통보 없이 냉장고와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규제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표준으로 나이지리아가 라벨을 하드카피로 제공하여 해외 수출기업들은 라벨 수급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냉장고 성능 시험기준(NIS IEC 62552:2015)이 과도하여 우리 기업의 규제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서한 발송(2018년 3월)과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2018년 3월)를 통해 라벨도안을 제공을 요청하고, 냉장고 성능 시험법을 IEC 62552:2007 표준과 부합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나이지리아측은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여 냉장고 성능 시험방법을 IEC 62552:2017로 부합화하고, 대기모드 소비전력의 규제시행을 보류했다.

나이지리아 에너지성능 표준 규제

규제명	Minimum Energy Performances Standards (MEPS) and labels for Refrigerators (NIS 942:2017), Minimum Energy Performances Standards (MEPS) and labels for Air Conditioners (NIS 943:2017)
관련부처	나이지리아 표준청
목적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대상제품	냉장고, 에어컨
HS 코드	8415, 8418
규제내용	냉장고와 에어컨은 각각의 나이지리아 산업표준에 따라 최저 에너지성능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함
시행일	2018년 2월
수출액 동향(천 불)	2016년(6,269), 2017년(4,165), 2018년(6,143)

* 무역협회 기준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었으며 현재 문제없이 규제를 이행 중에 있다.

대응체계 및 성과

4. 우리 수출기업 TBT 대응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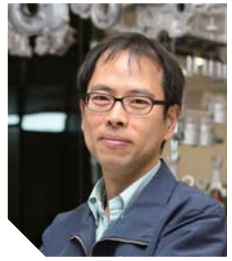
1)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 신흥국 기술장벽에 맞서다



1937년 한국 최초의 대단위 기계공장에서 출발한 두산 인프라코어는 굴착기와 로더 등 각종 건설기계와 산업용부터 발전기, 차량, 선박용 디젤엔진 등을 만드는 글로벌 기계 기업이다. 중국, 인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불확실한 신흥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정보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술전략팀 인증법규 파트의 이서영 차장과 함께 두산 인프라코어의 기술규제 대응 전략을 알아보았다.

이서영
두산 인프라코어 차장



Q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업 영역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기술규제는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두산 인프라코어는 건설장비와 각종 엔진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우리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규제는 주로 건설장비의 형식승인과 엔진의 배기가스 규제이다. 형식승인은 장비가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규제라면 배기가스 규제는 엔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관련 규제에 만족하는가가 주요한 부분이다.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공기 질이 나빠지면서 대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이에 맞춰 점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유럽의 경우도 4년을 주기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더불어 신흥국의 제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중동이다.

Q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기업이면 모두가 공감하듯, 중국 시장은 시장 규모와 중요성이 커서 규제에 대한 대응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A 중국의 경우, 우리 시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뿐 아니라 업계 모두가 가장 관심을 두고 경쟁하는 시장이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중국은 2020년 말에 기존에 발효 중인 '국3' 규제를 대체할 '국4'라는 배기가스 강화 규제를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작년부터 소문은 돌고 있고 해당 시점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발표가 없어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확인을 요청했고 현재 관련하여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규제를 만들면 해당 국가의 기업들과 먼저 논의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규제를 만들면 '이때쯤 이렇게 발표하려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하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과도 같이 정보공유를 하며, 이를 통해 얻는 정보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협의체에서 내용을 들어도 실제 공식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많다. 기업 입장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면 이미 대응에 늦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정부 대 정부의 입장으로 규제내용을 확인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Q 인도나 중동의 기술규제는 중국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국가별로 기술규제에 특색이 있습니까?

A 인도의 경우 역시 관련 규제에 관한 정보획득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인도는, 현재 배출가스와 건설장비의 형식승인 모두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규제가 있고 그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면, 인도는 규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신규 규제가 언제 도입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중동 역시 2020년에 건설장비의 형식승인에 대한 신규 규제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중국은 이미 '국3' 전환기를 겪어보니 어느 기관에서 승인하고 어디서 신청하는지 개략적인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중동의 경우는 신규로 규제가 발효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네트워크도 없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없어 막막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회의에서, 규제 동향과 더불어 정부기관이나 시험기관 담당자 소개를 같이 요청하고 있다.

시장의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중국, 인도, 중동을 넘어 현재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시장이 넓어질수록 기술규제 대응은 더욱 어려워진다. 문화나 언어적인 문제에 더해 기업이 국가나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점이 애로사항이다.

Q 수출국가들의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두산 인프라코어만의 전략이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A 영업 부서에서 해외 시장에 선진시장용과 신흥시장용 제품군 중, 어떤 제품군을 판매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우리는 예상되는 규제를 고려하여 변경 없이 오래 팔 수 있는 제품군을 선정하여야 한다. 규제에 비해 과하게 높은 제품군을 판다던가, 신규 규제 시, 철수해야 하는 제품을 추천한다면 기업에 있어 손해가 된다. 결국 정보를 빨리 수집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에도 우리 기업이 함께하는 협의체, 회의체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나름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외지사나 두산 관계사 담당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경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면 국가기술표준원에 확인을 요청하고,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응을 준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한 경로나 우리가 보유한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식 · 비공식적인 경로 양측을 모두 교차확인하는 것이다. 신흥국의 경우, 기업의 요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하면 업무가 쉬워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정보는 비단 특정 기업만의 것은 아니다. 경쟁사라 하더라도 규제에 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업계 전체에 이득이 된다.

Q 수출기업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기에 기술규제가 기업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기술규제 대응을 통한 유·무형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A 사실, 이슈가 되는 규제 모두 진행 중인 사항이고 기술규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 시장에 진입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하려는 A업체에서 규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 일정과 인원을 미리 배분하여 진출을 준비한다. 한편, B업체는 사전 정보 없이 개략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공식 발표가 난 이후에야 대응한다. 그렇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특히 제품군이 다양하다 보니 선진시장용 제품군을 구성할지, 신흥시장용 제품군을 구성할지 규제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같이 신흥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 컨텍채널과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알면 큰 도움이 된다. 중국 같은 경우, 규제 관련 발표가 중국어로 나오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번역 · 분석한 자료를 업체에 제공하고 있어 해당 규제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Q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의 규제 내용, 발표 등에 따라 시장의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A 북미나 유럽과 같은 선진시장의 경우, 규제의 내용과 일정 등이 명확하며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균 2년 전까지는 미리 차기 규제를 발표하며 규제 내용, 시험기관, 인증내용 등을 공개한다. 물론 법규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사전공지와 최종 규제 발표 사이에 차이점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험이나 제품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이미 오랫동안 관련 규제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시스템 역시 납득이 가능하도록 구비되어 있으며, 기업의 지사, 관계사 등 네트워크도 풍부하여 기업 역량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흥시장의 경우, 갑자기 언제부터 규제가 발효된다는 발표가 전부다.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규제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인구가 13억, 면적은 우리나라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다. 그런데 규제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은 해당 물량을 소화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기업이 신청하면서 언제 시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확인 중이라는 모호한 대답을 받는다. 기간 내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신흥국이 신규 규제를 발표하는 경우, 내용상 선진국의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와, 선진국 규제를 적당히 바꾸어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 같은 경우, 자국만의 규정을 만든다. '국4'의 경우, 중국에서는 4단계인데 유럽 기준으로 보면 4단계에서 5단계 사이다. 유럽의 5단계 규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응 측면에서는 선진국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편이 낫다. 왜냐면 선진시장 제품을 그대로 팔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인증은 다시 받아야 되고 기후 같은 특성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새롭게 개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중국같이 규정을 중간 단계 정도로 발표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과 WTO에 상정되는 내용들을 잘 공유하고 있다. KNOW TBT 사이트에서 통보문 조회도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Q 신흥국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 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A 과거, 신흥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 2015년 브라질이 규제를 신규로 도입했는데, 당시 브라질 전체에서 시험기관이 단 한군데에 불과했다. 그곳에서 시험한 결과만 인정되어서 해당 시험기관과 시험일정을 정해 인증을 진행했다. 우리는 급했지만 시험기관에서는 급할 것이 없었고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인증을 받았다. 미리 정보를 알았다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인증받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 모두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신흥국가나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신규 규제에 대한 확인이나 해당 국가기관, 시험기관과 연락이 어려우니 국가기관에서 앞서달라는 요구다. 작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중동의 GSO 담당자들을 초청했을 때, 우리 회사를 방문한 일은 좋은 사례이다. 비록 우리 제품을 직접 승인하는 담당자들은 아니었지만, 담당자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의 제품군을 소개하고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다만 기업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추가적으로 바라는 것은 가능하다면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식적으로 WTO에 상정되기 이전에 서로 규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기업에 공유해 주었으면 한다. 더불어, 쉽지는 않지만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많은 외부기관과 MOU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제품에 대한 MOU는 없다. MOU를 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험결과만이라도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의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시간적, 물질적 부담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다. 기술규제는 기업의 목소리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





2) 금호타이어

기업, 기관 협력으로 기술규제 선제대응



1960년 삼양타이어로 출발한 금호타이어는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중국의 글로벌 R&D 네트워크와 축적한 기술역량을 토대로 국내외 8개 공장에서 연간 5,600만 개에 달하는 타이어 생산능력을 갖춘 타이어 제조 기업이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신차용(OE, Original Equipment)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7개 판매법인, 12개 지사(사무소)를 통해 180여 국가에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다양한 국가의 기술규제를 풀어내기 위해 많은 기업 ·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품질기획팀과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박 상 정
차장



Q 현재 금호타이어의 사업 · 수출 영역에 있어 이슈가 되는 기술규제는 무엇입니까?

A 금호타이어의 주요 제품은 자동차용 타이어로 자동차의 모든 하중과 지면의 충격을 버티며 구동력, 제동력을 제공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다. 타이어에 대한 품질/기술표준은 1995년 유럽의 ECE-R30/54 인증과 1996년 북미 FMVSS 인증이 시작된 이래 두 표준이 Global standard로 인정을 받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워낙 오래 전부터 표준을 제정하고 시행한 지역이다 보니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71개국에서 유럽과 북미의 규정을 선택하거나 혼용하여 인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종의 무역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Global standard로 인정받은 유럽과 북미 표준이다 보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당 표준에 맞추려 하고, 결과적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수출 애로사항이 발행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새롭게 인증을 도입하려는 신흥국들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Q 180여 국가에 타이어를 수출하다 보니 규제대응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와 아쉬움이 남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기업이 판매하지 못하고 있던 국가에 규제대응을 통해 판매를 가능하게 한 경우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수출하고 있던 국가의 기술/인증 규제 신규시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신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해당 국가의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신흥국들의 신규 규제시행 계획에 대한 TBT 통보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신규 규제에 대한 법규동향 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과 함께 기존 시행국가의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 해결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근래에 애로사항 해소에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히 2013년 인도의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당시 인도는 자국의 인증마크를 각인한 제품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타이어는 한 국가에만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지 않는다. 인도에도 팔고 유럽이나 북미에도 판매한다. 이렇게 되면 타이어 제품 하나에 인도의 인증마크, 유럽, 북미 인증마크가 같이 들어간다. 그런데 인도의 인증마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판매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인도용 타이어를 따로 생산해야 하고 비용이 두 배는 더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대응했고 해당 조항을 삭제시킨 사례가 있다.

2014년 미국의 사례도 성공적이었다. 미국에는 타이어식별번호(DOT Code) 제도가 있다. 타이어에 생산공장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코드화해서 각인하는 제도로 미국 법규지만 전 세계의 타이어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원래 타이어식별번호의 총 자릿수는 8~12자리였는데 2014년 변경되는 제도는 모든 번호를 13자리로 고정하여 각인하도록 했다. 5년의 유예기간을 주며 기한 내에 모두 적용하라고 하는데 현재 금호타이어가 운영하는 제품이 약 2만 규격 정도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모두 수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유예기간을 10년 정도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까지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증 비용을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 로컬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화폐로 입금토록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국제 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달러를 사용하는데 은행과 화폐에 제한이 있으니 규제개선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인도도 외국 공장에만 공장별 보증료를 부과하고 타 국가 수출물량에도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2013년부터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지만 입장의 변화가 없다.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다른 외국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표와 시험, 인증의 시스템에 있어서도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은 법규 공표 전후로 충분히 대상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준다. 그러나 신흥국은 법규 발표와 이를 도입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다. 기업 입장에서 그 기간 안에 맞춰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Q 수출하는 국가가 워낙 많다보니 국가 혹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자동차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타이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은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흥국들은 신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흥국이라도 국가에 따라 문제가 다양하다. 일단 유럽이나 북미의 표준을 인용해 자신들의 국가에 도입했는데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문화라던가 법률적인 부분의 특이점 때문에 기존 표준에서 변형된 부분이 있다. 어떤 국가는 라벨링의 문제, 어떤 나라는 비용 문제, 다른 나라는 각인 부분이 이슈 등 규제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또한 신흥국이 선진국 표준을 가져오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부분 역시 문제다. 앞서 설명한 인도와 같이 특정 국가용 각인에 대해 타 국가 수출용에도 인증 비용을 부과한다던가, 타이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샘플에 맞는 시험용 Rim까지 구매하여 시험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신흥국들의 경우, 시험과 인증의 과정도 쉽지 않다. 선진국은 오래전에 인증 시스템이 정착되어서 인증을 대행해주는 업체까



박 상 욱
과장

지 있지만, 신흥국들은 직접 정부기관 중 입법 또는 행정 주관부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간혹 빠르게 확인해주는 국가도 있지만 문의를 했을 때 답변이 지연되거나 아예 응답이 없는 국가가 많다. 심지어 한 국가에서 인증기관 담당자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본다. 신흥국의 인증기관 담당자 역시 이러한 업무를 처음 해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프로세스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 확답을 주기도 어렵고 법규 해석도 달라져 결과적으로 업무가 더딘 것이 아닌가 싶다.

국가별 표준의 제/개정 및 운영에 따른 차이 외에도, 기업별 상황에 따른 차이도 발생한다. 당사는 베트남에 현지 법인 및 공장이 설립되어 있어 법규대응 및 인증획득에 수월했던 반면, 타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현지 방문을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통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국가인데, 현지에 공장이 있는 타사의 경우 공장 물류를 이용하여 통관에 큰 문제가 없는 반면, 당사는 인증 획득을 위한 샘플 타이어 통관이 막혀서 인증이 취소될 뻔한 사례가 있었다. 기업별 상황은 법규동향 파악 등 규제시행 정보 획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사는 미국에 공장이 있어서 현지 타이어협회 및 관련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협의체를 통해 기술/인증

규제 동향을 사전에 입수할 수 있으나, 타사는 유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법규동향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내 타이어 기업들이 국가별/기업별 상황을 자사만의 이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확인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규제대응 대표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나 TBT위원회의 외교적 절차를 통해 기업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다.

Q 오랜 기간, 많은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응하셔서 노하우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금호타이어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일단 금호타이어가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은 이렇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가 해외지사를 통해 새로운 법규가 시행된다는 정보, 혹은 애로사항을 입수한다. 그렇다면 인증과 법규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만일 불합리하다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여 해결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KNOW TBT 사이트에 가입하면 업무와 관련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통보문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해 상대국에 전달해 주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큰 도움이 된다.

전 종 환
대리



또한 국내 타이어 제조 업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도 하고 있다. 국내 타이어 제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지만 해외 규제대응에 있어서는 공동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끼리 협의체도 있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발굴되는 공통된 의견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안한다. 협회 내부에서도 업체간 정보공유가 잘 되고 있다. 외부로 수출하는 입장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회사는 해외에 많은 지사와 공장, 연구소를 운영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180개 수출국 전체의 기술규제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으며 문제 제기 시, 향후 인증과 판매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정부 차원의 의견 전달과 규제 완화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Q 결국, 무역기술장벽 극복에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A 처음에 언급했지만 타이어 산업에 있어 표준 도입의 과정을 보면 유럽과 북미가 세운 표준을 신흥국들이 따라가는 형태다. 당연히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도입의 시기도 짧으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대 국가나 기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업 담당자들이 업계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또한 각종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타 산업계의 실무자/전문가들과 교류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애로사항과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타 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외지사나 거래선에서 얻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는 정부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소위 '카더라'식 소문이지만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공식화 이후 정보확인이 될 경우, 대응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다. 또한, 비회원국의 경우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신규제도 도입 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코트라(KOTRA)나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비회원국에 대한 창구도 마련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PART IV

전문가 칼럼

1. 사이버 안보 분야의 미 · 중 패권경쟁
 : 한국의 미래전략에 주는 함의
2. 중국의 표준 체계 개편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



PART IV

전문가 칼럼

1. 사이버 안보 분야의 미 · 중 패권경쟁
: 한국의 미래전략에 주는 함의

김 상 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 · 중 기술패권 경쟁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두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기성 국제정치 무대 위의 승부만으로 미래 무대의 판세를 가늠하려는 시도는 너무 단순하다.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등 복합적인 변환을 겪고 있는 오늘날, 기술 · 정보 · 지식 · 문화 ·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신흥 세계정치 무대에서 벌어지는 경쟁이 미래의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금 벌어지는 양국 간 마찰의 핵심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첨단 부문의 경쟁이 있다.

첨단 부문 경쟁은 미래패권의 향배를 엿보는 선행지표이다. 흔히 선도 부문(leading sector)으로 불리는, 해당 시기의 신흥무대에서 벌여졌던 기술패권 경쟁의 향배는 글로벌 패권의 부침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례였다. 가장 비근한 사례로 20세기 전반 전기공학과 내구 소비재, 자동차 산업 등에서 벌어진 영국과 미국의 기술패권 경쟁을 들 수 있으며, 좀 더 가까이는 20세기 후반 가전 산업과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기술패권 경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21세기 선도 부문인 ICT 분야에서 진행 중인 미 · 중 기술패권 경쟁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패권 경쟁은 예전에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ICT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은 단순히 시장점유율이나 기술혁신을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라 표준의 장악과 매력의 발산, 규모의 변수와 체제의 성격까지도 관련되는 '플랫폼 경쟁'이다. 플랫폼 경쟁은 주로 컴퓨팅이나 인터넷, 네트워크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기술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 · 중경쟁의 세계정치에도 원용 가능하다. 이러한 플랫폼 경쟁의 시각에서, 미 · 중 기술패권 경쟁은 단순한 제품, 기술경쟁이 아니라 표준경쟁이자 좀 더 복합적인 매력과 체제의 경쟁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선도 부문의 경쟁은 단순히 값싸고 좋은 반도체, 성능 좋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빠르게 접속되는 인터넷 등을 만들기 위해서 벌였던 예전의 경쟁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어느 기업이나 국가가 자원을 확보하거나 역량을 기르는 차원의 경쟁을 넘



어선다. 물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충분한 자본과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복합적인 네트워크와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벌어지는 ICT 분야의 경쟁은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력을 발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선도 부문의 경쟁은 자본과 기술의 평면적 경쟁을 넘어서 시장의 표준과 내용적 매력을 장악하기 위해 벌어지는 플랫폼 경쟁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 · 중경쟁의 복합지정학적 지평

4차 산업혁명은 미 · 중경쟁의 지평을 크게 흔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쟁의 성격, 다시 말해 권력게임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미래 권력 게임은 전통적인 물질적 '자원권력 경쟁'의 양상을 넘어서 기술 · 정보 · 데이터와 같은 비(非)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표준권력 경쟁'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권력게임의 규칙을 장악하는 자가 승리한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권력게임을 주도하는 주체도 다변화시켜서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민간 기업들과 일반 대중이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공간을 늘려 놓았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경쟁을 논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두 영토국가 레벨의 경쟁으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영토국가의 발상을 전제로 한 지정학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정치에서 '지정학의 부활'이 거론될 정도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분쟁과 보호무역정책이 빈발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국가안보를 빌미로 네트워크 관련 보안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초국적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가주권을 내세워 규제하려 했다. 타국의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해킹의 이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동맹을 활용하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비유가 난무하고, 이를 응원이라도 하듯이 초국적이고 글로벌한 속성의 사이버 공간에서도 영토국가에 기반을 두는 사이버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 분야도 지정학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과거의 현실에서 잉태된 '고전 지정학'의 시각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영토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변수들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이른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패권 경쟁은 과거 권력정치의 반복이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권력의 지평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미 · 중 패권경쟁은 기존의 근대 국제정치에서 영토국가들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전통적인 '부국강병 게임'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권력구조의 변동도 단일종목으로 승패를 가리는 '세력전이'의 모습이 아니라 종합경기를 치루고 여러 종목의 성적을 합산하는 복합적인 '세력재편'의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 안보 분야의 미 · 중 경쟁

최근 사이버 공간의 미 · 중 경쟁은 국제정치의 안보 게임으로 전이되었다. 제일 먼저 달아오른 것은 사이버 안보다.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 해커들의 공격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게 했다. 과잉 안보화의 논란까지 야기했던 이른바 '중국해커위협론'은 2010년대 초중반 미 · 중 관계를 달구었던 뜨거운 현안 중 하나였다. 사이버 안보 분야의 경쟁은 현실 공간의 첨단 군비경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최근 드론이나 킬러로봇 등과 같은 무인무기체계의 발달은 머지않은 미래에 양국 간 로봇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낳

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나라의 사이버 권력경쟁은 좀 더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 사이버 안보는 산업과 통상의 문제와 연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중국산 IT제품 위협론'을 내세워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주도하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와의 밀착 관계를 의심하여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ZTE는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드론업체인 DJI나 CCTV업체인 하이크비전도 미국 시장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보적 함의가 큰 민군 겸용(dual-use)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벌어졌던, 과거 1990년대 미 · 일 패권경쟁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원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이후 개인정보와 데이터 안보는 미 · 중 국가안보의 쟁점이 됐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통한 데이터 유출의 경계는 중국에서 2016년 〈인터넷안전법〉을 출현시켰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서비스를 검열 · 통제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국가주권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인터넷을 대하는 미 · 중 양국의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반영한다. 2014년부터 중국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에 맞불을 놓으며 '세계인터넷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미 · 중 경쟁이 국내 정책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규범의 형성과정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 · 중 경쟁은 산업-통상-안보-군사-개인정보-법제도-국제규범 등에 걸쳐 미래권력 경쟁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경쟁의 승부는 과거의 글로벌 패권경쟁이 그랬듯, 한판 전쟁을 벌이고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그만큼 오늘날 패권경쟁은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먹거리와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 · 중 사이버 패권경쟁의 동향파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2018년 9월 20일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연방 차원의 '국가사이버전략'을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기치로 내걸어 국가 지원 해커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전략'은 이전보다 더 공세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줬는데,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운신 폭을 넓혀줬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 9월 15일 서명된 행정명령에서 이미 나타났다. 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경우 정부 유관부처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지침을 뒤집었다. 이번 행정명령과 '전략'은 11월 6일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대응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미 행정부의 전략은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2018년 9월 6일 미 하원은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 및 정부에 추가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공격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을 겨냥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사이버 위협국 지정이나 경제적 추가제재 및 안보 지원의 중단 등과 같은 조치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미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곧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 법안은 미국의 독자적인 사이

버 위협 대응조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파악되며, 미국과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제3국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로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 행정부와 의회의 행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들 전략과 법안들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2017년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이 직접 나서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거론했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이 나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2017년 9월 6일 미 법무부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뿐만 아니라 소니픽처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미 방위산업업체 록히드 마틴 등을 해킹한 혐의로 북한 해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소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북한이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온갖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이어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사이버 공격 문제를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예상된다.

만약에 미국이 동북아 사이버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프라인 공간의 남북관계에 화해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 지금, 사이버 공간의 북미갈등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오프라인 한미동맹의 틀을 온라인의 한미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에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듯이 사이버 평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2015년 미 · 중 사이버 합의의 전례를 보면, 어느 시점엔가 미국이 북미 양자의 협상 테이블 위에 사이버 안보 문제를 올려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갈등과 협력의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사이버 안보 국가전략의 내용은 무엇인가?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2018년 11월 7~9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상호신뢰하는 디지털 세계 창조: 함께 만들어가는 인터넷 운명공동체'를 주제로 제5회 '세계인터넷대회'가 열렸다. 비슷한 시기에 상해에서 열린 국제수입박람회의 영향 탓으로 그 열기가 예전만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미래를 엿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행사였다. 2014년 출범하여 4년 만에 글로벌 IT업계가 주목하는 행사로 자리 잡은 세계인터넷대회가 던진 주요 화두는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등이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합성 아나운서가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한 이번 대회는 2018년 약 4,422조 원에 달한 중국의 디지털 경제규모를 과시하고, 중국의 기술적 비전을 투사하려는 자리였다.

세계인터넷대회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대회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비전이 드러나는 창(窓)이기 때문이다. 출범 당시부터 세계인터넷대회는 '사이버공간총회'로 대변되는 서방 진영의 행보에 대항하는 성격을 띠었다. 특히 2013년 스노든 사건 이후 중국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미국을 견제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비(非)서방 진영을 결집하고자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국가주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행보였다. 이번 대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개막 축하서신을 통해서,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국의 상이한 상황과 인터넷 발전단계에 맞는 디지털 세계를 창조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중국의 도전은 최근 IT산업과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 화웨이, ZTE, 차이나모바일, DJI, 하이크비전, 푸젠진화 등과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빌미가 되어

미국의 수출입 규제를 받았다. 게다가 기술경쟁과 통상마찰의 외양을 한 이들 문제는 사이버 안보나 데이터 주권 등의 쟁점과 연계되면서 그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 2018년 세계인터넷대회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진 것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의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의 견제를 의식해서 다소 자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까지 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IT제품 및 서비스를 규제하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와츠업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네이버의 블로그와 카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앞서 언급했던, 중국의 〈인터넷안전법〉이다. 〈인터넷안전법〉은 중국에서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외국 기업들은 반드시 중국 내에 데이터 서버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상의 이유로 데이터를 해외로 옮기려면 중국 공안당국의 보안평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 국외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 법은 201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외국 기업들이 반발해 법 시행이 2019년 초로 유예되기도 했다.

이러한 태세의 이면에는 중국 국내체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미래질서를 보는 중국의 구상이 담겨 있다. 이러한 구상은 서방 진영에 대항하여 사이버 공간의 독자적 관할을 모색하는 세계인터넷대회의 정치적 비전과도 통한다. 아마도 중국의 속내는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에 단순히 편입하기보다는 중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미래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대신하여 '중국몽(中國夢)'을 밑그림으로 삼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그 과정은 과거 화려했던 중국의 천하질서(天下秩序)를 디지털 시대로 옮겨와서 재현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디지털 천하질서에 자리매김할 '동방인터넷지국' 한국의 꿈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화웨이 사태의 국제정치학

이상에서 살펴본 사이버 안보 분야 미 · 중경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은 마치 한 편의 국제정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전에도 예고편이 없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드라마의 시작은 2018년 2월 CIA, FBI, NSA 등 미국 정보기관들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시작되었다. 2018년 8월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며 공공기관 등에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사용을 금지했다. 2018년 12월에는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부회장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되며 드라마의 전개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이 드라마의 장르는 단순한 '기술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치 드라마'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문제제기는 2010년대 초반의 '중국 해커 위협론'에서 2010년대 후반의 '중국 IT보안제품 위협론'으로 그 초점이 바뀌었다. 5G 네트워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가 표적이 되었다. 화웨이 장비가 이른바 백도어를 통해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사회에서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웨이 백도어가 실재하는 안보위협이라는 주장과 이는 단지 미국이 '안보화(securitization)'의 과정을 통해서 구성해 낸 위협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미국이 주장하듯이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도입은 보안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화웨이의 행보나 투명성이 부족한 기업문화와 성격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 의심'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보안위협의 객관적 증거를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세에 대해 화웨이도 그것이 보안위협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 화웨이의 입장

은 아직까지 자사 장비의 보안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 문이라도 닫겠다는 식이다. 마치 '블랙박스'를 가운데 두고 누구 말이 맞는지 믿어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다.

2019년으로 해가 바뀔 무렵 이러한 실랑이의 결과는 미국 쪽으로 기우는 듯이 보였다. 2018년 말 트럼프 행정부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대변되는 미국의 주요 정보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화웨이 장비가 발붙일 곳을 아예 없애려는 듯 강경 행보를 보였다.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은 2018년 말 5G 공급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캐나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했다. 일본 역시 정부 조달 입찰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순을 거치면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에 동참하는 듯이 보였던 서방 국가들이 전선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였다. 2월 17일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화웨이 장비의 보안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데 이어, 독일 역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를 배제했던 뉴질랜드의 경우는 총리가 직접 나서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프랑스도 특정 기업에 대한 보이콧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국가가 이탈한 데에는 선두 기술기업 화웨이를 배제하고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현실적 부담 외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 · 중경쟁에서 무리하게 내편 모으기를 시도하는 미국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다.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드라마의 전개에 직면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더 선진화된 기술을 막기보다는 경쟁을 통해 미국이 승리하길 바란다"며 그간의 강경자세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제스처를 취했다. 사실상 미국의 반(反) 화웨이 전선이 와해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었다.

미 · 중경쟁 사이의 한국

이렇듯 복합적인 지평을 펼쳐 놓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미 · 중경쟁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화웨이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 · 중이 벌이는 갈등의 여파는 그 사이에 낀 한국에까지 몰려오고 있다. 이 분야의 미 · 중경쟁은 전통적인 동맹과 외교의 문제를 부과하며 조만간 한국으로 하여금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지정학적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듯 사이버 안보 문제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외교의 난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는 서방과 비서방 진영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이버 안보 문제는, 최근 국가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드(THAAD) 문제만큼이나,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사이에서 딜레마를 야기할 불씨를 안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사이버 안보 분야 미 · 중경쟁의 사례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경쟁이라는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권력의 변동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은 국제체제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오늘날 신흥무대에서는 새로운 권력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더욱 더 주목을 요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사이버 위협에 구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대내적으로 기술과 제도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도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 분야의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당위성이 제기된다. 2019년은 미 · 중 패권경쟁에 대응하는 중견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전문가 칼럼

2. 중국의 표준 체계 개편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

곽 주 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중국은 국가의 규모가 크고 정부 차원에서 경제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5년마다 국가운영 기조를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철저히 집행한다. 현재는 2016년에 발표한 〈13차오개년사회경제규획 十三次五个年社会经济规划, 13th Five-Year Socio-Economic Planning(이하 13.5규획)〉을 시행 중이다. 13.5규획은 2020년에 종료되므로, 현재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을 향하고 있다. 2018년 12월,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한 것을 비롯하여, 벌써 13.5규획이 제시한 목표를 성취한 부문도 있고 아직 미진한 영역도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대일로를 둘러싼 갈등 등 대외 관계는 순탄치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목표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13.5규획의 배경

이전의 규획과는 달리, 13.5규획은 질적 발전과 분배의 개선에 방점을 두었다. 질적 발전을 위해 환경문제 해결, 기술혁신, 산업고도화, 제도개선에 대한 전폭적 추진이 예고되었으며, 분배개선에 대해 도농 차이 개선, 거점지역 중심의 지역통합, 민영기업 처우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예전의 규획은 발전과 분배를 개혁하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대체로 성장지향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13.5규획 이후, 중국 정부의 입장은 전면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에는 중국이 현재 인식하는 대내외 문제에 관한 고민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13.5규획에서 중국이 토로하고 있는 문제점은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는 중진국 함정의 도래이다. 중국의 임금수준이 점점 상승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세계의 공장' 모델로는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미 베트남 등 중국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저기술,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졌다.

둘째는 기술진보의 가속화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혁신이 발생하면서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인간의 생활방식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리라 예상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자기업



에게 기술이전을 의무화하여 기술을 이전받거나 라이선싱을 통하여 도입한 기술을 중국에 맞게 개량하여 변종을 만드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로 악명이 높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기술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중국 내 전반에 형성되어 있다.

셋째는 불안한 세계 경제의 흐름이다. '세계의 공장' 모델은 해외시장이 소비자로서 중국의 생산품을 계속 구매해야 지속될 수 있다. 세계의 경기흐름에 영향을 덜 받고자, 내수시장을 키우는 등 중국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은 이미 전 규획에서도 언급되었고 실행 중에 있다. 13.5규획은 그 연장선상에서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하여 지역 간, 국유-민영기업 간, 산업 간 분배를 개선시키고자 한다. 특히 세계의 공장 모델은 단기간에 갑자기 폐지할 수 없으므로 제조업을 서비스업과 연계하는 것을 통해 고용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결국 13.5규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하는 '중국몽(中國夢)'과 부합한다. 즉, 중국이 부강해지되 저가 제조업보다 지식 기반의 서비스, 제조업 내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늘리고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자로서 세계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많은 분야에 있어 경쟁 관계인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이다. 특히 중국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정관을 고치면서까지 상임이사국이 되어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이 시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따라서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국의 표준체계 및 국제표준화라는 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슈인, 중국이 미래대비책으로 육성하는 '미래 전략 및 신흥 산업'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13.5규획의 미래 전략 및 신흥 산업 정책

이 부분은 중국이 향후 어느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13.5규획에서 정책 기조가 전환되었던 주요 원인은 현재 중국의 저비용 저기술 제조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국내임금의 인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탈하는 등 투자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었다. 지금과 같은 제조업 전략이 앞으로는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 아래 중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세 분야의 사업을 명시, 추진하고 있다(표1 참조). 그 세 사업은 '제조업 비교우위 조정',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서비스업 발전'이다.

[표 Ⅳ-1] 13.5규획이 제시한 미래 산업

사업 분류	세부 사업
제조업 비교우위 조정	• 기초역량 제고 •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 브랜드 구축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 전략적 산업의 육성과 발전 •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서비스업 발전	• 서비스업의 전문화 • 관련 정책정비

* 해당범위: 13.5규획 제5편, 22~24장

첫 번째, 미래 사업은 국가총생산 내 부가가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계속 유지하되, 그 비교우위를 저비용 제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사업은 유망한 고기술 산업 중 몇 개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그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 앞으로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야심이다. 세 번째, 앞



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우선 제조업 비교우위 조정은 비교적 그 로직을 이해하기 쉽다.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치사슬상 제조 및 생산 공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소재, 부품, 공정기술, 제품기술의 가치사슬을 통합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이다. 이와 동시에 고기술 장비 제조업 분야에 매진하여 외산기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R&D 혁신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인데, 대상 산업은 현재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IT 산업이다. 현재 중국에서 유독 스마트화가 강조되고, 자국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정책 때문이다. 특히 13.5규획은 R&D 혁신역량을 갖추는 사업의 지향점으로 제조업의 스마트화 외에도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명시하였다.

이렇게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에 R&D 핵심역량을 기르는 한편, 전통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던 제조업 분야는 가치사슬에서 최대한 업스트림으로 도약하여 소비재 공급과 가까워지도록 한다. 이 분야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던 저기술 제조업으로서 에너지 소모가 크고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다. 당장 손을 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제조보다 유통과 판매 모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리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품질향상을 통하여 '브랜드'를 구축할 것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보면 향후 중국 기업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기업 규모를 확장하고 브랜드 보유에 집중할 것이므로, 내수시장에서 외자기업들에게 경쟁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실제로 13.5규획에서는 기업 간 인수합병을 격려하여 수직계열화시키거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두 번째 사업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이다. 이 사업은 전략적 산업과 신흥산업으로 지원대상이 나뉘는데, 전략적 산업은 '중국의 미래'에 특히 중요한 산업이며 신흥산업은 현재 미래를 이끌 분야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다. 중국은 이미 지원 대상산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해놓았다. 중국의 13.5규획 중점산업 선정은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중국에게 끼칠 영향력 등 수많은 변수를 장고의 숙려 끝에 결정한 것이다.

우선, 전략적 산업으로 우주(신형 전투기 및 항공기, 차세대 작업 플랫폼과 통합 우주관측 시스템), 해양, 정보 네트워크(양자통신, 유비쿼터스형 사물인터넷), 생명과학(생물합성과 재생 의료기술), 핵 기술(차세대 원자력 장비와 소형 핵 동력시스템, 민간용 핵 분석과 화상개발) 분야를 선정하고 서둘러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차지할 계획을 밝혔다. 이들 기술은 중국의 영토확장 및 대만과의 관계, 상대적으로 낙후한 의료기술, 산업화에 필요한 전력공급 등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대내외적 이슈를 감안하여 선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신흥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첨단 반도체, 로봇, 3D프린팅, 스마트시스템, 차세대 항공장비), 신에너지 자동차(공간기술 종합서비스 시스템, 스마트교통), 바이오기술(맞춤의학), 친환경 저탄소(고효

율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고부가가치 장비 및 소재(AI, 고효율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디지털 혁신(가상현실과 대화형 영상) 관련 산업을 선정하였다. 이들 신흥산업은 현재 전 세계가 미래기술로서 주목하는 분야들이다.

세 번째 사업은 서비스업의 발전이다. 서비스업의 발전에 관해서 13.5규획에 쓰인 내용은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국의 현재 서비스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다짐이다. 이에 여러 계획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기존 정책과 충돌하는 면이 없고, 정책의 내용상 획기적인 전환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13.5규획에서는 미래 주력 사업 전략이라기보다 저기술 저임금에 몰려있는 제조업 인력의 재배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미래 주력사업 발굴과 표준화

중국은 12.5규획(2011–2015) 동안 '신기술 하이테크 분야의 중국 표준을 국제화한다'는 목표를 공표하였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국제표준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왔으나 '중국산 국제표준'들은 대부분 저기술 제조업에 몰려있으며, 일부 전자, 통신 산업 내의 업적들은 기술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13.5규획에서 추진하는 미래 주력사업은 기술적으로 정말 중요한 산업을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방법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13.5규획에서 밝힌 바, 중국의 미래 주력사업의 대상은 기술적 참신성으로 인하여 아직 상업화가 되지 않거나, 혹은 원천기술 보유국이 등장하지 않은 기술이다. 요즘 흔히 말하는 4차 산업기술들과 일맥상통한다. 미래 주력사업의 핵심은 중국이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 먼저 개발하여 향후 기술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다. 주력 분야들이 워낙 불확실한 신기술 산업이라 단기간에 연구성과를 내기 힘들 수 있지만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중국은 창어 4호의 성과에 매우 고무되어 기술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14.5규획에서도 중국 정부는 이들 분야에 전폭적 지원을 계속하고 연구 성과가 생기면 이들을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한편, 미래 주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중국은 제조업을 줄이고 서비스업을 강화하도록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밝혔다. 규획과 관련된 부서의 이행계획을 자세히 읽어보면, 업무의 로드맵상 현재 비교우위가 있는 저기술 저임금 위주의 제조업과 유관한 서비스업부터 발전시키는 업무가 첫 과제로 파악된다. 이는 중국의 과거 경험과 유사한데, 제조업의 발전 초기, 중국은 해외로부터 기술을 이전하여 국내에서 학습, 흡수한 후 국내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변형하여 만들어냈다. 서비스업의 발전 역시 제조업과 같이 먼저 해외 서비스표준에 기반하여 국내표준을 통일시키고 이후에는 중국의 서비스를 해외시장에 진출시키며 시장을 장악, 중국 서비스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추진하겠다는 시나리오이다.

미래 주력사업의 표준 관련 정책은 기존에 비교우위가 있는 제조업, 신흥 전략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현재 제조업에 치우친 표준들을 소재와 부품까지 확대하고, 12.5규획부터 해왔던 제조업 내의 표준 강화를 중국이 IT 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업과 연관하여 '스마트'가 붙는 모든 사업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신흥 전략사업에서는 원천기술 개발과 더불어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중국화'함으로써 향후 시장지배를 달성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신규 표준 제정에 힘쓴다. 빅데이터를 비롯하여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업인수를 통하여 서비스 기업을 사들이는 추세를 상기해보면, 중국 서비스표준의 국제표준화 실현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미래 주력사업과 관련한 표준화 정책은 표2에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하였다. 장비와 부품을 포함해(새로운 제조업 발전), 각 기술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계량과 인증을 강화하되(산업의 기초역량 제고), 그 인

[표 Ⅳ-2] 미래 주력사업 관련 표준화 정책 소개

표준화 사업	구체적 업무
산업의 기초역량 제고	• 기초소재, 부품, 공법, 제품기술에 대한 표준, 계량, 인증/허가, 검사/측정 시스템 구축을 강화함
새로운 제조업 발전	• 스마트화를 통해 핵심기술 장비의 개발 및 스마트 제조표준, 산업 전자설비, 핵심지원 S/W 등 기초역량을 강화함
고품질 브랜드 구축	•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표준에 대한 공개, 감독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에서 온라인 품질 테스트와 전체 수명주기 품질 추적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품질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 테스트 평가센터, 검사/측정/인증 관련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강화함
기업의 실물경제 비용 절감	• 정부 행정심사의 사전 중개 서비스 및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규제화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킴
신흥산업의 발전 여건 마련	•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기술, 친환경 저탄소, 고부가가치 장비 및 소재, 디지털 산업에 있어 산업 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함 • 신기술, 신제품, 신 기업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진입조건, 관리감독 규정, 표준시스템을 경쟁기제에 기반을 두어 마련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전문화 추진	• 제조업체에서 서비스 분야의 전문화 분리와 아웃소싱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추세에 맞추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표준 체계를 구축, 이를 세계화 수준으로 제고함
생활형 서비스의 수준 제고	• 우수 서비스 약속 라벨 및 관리 제도를 보급하여 유명한 서비스 브랜드를 육성함
서비스업 발전 시스템과 관련 정책의 정비	• 전력, 민항, 철도, 석유, 천연가스, 우정, 시정의 입찰시스템을 개방함 •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인터넷 및 통상 물류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차별적 규제를 제거함

증과 감독 역시 표준화와 공개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며(기업의 실물경제 비용 절감), 그 평가의 기준은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시킨다(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전문화 추진). 또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을 정비, 표준화하고(고품질 브랜드 구축) 이러한 제도를 국민생활 전반에 도입하며(생활형 서비스의 수준 제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도입하고 진입장벽을 낮춘다(서비스업 관련 시스템과 제도정비). 또한, 미래기술에 대한 개발

자체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13.5규획은 적어도 이들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준비할 필요를 언급하되(신흥 산업의 발전 여건 마련) 그 정책들은 반드시 경쟁 기제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기술표준 체계 개편

13.5규획에서 소개한 2016~2020년 중국의 기술표준화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표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통합이다. 그동안 중국의 국무원 내에서 다수의 부서가 표준을 담당하고 있었다. 부서마다 지향점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상이하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 달라서 부서 간 의사소통과 이해관계의 조율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특히 국제표준화 업무의 경우, 이러한 교차중복 쏠림 문제로 추진 과제가 때때로 교착상태에 빠지고는 했다. 예를 들면 인삼 재배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때, 이를 재경부, 농업부, 삼림부가 관할했는데 농업부와 삼림부는 서로 인삼을 자기 관할 부서라고 우겼으며 심지어 재경부는 국제표준화를 찬성하는 반면 삼림부는 산지 난개발을 우려해 견제하는 등 정부 안에서도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18년에 표준화와 관련한 정부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2017년 말까지 표준화 업무를 관장해 온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查检疫总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을 통합 · 재편하여 총괄적인 위상을 갖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신설하였다. 새로 탄생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업무 외에도 종합적인 시장 관리감독, 정보 공시 및 공유 시스템 구축, 품질강국 전략 추진 부서를 두어 업무 범위가 넓어지며 그 권한도 더욱 강력해졌다. 특히 공정거래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표준 추진 체계에 있어 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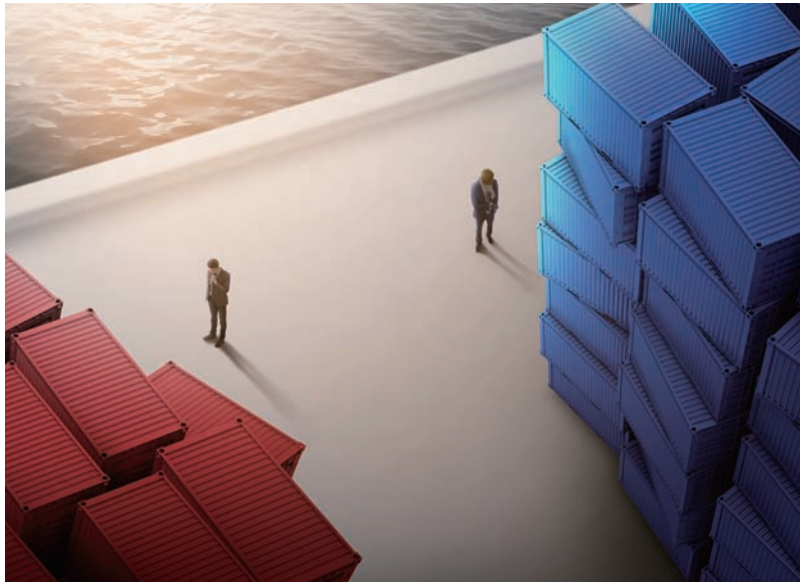
적인 표준화 체계였던 정책 설계와 인허가 및 감독관리 이상의 규제까지 가능한 조직이 되었다.

둘째는 정책 결정의 모호성 제거이다. 중국은 행정상 중앙–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표준화 조직체계 역시 이원화되어 있어서 중앙–지방정부 및 지방–지방정부의 기술위원회 간 업무의 교차 · 중복이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니즈를 반영하고자 중국의 표준화 체계는 전통적인 하향식 접근 방식 위주에서 상향식 접근 방식을 허용하였는데, 지방정부에서 상달한 아이디어들이 상위 지방정부에서 통합되며 관련 기관 사이에 이익 상충 등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조직통합 · 개편을 거치며 표준화 체계가 강력해졌으나 중국 전체에서는 여전히 표준화 체계가 유기적 ·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셋째는 표준 데이터의 정리이다. 현재 중국표준은 기존 중국 내 표준들이 정리되지 않아 중복된 부분이 많다. 오래된 기존 표준들은 신기술과 기술적 속성에서 여러모로 충돌하고 있어, 이들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갱신하지 않는다면 미래 주력 사업에서 추진하는 기술들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데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유관기관에서 표준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기존 표준들은 각각 소속기관과 연계되어 폐지 · 변경이 힘들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장감독총국의 설립으로 통합된 강력한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준 데이터를 정비하기가 용이해졌다. 문제는 오히려 질적인 면에 있는데, 2016년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3만여 개의 국내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강제성 국내표준(주로 규제의 역할)은 4,172개가 있다(2015년 기준). 미래 주력 사업을 국제표준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빨리 업데이트하거나 폐지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2016년 중국 정부는 13.5규획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해당 기술을 개발할 기관을 모두 정해놓았다. 상당 부분의 프로젝트는 외부에 공개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창어 4호나 5G 등의 기술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신흥 전략사업은 이미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1~2년의 기사를 찾아보면 적어도 스마트신호등, 스마트카,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에서 중국은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있고 심지어 인공지능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앙일보 2018년 3월 29일자 기사 "중국 인공지능 기술 한국 앞질렀다...설자리 잃는 한국 인공지능). 중국이 미래 주력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연결시켜야 하는 이유 역시 너무나 자명하다. 앞으로 5년, 아니 2~3년 안에 일어날 일들은 통상마찰 등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미래 주력사업에 대해, 중국은 서비스업과 연관된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각오를 명시하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및 플랫폼 등 현재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분야이며, 중국은 해외에서도 기업인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연구개발–제조–서비스 모두를 통틀어 중국은 자국의 룰을 세계의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철저한 기술별 연구를 통하여 중국과 경쟁할 분야, 협력할 분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덜 중요한 분야를 파악해 움직임에 대처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직 오퍼레이션에서 확정된 표준은 없으나 이들 분야는 기술의 본질이 국제적이다. 예를 들면 이들 기술의 보안(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다방면으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여 미래 주력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참여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PART V

부 록

1. TBT 통보절차
2. 통보문 양식
3. 용어사전



PART V

부록

1. TBT 통보절차

TBT 통보문이란?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만드는 경우, 타 회원국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이때 정해진 양식에 규제명, 규제 목적 및 내용, 의견 제시 기간 등을 작성해 WTO 사무국에 송부하는데, 이를 TBT 통보문이라고 합니다.

TBT 통보절차 및 소요기간

업무 내용	관련 부처	소요기간	증감(율)
통보문 작성	담당 부처		입법예고와 동시 진행 *입법예고는 제 · 개정 모두 포함
통보문 검토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1~2일	
통보문 송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1~2일	*산업부 및 국표원에 통보 요청공문 발송
통보문 발행	WTO 사무국	3~7일	WTO 웹사이트 게시 *http://tbtims.wto.org
의견 수렴	타 회원국	60일	
최종안 추가통보	담당 부처		최종안 공표와 동시 진행 *국표원을 통해 송부
시행	담당 부처		공표에서 시행까지 6개월 이상 권고

1) 통보대상

규정의 제 · 개정으로 인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관련 국제표준 및 지침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통보

기술규정의 경우 (협정문 제2.9조)〉

① 기술규정이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①, ②에 모두 해당 시 통보

적합성평가절차의 경우 (협정문 제5.6조)〉

①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표준화기관의 지침 및 권고와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지침 및 권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①, ②에 모두 해당 시 통보

① 미국, 캐나다, 호주, 터키, 콜럼비아, 페루 6개 FTA 체결국은 WTO 통보와 동시에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특히, 미국, 페루, 콜럼비아 3개 FTA 체결국은 기술규준이나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통보 시점

WTO TBT 위원회에서 최소 6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채택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통보 필요**

▸ TBT 협정문 제2.9조에서 통보된 규제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TBT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안'에서 60일 이상,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

한 특별 및 차등대우의 일환으로 90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권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WTO 사무국으로 송부한 후에도 WTO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국 최종 공지까지는 평균 **5일 정도**가 추가 소요되므로, 입법예고와 동시에 통보문을 보내주셔야 TBT 협정을 준수하고 입법절차의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단,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정 제9.6.4조에 따라 **최소 6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해야 함**

▸ 보건 ·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3) 통보문 작성

국 · 영문으로 통보문을 작성하고, 규정 제 · 개정안 본문을 PDF 파일로 전환

▸ 통보문 작성 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로 문의

4) 통보문 제출

작성한 통보문 및 제 · 개정된 규정 본문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및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로 송부

국가기술표준원 검토 후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에서 WTO 사무국으로 최종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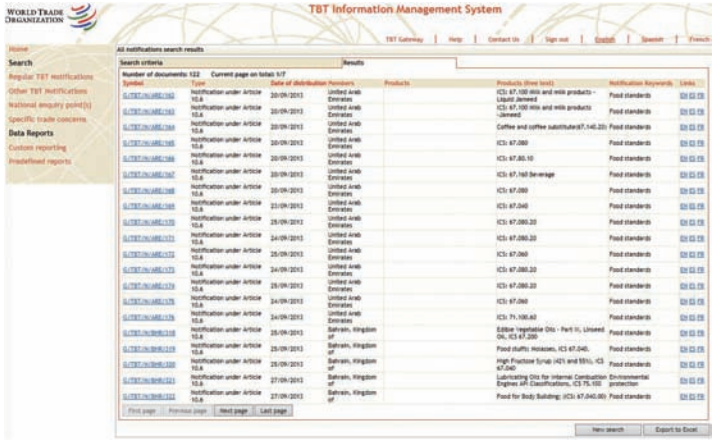
5) 통보문 배포

WTO 사무국에서 TBT 정보관리시스템에 통보문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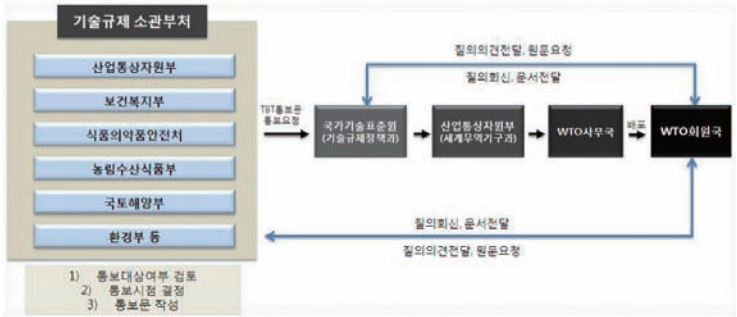
• TBT 정보관리시스템(http://tbtims.wto.org)에서 통보국가(notifying member), 통보일(date of distribution) 등 검색 조건 지정 후 검색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TBT 포탈(www.knowtbt.kr)에서 검색

TBT 정보관리시스템



TBT 통보문 통보 절차



부록

2. 통보문 종류

1) 신규 통보문

일반적인 규정 제 · 개정은 모두 신규 통보문으로 통보되며, 의견 제시 기간 60일을 부여해야 함(예시1 참조)

국 · 영문 통보문, PDF 파일로 전환한 규정 제 · 개정안 본문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및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로 공문과 함께 송부(개정 통보문도 동일)

2) 추가 통보문

최초 통보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통보문(예시2 참조)

추가 통보 사례

- 기술규정이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경우
 *한미 FTA에 따라, 기술규정이 최종 공표되는 경우 최종본을 단일 관보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 통보가 필수적임
- 기술규정 채택, 공표, 시행시 관련 날짜가 명기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
- 통보된 기술규정의 내용 또는 범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거나 수정된 경우
- 기술규정의 철회 또는 폐기시, 신규 기술규정으로 대체될 경우
- 의견수렴 기간 변경(연장 또는 재수렴 실시)
- 최초 통보문 및 통보된 기술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3) 수정 통보문

최초 통보문 및 통보된 기술규정의 경미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통보문(예시3 참조)

추가 · 수정 통보 경우

① 통보문을 직접 작성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송부, 또는
② 해당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공문이나 이메일(tbt@korea.kr)로 통지하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통보문 작성 후 송부

4) 개정 통보문

통보된 기술규제안의 채택 또는 시행 전에 규제 정보가 상당히 변경된 경우에 사용하며, 의견제시 기간을 추가적으로 60일 이상 부여해야 함(예시4 참조)

- 신규 통보문과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며, 정규 통보문으로 간주
- 의견제시 기간을 제공하게 되므로, 국내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고려하여 통보

5) 번역 통보문

WTO 공식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외의 언어로 번역된 기술규제 본문을 통보(예시5 참조)

통보문 종류 및 주요내용

통보문	문서번호 생성 방식	주요 내용
신 규 (New Notification)	G/TBT/N/KOR/번호	기술규정을 제 · 개정하는 경우 – 의견 수렴 기간 : 60일 이상 – 규제 본문을 첨부하여 통보
추 가 (Addenda)	G/TBT/N/KOR/번호/ Add.1	최초 통보문에 대해 추가 · 수정하는 경우 – 기술규정의 최종 공표시 – 기술규정 채택, 공표, 시행시 관련날짜가 명기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 – 의견수렴 기간 변경(연장 또는 재수렴) – 기술규정의 철회 또는 폐기시, 신규 기술규정으로 대체될 경우 – 통보된 기술규정의 내용 또는 범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거나 수정된 경우(의견 재수렴 고려) – 가이드라인 등 추가 정보 제공
수 정 (Corrigenda)	G/TBT/N/KOR/번호/ Corr.1	최초 통보문 내용의 변경 없이 경미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개 정 (Revision)	G/TBT/N/KOR/번호/ Rev.1	통보된 기술규정의 채택 또는 시행전 규제 정보가 상당히 변동된 경우 - 의견 재수렴 필요 : 60일 이상
번 역 (Supplement)	G/TBT/N/KOR/번호/ Suppl.1	공식언어(영, 불, 스)이외의 언어로 번역된 기술규정 본문이 있는 경우

〈예시 1〉 신규 통보문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

Date

(00-0000)

Page 1/1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The following notification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6

1. Notifying Member: If applicable, name of local government involved (Articles 3.2 and 7.2):
2. Agency responsible: Name and address (including telephone and fax numbers, e-mail and web-site addresses, if available) of agency or authority designated to handle comments regarding the notification shall be indicated if different from above:
3. Notified under Article 2.9.2 [], 2.10.1 [], 5.6.2 [], 5.7.1 [], other:
4. Products covered (HS or CCCN where applicable, otherwise national tariff heading. ICSnumbersmaybeprovidedinaddition,whereapplicable):
5. Title, number of pages and language(s) of the notified document:
6. Description of content:
7. Objective and rationale, including the nature of urgent problems where applicable:
8. Relevant documents:
9. Proposed date of adoption: 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 }
10. Final date for comments:
11. Texts available from: National enquiry point [] or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s, e-mail and web-site addresses, if available of the other body:

〈예시 2〉 추가 통보문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EU/84/Add.1

3 September 2013

(13-4646) Page 1/1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Addendum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2 September 2013, is being circulated at the request of the delegation of European Union.

The European Union would like to inform the WTO Members that Commission Regulation (EU) No 718/2013 amending Regulation (EC) No 608/2004 concerning the labelling of foods and food ingredients with added phytosterols, phytosterol esters, phytostanols and/or phytostanol esters was adopted on 25 July 2013 and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 L 201 on 26 July 2013.

The text of the Regulation is available on the EU-TBT websit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http://ec.europa.eu/enterprise/tbt/,andat: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201:0049:0050:EN:PDF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201:0049:0050:FR:PDF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201:0049:0050:ES:PDF

Also available in all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EU at: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13R0718:EN:NOT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tbt/EEC/13 3481 00 e.pdf

〈예시 3〉 수정 통보문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EU/106/Corr.1

14 May 2013

(13-2469) Page 1/1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riginal: English

NOTIFICATION

Corrigendum

The following communication, received on 13 May 2013, is being circulated at the request of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notification G/TBT/N/EU/106, information was omitted in error. The missing information is highlighted in **bold.**

Item 5 (Title, number of pages and language(s) of the notified document) should read:

Draft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to approve cypermethrin as an existing active substance for use in biocidal products for product-type 8 **(6 pages in English).**

Item 7 (Objective and rationale, including the nature of urgent problems where applicable) should read:

Harmonisation of the EU market on biocidal products.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 EEC/331/Rev.1

6 June 2011

(13-2469) Page 1/2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Revision

The following notification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6.

1. **Notifying Member:** European Union
 If applicable, name of local government involved (Articles 3.2 and 7.2):

2. **Agency responsible:** European Union
 Name and address (including telephone and fax numbers, e-mail and website addresses, if available) of agency or authority designated to handle comments regarding the notification shall be indicated if different from above:
 European Commission
 EU-TBT Enquiry Point
 Fax: +(32) 2 299 80 43 E-mail: eu-tbt@ec.europa.eu
 Website: http://ec.europa.eu/enterprise/tbt

3. **Notified under Article 2.9.2 [X],2.10.1[],5.6.2[],5.7.1[],other:**

4. **Products covered (HS or CCCN where applicable, otherwise national tariff heading.**
 ICS numbers may be provided in addition, where applicable): Cosmetic products

5. **Title, number of pages and language(s) of the notified document:**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76/768/EEC, concerning cosmetic products, for
 the purpose of adapting Annex III thereto to technical progress(7pages, in English).

6. **Description of content:** The proposal aims at regulating the use of hydrogen peroxide, and other compounds or mixtures that release hydrogen peroxide, including carbamide peroxide and zinc peroxide, in cosmetic products.

 A draft Commission Directive was already notified in 2010 (G/TBT/N/EEC/331). Compared with that draft Commission Directive (which foresaw the increase of the authorised concentration of hydrogen peroxide in tooth whitening products, under certain conditions, however without setting a maximum limit), the current proposal now foresees a maximum concentration of 6% hydrogen peroxide, present or released, in tooth whitening or bleaching products.

7. **Objective and rationale, including the nature of urgent problems where applicable:**
 Protection of human health

8. **Relevant documents:**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1976L0768:20091118:EN:PDF

9. **Proposed date of adoption:** Adoption and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nd semester of 2011

 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 Twentieth day following the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the provisions shall apply as from 12 months + 1 day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directive.

10. **Final date for comments:** 45 days from date of notification

11. **Texts available from: National enquiry point [], or address, telephone or fax numbers, e-mail and web-site address, if available of the other body:**

 European Commission
 EU-TBT Enquiry Point
 Fax: +(32) 2 299 80 43
 E-mail: eu-tbt@ec.europa.eu

 The text is available on the EU - TBT Website:
 http://ec.europa.eu/enterprise/tbt

 and at: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1/tbt/EEC/11 1710 00 e.pdf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CHN/963/Suppl.1

17 June 2013

(13-3095)

Page 1/1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VAILABILITY OF TRANSLATIONS

NOTE BY THE SECRETARIAT[1)]

Supplement

The delegation of European Union has provided the Secretariat with an unofficial translation into English of the document referenced in this notification. The document is available for consultation at: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TBT/CHN/13 2236 00 et.pdf

Comité des obstacles techniques au commerce

TRADUCTIONS DISPONIBLES

NOTE DU SEVRETARIAT[1)]

Supplément

La délégation de l'Union européenne a communiqué au Secrétariat une traduction non officielle en anglais du document auquel renvoie la présente notification. Cette traduction peut être consultée à: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TBT/CHN/13 2236 00 et.pdf

Comité de Obstáculos Técnicos al Comercio

ACCESO A TRADUCCIONES

NOTA DU SEVRETARIAT[1)]

Suplemento

La delegación de Unión Europea ha remitido a la Secretaría una traducción no oficial al del documento a que se hace referencia en la presente notificación. La traducción se puede consultar e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TBT/CHN/13 2236 00 et.pdf

1) This document has been prepared under the Secretariat's own responsibility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positions of Members or to their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e WTO./Le présent document a été établi par le Secrétariat sous sa propre responsabilité et est sans préjudice des positions des Membres ni de leurs droits ou obligations dans le cadre de l'OMC./El presente documento ha sido elaborado bajo la responsabilidad de la Secretaría y se entiende sin perjuicio de las posiciones de los Miembros ni de sus derechos y obligaciones en el marco de la OMC.

부록

3. 용어사전

검사(Inspection)

제품설계,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한 조사(examination)를 실시하고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거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 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전자 기술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및 적합성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시행, IEC표준은 6,895종('15), 회원국 83개국, IEC의 적합성 평가제도는 IECQ(전자부품의 품질인증제도), IECEE(국제전기기기시험인증제도), IECEx(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제도), IECRE(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가 있음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 · 과학적 · 기술적 ·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지적, 과학, 기술, 경제 등 전 산업분야의 국제표준 제정 21,113종('15), 회원국 161개국, 국가별로 한 개의 국가표준화 기구만 회원으로 인정(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음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프로세스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자국의 동종 제품 또는 프로세스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는 대우

동등성(Equivalence)

동일한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적합성평가 결과가 동일 수준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성

모범규제관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s)

자유로운 국제무역, 시장개방, 투자촉진을 규제개혁에 필요한 요소로서 ①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개방성, ② 비차별성, ③ 불필요한 무역제한의 회피, ④ 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⑤ 동등성의 인정, ⑥ 경쟁정책의 적용 등 무역관련 주요 원칙, 관행 및 경험을 말함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 상대국간의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

WTO 플러스(WTO plus)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함. 보통 FTA체결국끼리 WTO 협정내용보다 강도 높은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말하나, 최근 도하라운드에서 WTO plus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국간 분쟁해결을 위해 소집되는 WTO 일반이사회. 동 기구는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

WTO 분쟁해결절차(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B는 GATT체제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이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및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 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의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해서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됨

사후관리(Surveillance)

적합성 표명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서, 체계적으로 반복되는 적합성평가 활동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개별 국가의 기준, 자격, 면허요건 및 절차 등을 상호 인정하는 2개국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상품 · 서비스 · 전문직 분야 등에 적용됨.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협정 당사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준, 자격, 면허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간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 선행 필요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으로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음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 · 자유 · 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 WTO의 설립 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임.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 2012년 현재 회원국은 157개국임

시험(Testing)

시험방식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

심사(Audit)

기록, 사실에 대한 진술 또는 기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문서화된 프로세스. "심사"는 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반면, "평가"는 적합성평가기관과 함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됨

인정(Accreditation)

인증기관, 시험기관, 교정기관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주어진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자격이 있다고 지정해 주는 행위.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인정기관이라 하며, 시험교정인정은 한국공인인정기구(KOLAS), 제품인정은 한국제품인정기구(KAS), 경영시스템인정은 한국인정원(KAB)이 수행

인증(Certification)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등이 인증기준(표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평가하여 인증기관이 인정해 주는 행위.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됨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Measu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일반적으로 'SPS조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영문자를 줄여서 부르는 것임.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임.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 음료 ·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함

유효성 추정(Presumptive Validity)

반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권리의 유효성을 추정함

적합성평가절차(CAP,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특히 표본추출, 시험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보증, 등록, 인정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Accept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이 제공한 적합성평가 결과의 사용

정부조달(GP,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

조치(Measure)

법률, 규정, 절차, 요건, 관행, 또는 정부 혹은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에 의한 행정행위 등을 지칭

지정(Designation)

특정 적합성평가기관에게 규정된 적합성평가활동을 수행하도록 내리는 정부의 권한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통상 ·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표준(Standards)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음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행일 2019년 7월
발행인 이 승 우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521~30
편집 · 제작 한국표준협회미디어(02-2624-0360)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www.knowtbt.kr)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43-870-5521~30 **Fax** 043-870-5682 **E-mail** tbt@kats.go.kr, tbt@korea.kr